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심리적격의 기준

2023년 8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격 해설서](#) 및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일러두기	6
서문	7
A. 개인의 청구	9
1. 조항의 목적	9
2. 청구인의 범주	9
a. 자연인	9
b. 법인	9
c.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	10
3. 피해자 지위	11
a. “피해자”라는 개념	11
b. 직접피해자	11
c. 간접피해자	12
d. 잠재적 피해자와 민중소송	15
e. 피해자 지위 상실	16
f. 청구인 사망	19
4. 대리	20
B. 개인 청구권 행사의 자유	22
1. 원칙 및 예시	22
2. 피청구국의 의무	24
a. 재판소규칙 제 39 규칙	24
b. 사실 확정	25
c. 조사	26
I. 심리부적격의 절차상 근거	26
A.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	26
1. 규칙의 목적	27
2. 규칙의 적용	27
a. 유연성	27
b. 국내 규칙 및 제한 사항 준수	28
c. 여러 구제절차의 존재	28
d. 실질적으로 제기된 진정	29
e. 존재 및 적절성	30
f. 가용성 및 실효성	31
3. 규칙 적용의 한계	33
4. 증명책임 배분	34
5. 절차적 측면	36
6. 신규 구제절차 생성	37
B. 4 개월 기간 미준수	39
1. 규칙의 목적	39
2. 4 개월 기간 기산 시작일	40
a. 최종 결정	40
b. 기산점	41

i.	결정 인지 시점	41
ii.	결정의 송달	42
iii.	결정 미송달	42
iv.	가용한 구제절차 부재	42
v.	계속되는 상황.....	42
3.	4 개월 기간 만료.....	43
4.	청구일.....	44
a.	청구서 작성 완료	44
b.	발송일.....	44
c.	팩스 발송.....	44
d.	진정의 성격 분류	45
e.	후속 진정사항.....	45
5.	특수한 상황	46
a.	생명권, 주거권, 재산권 관련 계속되는 상황에 시간 제약 적용 가능성	46
b.	사망 및 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재에 시간 제약 적용 가능성	46
c.	구금 조건에서 4 개월 규칙 적용	47
d.	협약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복수의 구금 기간 사건에 4 개월 규칙 적용	48
C.	익명 청구	48
1.	익명 청구	49
2.	비익명 청구	49
D.	실질적으로 동일함	49
1.	재판소에서 심리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50
2.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제출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	51
a.	사건의 유사성 심사	51
b.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라는 개념	52
E.	개인 청구권 남용	52
1.	일반적인 정의	52
2.	재판소 오도	53
3.	모욕적인 언어	54
4.	우호적 해결 절차의 기밀 유지 원칙 위반	55
5.	명백하게 성가시거나 실질적인 목적이 없는 제소	56
6.	국내 구제절차의 남용 또는 그 외 국내 수준의 비난할 만한 행위	56
7.	피청구국 정부가 채택할 접근 방식	57
II.	재판소 관할권 관련 심리부적격 사유	57
A.	인적 관할 양립 불가능	57
1.	원칙	57
2.	관할권	58
3.	책임성 및 귀책성	61
4.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협약 당사국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	62
B.	장소적 관할 양립 불가능	64
1.	원칙	64
2.	구체적 사건	65
C.	시간적 관할 양립 불가능	65
1.	일반 원칙	65
2.	원칙 적용	65

a. 협약 비준 또는 협약 기관의 관할권 수락 관련 결정적 기일	65
b. 발효 또는 선언 전/후 순간의 사실관계.....	66
3. 구체적 상황	67
a. 계속되는 위반	67
b.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실종을 조사하기 위한 “계속되는” 절차적 의무	68
c. 제 2 조에 따른 사망 조사에 대한 절차적 의무: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 외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절차.....	68
d. 이전 사실관계 고려	69
e. 계속 중인 절차 또는 구금.....	69
f. 잘못된 유죄 판결에 배상받을 권리.....	69
g. 거듭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	70
D. 물적 관할 양립 불가능.....	70
III. 본안에 근거한 심리부적격	73
A. 명백하게 근거 부재	73
1. 일반적인 사항	73
2. “제 4 심”	74
3. 명백히 또는 외관상 위반사항 부재.....	75
a. 외관상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음	75
b. 외관상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부재하지 않음	76
c. 그 외 실체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안	77
4. 증명되지 않은 진정사항: 증거 부재	77
5. 혼란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불만사항	78
B.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78
1. 새로운 기준의 배경	79
2. 범위.....	79
3. 청구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불이익 유무	81
a. 의미 있는 재정적 불이익의 부재	81
b. 의미 있는 재정적 불이익	83
c. 의미 있는 비재정적 불이익의 부재.....	83
d. 의미 있는 비재정적 불이익	85
4. 보호조치 조항: 인권 존중을 위해 본안에 대한 사건 심리의 필요성 여부	87
인용 판례 목록.....	89

일러두기

이 실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拉斯부르재판소”)가 발간하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로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재판소에서 청구인 대리를 요청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개인의 제소사건이 심리적격이 될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해설서는 첫째, 본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는 제소건수는 최대한 줄이고 둘째, 본안 심리가 필요한 제소사건은 심리적격 심사를 통과하도록 심리적격 조건을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려고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싣는 것이 아니라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 15 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문

1. 유럽인권협약("협약")이 정한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체계는 보충성 원칙에 기초한다. 보충성 원칙을 협약 전문(前文)에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협약 제 15 의정서가 채택 및 발효되면서 이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는 임무는 주로 협약 당사국에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재판소")는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
2. 스트拉斯부르의 감독은 주로 개인의 청구가 있어야 시작되며, 재판소에 대한 청구는 협약 당사국이 관할하는 개인 또는 비정부 법인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된 청구인층은 방대하여 8 억 명에 달하는 유럽권 거주민, 제 3 국인으로서 유럽권에서 생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외에도 수백만 개의 협회, 재단, 정당, 회사 등(협약 당사국이 역외에서 행한 치외법권 행위의 결과로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들 포함)이 있다.
3. 이제 여러 해가 지나기도 했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재판소는 개인의 청구사건으로 넘쳐나고 있다(2021년 1 월 31 일 현재 64,100 건 계류 중).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가 협약이 정한 심리적격 기준 하나를 지키지 못하여 본안 심리까지 가지 못하고 각하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해에만 재판소가 처리한 39,190 건 중 37,289 건이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되거나 종료되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에 어긋난다. 첫째, 재판소는 모든 제소사건에 대응해야 하므로 정작 본안 심리가 정당한 사건은 합리적인 시한 내에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대중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 수만 명의 청구인이 청구 각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4. 재판소와 재판소 사무국은 물론이고 협약 당사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그중에서도 협약 제 14 의정서 채택은 크게 눈에 띈다. 제 14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심리부적격이 분명한 것으로 3 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3 인 위원회가 아니라 단독재판관이 비사법 보고관의 조력으로 처리하는 제소사건을 규정한다. 2010년 6 월 1 일 발효되었으며,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의 정도에 관한 심리적격 규정도 새로 도입하여 그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으면 제소를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5. 2010년 2 월 19 일, 협약에 가입한 유럽평의회 회원 47 개국 대표가 스위스 인터라켄에 모여 재판소의 미래와 특히 다수의 심리부적격 제소사건으로 발생한 사건 적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유럽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 체제 중심에 재판소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개인의 청구 원칙을 보존하면서도 그 실효성 제고에 착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6. 이즈미르(2011년), 브라이턴(2012년), 브뤼셀(2015년) 및 코펜하겐(2018년) 후속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은 협약기제의 실행 가능성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브라이턴 회의에서는 협약 전문(前文)에 보충성의 원칙과 인정 범위 주의를 언급하는 것 외에도 협약 제 15 의정서를 채택하여 국가에서 최종 결정한 후 재판소에 청구해야 하는 시한을 6 개월에서 4 개월로 단축하였다.
7. 잠재적 청구인에게 제소 절차 및 심리적격 기준에 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인터라肯 선언 C-6(a) 및 (b)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개인의 청구사건 심리적격이 될 조건에 관한 이 실무해설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해설서는 첫째, 본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는 청구 건수는 최대한 줄이고 둘째, 본안 심리가 필요한 청구사건은 심리적격 심사를 통과하도록 심리적격 조건을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려고 마련하였다. 현재 사건이 이 심사를 통과하면 대부분 심리적격과 본안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어 절차가 간소해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8. 이 문서의 대상은 주로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특히 재판소에서 청구인 대리를 요청받을 수 있는 변호사이다.

9. 협약 제 34 조(개인의 제소사건) 및 35 조(심리적격 기준)에 명시된 모든 심리적격 기준은 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검토 작업을 마쳤다. 당연히 “4개월 시한” 또는 이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국내 구제절차 경료” 같은 일부 개념은 거의 무한대로 세분할 수 있는 “명백히 근거 없는” 개념 또는 재판소의 “물적/인적 관할권”보다 정의하기에 용이하다. 나아가 일부 조항은 유독 청구인들이 빈번하게 의거하기도 하고, 협약의 추가 의정서를 전부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며, 특정 조항 범위만 유보한 국가도 있다. 따라서 이 해설서는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싣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시나리오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초점을 두는 곳은 개인의 청구(협약 제 34 조에 따라 제출)에서 비롯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청구사건과 관련되기만 한다면 국가 간 사건(협약 제 33 조에 따라 제출¹)에서 내린 판결과 결정도 언급할 것이다.

10. 이 해설서는 재판소 법률자문국(Directorate of the Jurisconsult)에서 작성하였으며, 심리적격 기준 해석은 재판소에 구속력이 없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초안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청구 건수가 많은 국가의 국어를 우선으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예정이다.

11. 해설서는 우선 개인의 청구사건 및 피해자 지위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어서 심리부적격의 절차적 사유(part I), 재판소 관할권 관련 사유(part II) 및 사건 본안 관련 사유(part III)²를 살펴본다.

1. 협약 제 35 조에 명시된 모든 심리적격 기준이 협약 제 33 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 간 청구사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Slovenia v. Croatia* [GC] (dec.), §§ 40-44 참조). 심리적격 문제에서 국가 간 청구사건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2. 재판소가 청구를 심리하는 절차 단계를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재판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Case processing”을 클릭(www.echr.coe.int – The Court – How the Court works)한 후 “Life of an application”이라는 흐름도를 참고한다.

A. 개인의 청구

협약 제 34 조 – 개인의 청구사건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에 명시된 권리의 위반하여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비정부기구 또는 개인 집단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

HUDOC 주제어

청구(34) – 피청구국(34) – 개인(34) – 비정부기구(34) – 개인 집단(34) – 피해자(34) – 민중소송(34) – 청구인적격(34)

1. 조항의 목적

12. 개인 청구권을 보장하는 제 34 조는 개인이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인권 보호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협약 체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항이기도 하다(*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 [GC], 2005, §§ 100 및 122; *Loizidou v. Turkey* (선결적 항변), 1995, § 70).

13. 협약은 살아있는 문서로서 현재의 조건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확립된 판례는 제 34 조 같은 절차 조항에도 적용된다(*ibid.*, § 71).

14. 청구인이 협약 제 34 조에 의거하려면 첫째, 제 34 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범주에 속해야 하고 자신이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2013, § 47).

2. 청구인의 범주

a. 자연인

15.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 거주지, 시민적 신분, 상황 또는 행위 능력과 관계없이 협약 제 1 조에 따라 위반 혐의가 해당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국을 상대로 협약이 제공하는 보호에 의거할 수 있다(*Van der Tang v. Spain*, 1995, § 53). 친권이 박탈된 어머니라면 *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2000, § 138 참조. 미성년자라면 *A. v. the United Kingdom*, 1998 참조. 행위 능력이 없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Zehentner v. Austria*, 2009, §§ 39 이하 참조.

16. 살아있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만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Aizpurua Ortiz and Others v. Spain*, 2010, § 30; *Dvořáček and Dvořáčková v. Slovakia*, 2009, § 41).

b. 법인

17. 회원국이 협약 및 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인은 협약 제 34 조가 의미하는 “비정부기구”인 경우에만 재판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다.

18. “정부 기관”은 제 34 조가 의미하는 “비정부기구”와 대조되는 용어로, 국가의 중앙 기구뿐만 아니라 중앙 기구에 대한 자율성과 관계없이 “공공 기능” 행사하는 지방 분권 당국에도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지역 및 지방 당국(*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 26), 지방자치단체(*Ayuntamiento de Mula v. Spain* (dec.), 2001) 또는 공권력을 함께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Municipal Section of Antilly v. France* (dec.),

1999)도 적용 대상으로 이들 모두 제 34 조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또한 *Döşemealtı Belediyesi v. Turkey* (dec.), 2010 참조).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는 “비정부기구”의 자격이 없으므로 제 34 조에 따라 재판소에 청구할 자격이 없다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dec.), 2020, §§ 13–21).

19. “정부 기관”이라는 범주에는 정부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거나 정부 통제 속에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도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한 상하수도회사 관련 사건인 *JKP Vodovod Kraljevo v. Serbia* (déc.), 2018, §§ 23–28; 재단 설립 대학 관련 사건인 *Ihsan Doğramacı Bilkent Üniversitesi v. Turkey* (dec.), 2020, §§ 35–47). 청구한 행위의 성격이 사적이라 해도 이와는 무관하다(§ 38).

20. 해당 영토의 정부 기관이 아닌 특정 법인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법인의 법적 신분과 그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과 수행되는 맥락, 정치 당국으로부터 독립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 26; *Kotov v. Russia* [GC], 2012, § 93; *Slovenia v. Croatia* [GC] (dec.), 2020, § 61). 정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공법 단체 또는 공익 방송사라면 *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1994, § 49;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 24–26; *Österreichischer Rundfunk v. Austria*, 2004, §§ 46–53; *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and publisuisse SA v. Switzerland*, 2020, §§ 46–48; *Croatian Radio-Television v. Croatia*, 2023, §§ 98–121 참조. 국영 기업이면서 국가로부터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충분히 누리는 경우라면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v. Turkey*, 2007, §§ 80–81; *Ukraine–Tyumen v. Ukraine*, 2007, §§ 25–28; *Unédic v. France*, 2008, §§ 48–59; 및 *Zastava It Turs v. Serbia* (dec.), 2013 대조; *State Holding Company Luganskvugillya v. Ukraine* (dec.), 2009 참조. 또한 *Transpetrol, a.s., v. Slovakia* (dec.), 2011 참조. 회사가 관련된 경우 재판소가 보기에 제 34 조의 목적상 “비정부기구”가 되려면 본질적으로 회사법의 지배를 받고, 활동할 때 일반 사법(私法)으로 부여된 것 이상의 정부 권한 또는 그 외 권한을 누리지 않으며,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의 관할 대상이어야 한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회사가 영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경쟁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 역할을 하거나 독점이 아니라는 사실도 고려하였다(*Slovenia v. Croatia* [GC] (dec.), 2020, §§ 62–63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21. 재판소가 명확히 밝혔듯이 협약 제 33 조(국가 간 제소사건)에 따라 청구국 정부는 “비정부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제 34 조에 따라 개인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 법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없다(청구국 소유 은행 관련 사건인 *Slovenia v. Croatia* [GC] (dec.), 2020, §§ 60–70 및 76–79). 재판소는 인권 조약이라는 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 간 사건이라 하여도 협약 위반으로 일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개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비정부기구”에 해당하는 개인, 개인 집단 및 법인만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유할 수 있고 체약국 또는 그 소속 법인은 권리를 보유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ibid.*, § 66).

22. 국내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이 없는 종교 단체로서 법적으로 조처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을 행정 당국이나 법원이 내부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는 단체는 제 34 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Chief Rabbinate of the Jewish Community of Izmir v. Türkiye*, 2023, §§ 43–46).

C.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

23.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 당국 또는 그 외 정부 기구는 그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공권력행사를 대리하는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들을 구성하거나 대표하는 개인을 매개로 청구할 수 없다(*Demirbaş and Others v. Turkey* (dec.), 2010).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치 지역사회 의회의 본회의 정회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라면 (정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청구인들이

호소하는 권리와 자유는 청구인 개인에 관한 것이며 기관으로서의 의회에 기인하지 않는다(*Forcadell i Lluis and Others v. Spain* (dec.), 2019).

3. 피해자 지위

24. 재판소는 협약이 민중소송제도를 규정하지 않으며, 재판소의 임무는 관련 법과 관행을 추상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청구인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협약 위반을 초래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예를 들어, *Roman Zakharov v. Russia* [GC], 2015, § 164).

a. “피해자”라는 개념

25. 협약 제 34 조 맥락에서 “피해자”라는 단어는 위반 혐의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 34 조는 위반 혐의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위반을 끝내는데 타당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간접 피해자도 포함한다(*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2013, § 47). 재판소는 청구인이 국내 절차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지만(*Aksu v. Turkey* [GC], 2012, § 52; *Micallef v. Malta* [GC], 2009, § 48;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09–117) “피해자”라는 개념은 소송 이익 또는 소송 능력 같은 국내 규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해석된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35). 침해가 없어도 되며(*Brumărescu v. Romania* [GC], 1999, § 50), 어떤 조치의 법적 효과가 그저 일시적이라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Monnat v. Switzerland*, 2006, § 33).

26. “피해자”라는 용어의 해석은 당대의 사회 조건에 비추어 변화해야 하며, 적용할 때 과도한 형식주의는 지양한다(*ibid.*, §§ 30–33;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38; *Stukus and Others v. Poland*, 2008, § 35; *Ziętal v. Poland*, 2009, §§ 54–59). 재판소는 피해자 지위라는 사안은 사건 본안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Siliadin v. France*, 2005, § 63;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111). 피해자 지위와 청구인적격 문제는 재판소가 관할하는 사안과 유관하므로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Buzadji v. the Republic of Moldova* [GC], 2016, § 70;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2017, § 93; *Unifaun Theatre Productions Limited and Others v. Malta*, 2018, §§ 63–66; *Jakovljević v. Serbia* (dec.), 2020, § 29).

27. 증명책임의 배분은 본질적으로 사실관계의 특수성, 제기된 주장의 성격, 쟁점이 된 협약 권리와 연결된다(*N.D. and N.T. v. Spain* [GC], 2020, §§ 83–88).

b. 직접피해자

28. 제 34 조에 따라 제소하려면 청구인은 제소한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Tănase v. Moldova* [GC], 2010, § 104;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33;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2015, § 89). 협약의 보호 기제가 작동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는 하지만(*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2012, § 73), 그렇다고 해도 절차 내내 경직되고 기계적이며 융통성 없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Micallef v. Malta* [GC], 2009, § 45; *Karner v. Austria*, 2003, § 25; *Aksu v. Turkey* [GC], 2012, § 51). 예를 들어, 당사자가 아닌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92). 다만, *Margulev v. Russia*,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명예훼손 절차에서 제 3 자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지만 직접피해자라고 보았다. “판결이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제 3 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라면 국내법이 제 3 자 신분을 부여하므로, 재판소는 명예훼손 절차의 결과가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암묵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36; 또한 *Khural and Zeynalov v. Azerbaijan* (no. 2),

2023, §§ 31–32 참조). *Mukhin v. Russia*,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언론사 지위를 박탈하고 등록 증명 문서를 무효로 한 국내 법원 결정에 대해 해당 신문사 편집장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158–160). 또한 일부 구체적인 정황에서는 국내 절차에 함께 하지 않는 직접피해자가 재판소 청구인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 78–81). “피해자”라는 관념은 협약 체계에서 독자적으로 해석되므로 국내 절차에서 당사자적격인 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예를 들어, 국내 법원은 피해자 신분을 인정하였지만, 재판소는 인정하지 않은 공익 방송사 재정 관리자에 관한 사건인 *Kalfagiannis and Pospert v. Greece* (dec.), 2020, §§ 44–48 참조).

29. 또한, 재판소의 관행과 협약 제 34 조에 따라 청구인들은 살아있는 개인으로 또는 그 명의로만 제소할 수 있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96). 그러나 국가 당국이 제 2 조, 제 3 조 및 제 8 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을 때 그 피해자인 경우라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를 대신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제소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이 유효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심리적격으로 선언되었다(§§ 103–114).³

c. 간접피해자

30.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제소 전 사망한 경우, 최근친자로서 필요한 법익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실종과 관련하여 진정사항을 제기하며 청구할 수 있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12). 이는 위반 혐의의 성격 및 협약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조항 중 하나인 실효적 이행에 관한 고려 사항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다(*Fairfield v. the United Kingdom* (dec.), 2005).

31.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망 또는 실종에 국가의 책임이 관여한다고 주장되는 사람의 부모 등 가까운 가족 구성원은 자기 자신도 제 2 조 위반 혐의의 간접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인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였다(*Van Colle v. the United Kingdom*, 2012, § 86; *Tsalikidis and Others v. Greece*, 2017, § 64; *Kotilainen and Others v. Finland*, 2020, §§ 51–52).

32. 또한 위반 혐의가 제 2 조에 따른 사안을 초래한 사망 또는 실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사망자 또는 실종자를 대신하여 최근친자가 협약 제 3 조 및 제 5 조 등에 따라 청구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 5 조제 1 항 및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때 최근친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Khayrullina v. Russia*, 2017, §§ 91–92 및 §§ 100–107 참조. 어떤 사람이 형사 절차를 당하던 도중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정황에서 사망하였다면 제 6 조에 따른 청구사항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Magnitskiy and Others v. Russia*, 2019, §§ 278–279).

33. 기혼 파트너인 경우 *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5; *Salman v. Turkey* [GC], 2000 참조. 미혼 파트너인 경우 *Velikova v. Bulgaria* (dec.), 1999 참조; 파트너인 경우 *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2007;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2011 참조. 형제자매인 경우 *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1997 참조. 자녀인 경우 *McKerr v. the United Kingdom*, 2001 참조. 조카인 경우 *Yaşa v. Turkey*, 1998 참조. 대조적으로 사망한 전남편과의 연결고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혼한 파트너인 경우 *Trivkanović v. Croatia*, 2017, §§ 49–50 참조. 삼촌과 사촌인 경우 *Fabris and Parziale v. Italy*, 2020, §§ 37–41 및 판례 요약 참조. 재판소는 선박 사고 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와 관련하여 특히 국가가 모든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그나마 발견된 피해자의

3. 대리 참조.

신원도 전부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최근친자가 제 2 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Ranđel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2017, § 85).

34. 협약 위반 혐의가 직접피해자의 사망 또는 실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소의 접근은 더욱 제한적이었다(*Karpyleko v. Ukraine*, 2016, § 104, *A and B v. Croatia*, 2019, §§ 88–91). 통상적으로 재판소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누구에게도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지 않았다(*Nassau Verzekering Maatschappij N.V. v. the Netherlands* (dec.), 2011, § 20). 예를 들어,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및 제 14 조 위반 혐의인 조력 자살 금지와 관련하여 사망자 형제의 배우자이자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인 청구인이 주장한 권리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범주에 속하므로 사망자를 대신하여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재판소가 판결한 사건인 *Sanles Sanles v. Spain* (dec.), 2000 참조. 제 8 조에 따른 사건으로 개인이 기탁한 생식세포의 운명과 그 생식세포가 자신의 사후 사용되어야 한다는 희망은 부모가 되는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며 이 권리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재판소가 판결한 *Petithory Lanzmann v. France* (dec.), 2019, § 16 참조. 또한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청구사항에 관한 *Biç and Others v. Turkey* (dec.), 2006, 제 9 조 및 제 10 조에 관한 청구사항인 *Fairfield v. the United Kingdom* (dec.), 2005, 제 8 조에 따른 청구사항과 관련된 *Rõigas v. Estonia*, 2017, § 127 및 *Jakovljević v. Serbia* (dec.), 2020, §§ 29–30 참조.

35. 협약 제 3 조에 따른 사망한 친척의 학대 주장에 대해 재판소는 학대가 친족의 사망 또는 실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였다(*Karpyleko v. Ukraine*, 2016, § 105; *Dzidzava v. Russia*, 2016, § 46). 또한 청구인이 국내 절차의 결과에 대해 단순한 금전적 이익 외에도 강한 도덕적 이해관계를 보이거나 사건을 심리하게 하는 중요한 일반적 이익 같은 그 외 중대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사망한 친척의 학대에 관해 제소하는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소의 확인이 있었다(*Boacă and Others v. Romania*, 2016, § 46; *Karpyleko v. Ukraine*, 2016, § 106; 또한 *Stepanian v. Romania*, 2016, §§ 40–41; *Selam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58–65 참조).

36. 예를 들어 제 5 조, 제 6 조 또는 제 8 조에 따른 진정과 관련하여 가까운 친척에게 피해자 신분을 부여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가 유죄 판단에서 벗어나게 하거나(*Nölkenbockhoff v. Germany*, 1987, § 33; *Grădinar v. Moldova*, 2008, §§ 95 및 97–98; *Akbay and Others v. Germany*, 2020, §§ 73, 80–82) 자신과 가족의 평판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도덕적 이해관계를 보였는지(*Brudnicka and Others v. Poland*, 2005, §§ 27–31; *Armonienė v. Lithuania*, 2008, § 29;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2010, §§ 31–33) 또는 그들의 금전적 권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보였는지(*Nölkenbockhoff v. Germany*, 1987, § 33; *Grădinar v. Moldova*, 2008, § 97; *Micallef v. Malta* [GC], 2009, § 48; *Akbay and Others v. Germany*, 2020, §§ 74, 83–85) 고려하였다. 청구사항을 심리할 이유가 되는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고려되었다(*Micallef v. Malta* [GC], 2009, §§ 46 및 50; 또한 *Biç and Others v. Turkey* (dec.), 2006, §§ 22–23; *Akbay and Others v. Germany*, 2020, §§ 76, 86–88 참조).

37. 청구인이 국내 절차를 함께 하였느냐는 여러 관련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Nölkenbockhoff v. Germany*, 1987, § 33; *Micallef v. Malta* [GC], 2009, §§ 48–49;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2010, § 31; *Grădinar v. Moldova*, 2008, §§ 98–99; 또한 협약 제 3 조의 양도 가능성에 관한 사건에서 절차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이해관계 또는 그 외 중대한 이유가 없는 청구인은 그저 국내법이 고(故) 카부로프 씨의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 절차에 개입하도록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Kaburov v. Bulgaria* (dec.), 2012, §§ 57–58 참조; 또한 양도

증서로 협약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분이 된다는 청구회사의 주장을 재판소가 각하한 사건인 *Nassau Verzekering Maatschappij N.V. v. the Netherlands* (dec.), 2011 참조).

38. 대개 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소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유념하여 가까운 친척이 당사자 적격인지 심사한다(*Akbay and Others v. Germany*, 2020, §§ 77 및 89).

39. 가족 구성원은 “간접피해자” 신분 외에도, 친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초래된 고통을 이유로 협약 제 3 조에 위배되는 대우의 “직접피해자”가 될 수 있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177–181 및 2018, §§ 54–56 의 유관 기준 참조).

40. 상황에 따라 가까운 친척은 살아있는 친척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의 간접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장애인 딸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후견인 자격으로 국내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는 딸에게 영향을 미친 차별 혐의에 대해 간접피해자 신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2018, § 97).

41. 회사 관련 청구(*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1995, §§ 64–71)에서 재판소는 어떤 사람이 절차의 당사자인 회사의 주주 및/또는 이사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아닌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 위반에 대해 제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92–93).

42. 특히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하는 청구의 경우, 재판소는 주주들이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제기한 사건과 그들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제기한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1995, §§ 65–66;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22). 전자의 경우, 주주 자신을 협약 제 34 조가 의미하는 피해자로 볼 수 있다(*Olczak v. Poland* (dec.) 2022, §§ 57–62;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26–134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참조;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44–47;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37–41).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주주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조치에 대해 협약 제 34 조가 의미하는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소는 이 원칙이 두 가지 상황에서 정당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첫째, 회사와 그 주주를 분리하는 것이 인위적일 만큼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거나(예를 들어 *Ankarcrona v. Sweden* (dec.), 2000 참조) 둘째, “예외적인 정황”으로 정당해지는 상황이다(*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24, 135–145).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예외적인 정황”, 특히 회사가 이름을 걸고 재판소에 제소하기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다.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이 주주로서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로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소가 납득하게 하려면, 회사가 정관에 따라 설립된 기구를 통해 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회사를 대신하여 청구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입증하는 비중 있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ibid.*, §§ 138–145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이러한 원칙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 159–165 참조).

43. 회사를 대상으로 공식 발급되지 않은 비밀감시 승인과 관련하여 청구 회사 및/또는 그 관리자의 “피해자” 신분에 대해서는 *Liblik and others v. Estonia*, 2019, §§ 111–112 참조.

44. 비정부기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이익이 위태로울 수 있더라도 단체의 이익이 위태롭지 않으면 단체에 “피해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NGO 가 추정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할 목적 하나로 설립된 단체일지라 해도 “피해자” 신분은 NGO에 부여되지 않는다(*Nencheva and Others v. Bulgaria*, 2013, § 90 및 § 93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또한 언론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연맹에 관한 *Kalfagiannis and Pospert*

v. *Greece* (dec.), 2020, §§ 49–51 참조; 댐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을 옹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기구에 관한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2021, §§ 42–44 및 LGBT 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에 관한 *Genderdoc-M and M.D.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1, §§ 25–26. 이와 대조되는 사건으로는 회원들의 지식재산권을 집단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 관련 피해자 신분에 관한 *AsDAC c. the Republic of Moldova*, §§ 21–37, 제 11 조 관련 특히 노동조합의 자유 영역에서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에 관한 *Communauté genevoise d'action syndicale (CGAS) v. Switzerland*, 2022, §§ 36–42 및 조합원 한 명의 해고가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제소한 노동조합에 관한 *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2023, § 153 참조).

45. 다만, 상황에 따라 청구인들 대신 NGO 가 국내 절차에 참여해 청구인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피해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Gorral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37–39; *Centre of Societies for Krishna Consciousness in Russia and Frolov v. Russia*, 2021, § 30; 제 34 조에 따른 피해자 신분과 제 35 조 1 항에 따른 국내 구제절차 경료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 78–81 참조; *Thibaut v. France* (dec.), 2022, §§ 26–31).

d. 잠재적 피해자와 민중소송

46. 협약 제 34 조는 협약 위반을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01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인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음도 인정하였다. 제소한 법률이 승인한 조치의 기밀성으로 인해 실제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경우(*Klass and Others v. Germany*, 1978) 또는 한 외국인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되었다면 수용국에서 협약 제 3 조에 위배되는 대우 또는 협약 제 8 조에 따른 권리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었던 경우(*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또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청구인이 속한 집단 범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Dudgeon v. the United Kingdom*, 1981)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비밀감시 조치를 허용하는 법의 범위에 포함되고 청구인이 그러한 비밀감시에 이의를 제기할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청구인은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Roman Zakharov v. Russia* [GC], 2015, §§ 173–78).

47.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려는 청구인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Senator Lines GmbH v. fifteen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GC], 2004; *Shortall and Others v. Ireland* (dec.), 2021). 공식적인 추방 명령이 부재한 경우인 *Vijayanathan and Pusparajah v. France*, 1992, § 46 참조. 의회 보고서로 추정되는 결과물에 관한 *Fédération chrétienne des témoins de Jéhovah de France v. France* (dec.), 2001 참조. 혼수상태에 빠진 제 3 자에 관한 사법 판결로 추정되는 결과물에 관한 *Rossi and Others v. Italy* (dec.), 2008 참조. 스포츠 협회 및 개별 스포츠 전문가에 대한 반도핑 조치로 추정되는 결과물에 관한 *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2018, §§ 91–103 참조. 태아 기형을 이유로 한 합법적 낙태를 금지하는 개정안으로 추정되는 결과물에 관한 *A.M. and Others v. Poland* (dec.), 2023, §§ 75–87 참조. 실질적인 재혼 의사가 전혀 없는 청구인이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재혼을 바라는 이혼 여성에게 부과되는 300 일의 대기 기간 면제를 거부한 *Nurcan Bayraktar v. Türkiye*, 2023, §§ 27–29 참조.

48. 위반 혐의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Paşa and Erkan Erol v. Turkey*, 2001).

49. 또한 재판소가 강조해 온 바에 따르면 협약은 협약에 포함된 권리의 해석에 대해 민족소송을 제기하게 하거나 국내법 조항이 협약을 위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실제로 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개인이 소를 제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Aksu v. Turkey* [GC], 2012, § 50;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33;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dec.), 2017, §§ 28–32;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00; *Kalfagiannis and Pospert v. Greece* (dec.), 2020, § 46). 예를 들어 행정 결정 무효를 추구하는 국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또는 국내 법원이 청구인적격을 부여하지 않은 협회는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사법 결정 집행권 위반 혐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환경 사건에 관한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14–116;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 80 사건과 대조). 청구인이 가족 구성원 또는 그 외의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위반 혐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a) 구금 상태에서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그 만남을 유지하고 싶은 친척 또는 그 외의 사람이 있고 b)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만큼의 방문권은 모두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Chernenko and Others v. Russia* (dec.), 2019, § 45). 협약 제 10 조의 맥락에서, 정부가 폐쇄한 공익 방송사가 방송하던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정보 수신권에 관한 피해자로 될 수 없다(*Kalfagiannis and Pospert v. Greece* (dec.), 2020, §§ 46–47).

50.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야 하거나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 또는 해당 법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집단에 속한다면 개별적인 이행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법률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Tănase v. Moldova* [GC], 2010, § 104; *Michaud v. France*, 2012, §§ 51–52;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28).

e. 피해자 지위 상실

51. 협약 위반 혐의 시정은 우선 국가 당국이 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 혐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재판소 절차의 모든 단계에 유관하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79; *Roooman v. Belgium* [GC], 2019, §§ 128–133). 그렇기에 청구인은 절차 내내 자신이 피해자 신분임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Burdov v. Russia*, 2002, § 30;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80).

52. 어떤 사람이 협약 위반 혐의의 피해자임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재판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사후 심리를 수반한다(*ibid.*, § 82).

53.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조치가 있다고 하여도 국가 당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협약 위반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협약 제 34 조의 목적상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80; *Gäfgen v. Germany* [GC], 2010, § 115; *Nada v. Switzerland* [GC], 2012, § 128; *Blyudik v. Russia*, 2019, §§ 49–50; *Dimo Dimov and Others v. Bulgaria*, 2020, §§ 51–56; *Roth v. Germany*, §§ 75–81). 이 조건을 지킬 때만 협약 보호 기제의 보충성을 이용하여 제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제외할 수 있다(*Jensen and Rasmussen v. Denmark* (dec.), 2003; *Albayrak v. Turkey*, 2008, § 32;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217–223).

54. 당국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일부 배상을 받았더라도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88; *Bryan and Others v. Russia*, 2023, § 45) 피해자로 남게 된다(*Albayrak v. Turkey*, 2008, § 33; *Jensen v. Denmark* (dec.), 2001).

55. 또한 제공되는 구제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 이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쟁점이 된 협약 위반의 성격과 관련된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16; *Bivolaru v. Romania* (no. 2), 2018, § 170). 그러나 청구인이 국내 차원의 우호적 해결 조건에 동의했다면, 그 해결에 따른 금전적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소할 수 없다(*Chennouf and Others v. France* (dec.), 2023, § 39).

56. 예를 들어, 제 3 조 위반인 국가 대리인의 고의적 학대 사건에서 재판소는 충분히 배상하려면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판단하였다. 첫째, 국가 당국은 철저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조사하여 책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적절하다면 청구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청구인이 학대당한 결과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16–118).

57. 국가 대리인이 고의로 학대한 사건이라면 제 3 조 위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구제될 수 없다(*Ibid.*, § 119;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 397–401). 이 원칙은 국가 대리인의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이 가한 학대 사건에도 적용된다(*Beganović v. Croatia*, 2009, § 56; *Škorjanec v. Croatia*, 2017, § 47). 특히 가정 폭력 및/또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서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정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 및 부작위가 젠더 기반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다(*A. and B. v. Georgia*, 2022, § 44).

58. 국내 법원이 구금에서 풀려난 청구인에게 제 3 조(구금 조건)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하게 배상할 때 해당 청구인은 피해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당국이 청구인들을 구금하였던 열악한 구금 조건을 구체적이고 알맞은 형의 감경으로 배상하여 청구인들이 조기 석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Dirjan and Stefan v. Romania* (dec.), 2020, §§ 23–34).

59. 그러나 국내 법원이 아직 구금 상태인 개인들에게 배상한다면, 이러한 배상을 통해 제 3 조에 따른 권리, 즉 구금 조건의 중단 또는 개선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J.M.B. and Others v. France*, 2020, §§ 167–169).

60. 제 5 조제 1 항 위반이 국내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별도의 절차에서 배상을 청구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면, 청구인은 이미 인정된 구금의 불법성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재판소에 청구하기보다는 국내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Al Husin v. Bosnia and Herzegovina* (no. 2), 2019, §§ 89–90; 청구인들의 구금을 승인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라는 맥락에서 구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배상을 지급한 사건으로 *Dubovtsev and Others v. Ukraine*, 2021, §§ 57–66 참조). 제 5 조제 5 항과 관련하여, 국가 당국이 명시적이면서도 알맞게 청구인에게 부과된 형을 감경하여 청구인을 구제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Porchet v. Switzerland* (dec.), 2019, §§ 14–26). 양형 완화는 제 5 조제 3 항 위반인 미결구금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과도 유관할 수 있다(*Ibid.*, § 20; *Ščensnovičius v. Lithuania*, 2018, §§ 88–93; *Malkov v. Estonia*, 2010, §§ 40–41 사건과 비교 및 대조).

61. 또한 협약 제 6 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개인의 권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중단된 소송 과정에서 위반되었다고 본인이 밝힌 경우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없지만(*Sakhnovskiy v. Russia* [GC], 2011, § 77; *Oleksy v. Poland* (dec.), 2009; *Koç and Tambas v. Turkey* (dec.), 2005; *Bouglae v. Belgium* (dec.), 2010), 문제의 절차에 걸린 기간에 관한 청구는 예외이다(*Osmanov and Husseinov v. Bulgaria* (dec.), 2003).

반면, 제 10 조 청구이라면 무죄 판결은 피해자 지위 상실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Döner and Others v. Turkey*, 2017, § 89).

62. 청구인이 제 6 조를 위반한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자로 되었다면, 국가는 해당 진정에 대해 적시에 적절하고 충분히 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어서 재판소는 후속 절차에서 청구인이 충분히 구제되어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심사한다(*Webster v. the United Kingdom* (dec.)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63. 절차에 걸린 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국내 형사 법원이 관대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절차가 지연된 것을 적절히 인정하고 충분히 구제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Chiarello v. Germany*, 2019, §§ 54–59). 양형 완화는 제 5 조제 3 항 위반인 미결구금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과도 유관할 수 있다(*Ščensnovičius v. Lithuania*, 2018, §§ 88–93; *Malkov v. Estonia*, 2010, §§ 40–41 사건과 비교 및 대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피해자 지위는 해당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른 절차에서 다른 판결이 유리하게 내려진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는다(*Sine Tsaggarakis A.E.E. v. Greece*, 2019, §§ 27–31).

64. 다른 사건에서 한 개인이 계속 피해자일 수 있는지는 국내 법원의 배상 금액 또는 적어도 피해자가 재판소에 제소한 사실관계와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제절차의 실효성(신속성 포함)을 고려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Normann v. Denmark* (dec.), 2001;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202; 또한 *Jensen and Rasmussen v. Denmark* (dec.), 2003;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262; *J.B. and Others v. Hungary* (dec.), 2018, § 59 참조). 여러 개인을 대리하는 단체에 수여된 배상의 충분성은 *Društvo za varstvo upnikov v. Slovenia* (dec.), 2017, §§ 48–64 참조. 형사 절차에서 합리적인 시한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국내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배상이나 형의 감경이 없다면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를 제거할 수 없다(*Tempel v. the Czech Republic*, 2021, §§ 77–83). 반면, 전화 통화를 감청당하고 의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강요받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이 침해된 변호사 사건에서는 해당 증거를 파일에서 제외하여 침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변호사가 민사 청구를 제기하여 배상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약 제 8 조와 관련하여 피해자 지위를 상실할 만하다고 보았다(*Mateuț v. Romania* (dec.), 2022, §§ 33–39).

65. 유해한 환경 조건으로 주거를 버리고 개인 자금으로 다른 집을 구입해야 했던 청구인은 협약 제 8 조에 따른 사생활 및 주거 존중권 침해 협의에 대해 피해자 지위를 잃지 않는다(*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7–38).

66. 그 외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Marshall and Others v. Malta*, 2020, §§ 33–34, 46–47 (제 6 조); *Arat v. Turkey*, 2009, § 47 (제 6 조); *Constantinescu v. Romania*, 2000, §§ 40–44 (제 6 조 및 제 10 조); *Guisset v. France*, 2000, §§ 66–70 (제 6 조); *Chevrol v. France*, 2003, §§ 30 이하 참조 (제 6 조); *Kerman v. Turkey*, 2016, § 106 (제 6 조); *Sorbalo v. Moldova* (dec.), 2023, §§ 39–62 (제 6 조); *Moskovets v. Russia*, 2009, § 50 (제 5 조); *Bivolaru v. Romania* (no. 2), 2018, §§ 168–175; *Y.Y. and Y.Y. v. Russia*, 2022, § 51, (제 8 조); *X and Y v. Romania*, §§ 109–114 (제 8 조); *Wikimedia Foundation, Inc. v. Turkey* (dec.), 2022, §§ 47–51, (제 10 조); *Kemal Çetin v. Turkey*, 2020, § 33 (제 11 조); *Moon v. France*, 2009, §§ 29 이하 참조 (제 1 의정서 제 1 조); *D.J. and A.–K.R. v. Romania* (dec.), 2009, §§ 77 이하 참조 (제 4 의정서 제 2 조); 및 *Sergey Zolotukhin v. Russia* [GC], 2009, § 115 (제 7 의정서 제 4 조); *Dalban v. Romania* [GC], 1999, § 44 (제 10 조); *Güneş v. Turkey* (dec.) (제 10 조), 2004; *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2017, §§ 39–40, (제 1 의정서 제 2 조) 참조.

67. 법인이 협약 절차 도중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2017, § 94).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단독 주주들이 회사 명의로 청구를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조세 분쟁에 관한 *Euromak Metal Doo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8, §§ 32–33; 또한, 재판소에 청구한 후 운영을 중단한 회사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이 그 활동을 이어받은 사건인 *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and publisuisse SA v. Switzerland*, 2020, § 43 참조).

68. 청구인이 피해자 지위/청구인적격을 상실하여 사건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심리적격 결정 이후 국내 수준에서의 사건 해결은 *Ohlen v. Denmark*(종료), 2005 참조. 재판소가 심리 중인 청구사건의 쟁점인 권리 양도 합의는 *Dimitrescu v. Romania*, 2008, §§ 33–34 참조.

69.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여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Pisano v. Italy* (종료) [GC], 2022, § 39) 또는 청구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소 이후 발생한 사건에 비추어 협약 제 37 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목록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심리한다. 대재판부로 관할권 이양 결정을 내린 후 전개 과정은 *El Maj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종료) [GC], 2007, §§ 28–35 참조. 청구사건을 심리적격으로 선언한 이후는 *Shevanova v. Latvia* (종료) [GC], 2007, §§ 44 이하 참조. 소재판부 판결 이후는 *Sisojeva and Others v. Latvia* (종료) [GC], 2007, § 96 참조.

f. 청구인 사망

70. 원칙적으로 원 청구인이 사망하기 전 제소하면 상속인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해당 사건에 충분한/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 71–73; *Malhous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0;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2019, §§ 23–24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2012, § 71; *Ergezen v. Turkey*, 2014, § 30; *Pais Pires de Lima v. Portugal*, 2019, §§ 36–40; *Karastelev and Others v. Russia*, 2020, § 51; *Mile Novaković v. Croatia*, 2020, §§ 33–34).

71. 그러나 청구인이 절차 도중 사망하였고, 제소 진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진행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청구인의 상속인 또는 충분히 가까운 친척이 아니며 제소의 진행에 다른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소는 협약과 그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 존중을 위해 사건의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Paposhvili v. Belgium* [GC], §§ 129–133; *Delecolle v. France*, 2018, § 39; *Karner v. Austria*, 2003, §§ 25 이하 참조) 해당 청구사건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다(*Léger v. France* (종료) [GC], 2009, § 50; *Hirsia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57; *Burlya and Others v. Ukraine*, 2018, §§ 70–75).

72. 예를 들어, *Raimondo v. Italy*, 1994, § 2, and *Stojkovic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07, § 25 (고인의 부인과 자녀); *X v. France*, 1992, § 26 (부모); *Malhous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0, (조카와 잠재적 상속인); *Velikova v. Bulgaria* (dec.), 1999; *Ivko v. Russia*, 2015, §§ 64–70 and *Delecolle v. France*, 2018, §§ 39–44 (훈인하지 않은 또는 사실상 파트너), *Kaganovskyy v. Ukraine*, 2022, §§ 67–72 (정신의료기관에 감금되어 있었고 친척이 제소를 바라지 않은 취약한 사람의 사건에서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 연합); 대조적으로 *Thévenon v. France* (dec.), 2006 (사망자와 무관한 포괄적 수유자); *Léger v. France* (종료) [GC], 2009, §§ 50–51 (조카); *Savenko*

and Others v. Russia, 2021, § 53 (청구인 사망 12년 전 이혼하고 이후 청구인과 긴밀히 연락한 적 없는 전 부인) 참조.

4. 대리

73. 청구인이 직접 청구하는 대신 재판소규칙 규칙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은 규칙 제 45 조제 3 항에 따라 정식으로 서명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재판소에서 대리하고자 하는 제 34 조가 의미하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Post v. the Netherlands* (dec.), 2009;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02 – 또한 *Oliyevskyy v. Ukraine* (dec.), 2020, §§ 16–22 및 청구인들이 그들의 대리인과 연락을 유지하지 않은 *V.M. and Others v. Belgium* (종료) [GC], §§ 32–41 참조, 대리인이 청구인들과 전화와 웹초앱으로 연락을 유지한 *N.D. and N.T. v. Spain* [GC], 2020, §§ 69–79 및 참고 문헌과 대조, 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인권 존중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청구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제 37 조제 1 조 말미). 행위권의 유효성은 *Aliev v. Georgia*, 2009, §§ 44–49 참조. 청구사건의 진정성은 *Velikova v. Bulgaria*, 2000, §§ 48–52 참조.

74.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재판소에 대리인으로 출석한다. 친생부모로서 당사자적격은, 그 부모가 심지어 또는 특히 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고 당국의 결정과 행위가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신하여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Iosub Caras v. Romania*, 2006, § 21). 어떤 경우라 해도, 청구인적격과 관련된 핵심 기준은 아동의 이익이 주목받지 못하고 아동의 협약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2019, § 157). 부모 간 분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적격으로 자녀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Hromadka and Hromadkova v. Russia*, 2014, § 119; *Y.Y. and Y.Y. v. Russia*, 2022, § 43). 그러나 부모가 공동으로 심각하게 아동을 방임한 사건 등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부모와 자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함을 재판소가 확인하였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2019, § 158 및 *E.M. and Others v. Norway*, 2022, §§ 64–65; *Pedersen and Others v. Norway*, 2020, § 45 사건과 비교 및 대조).

75. 또한, 국가 당국이 협약 제 2 조, 제 3 조 및 제 8 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그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연령, 성별 또는 장애 때문에 취약하여 재판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고려하고 청구인과 피해자 간 관계도 상당히 참작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피해자(들)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면 유효한 형식의 위임장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심리 적격으로 선언되었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03; 다만,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2015, §§ 96–106 사건과 비교 및 대조). 예를 들어, 학대받은 형제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한 사건인 *İlhan v. Turkey* [GC], 2000, § 55; 아내가 부인과 검사를 강요당했다고 남편이 청구를 제기한 *Y.F. v. Turkey*, 2003, § 29; 소송을 위한 후견인의 선임을 받아 국내 절차에서 대리한 아동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청구를 제기한 사건인 *S.P., D.P. and A.T.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6; 이후 친권이 취소된 부모가 위임장을 제출한 사건인 *C.N. v. Luxembourg*, 2021, § 28–33;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후견인이 청구한 사건인 *V.D. and Others v. Russia*, 2019, §§ 80–84 참조. 또한 이와 대조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분과 수분 공급 중단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직접피해자의 부모는 자녀 명의로 또는 대신으로 협약 제 2 조, 제 3 조 및 제 8 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재판소가 판결한 사건인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2015, § 105 및 직접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Lambert and Others* 사건과 다르고, 직접피해자의 부모가 자식 대신 제 2 조 및 제 5 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재판소가 논의했지만 청구인들도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사안을 제기했음을 감안하여 이 점에 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던 사건인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7, § 63–70 참조.

76. 미성년자를 위한 폐쇄 교육기관 배치의 적법성과 관련된 *Blyudik v. Russia*, 2019, §§ 41–4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딸이 쟁점이 된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시점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해당 기관 배치와 관련하여 제 5 조 및 제 8 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소에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딸은 성년이 되자마자 청구 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미 재판소에서 청구인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였다. *Calvi and C.G. v. Italy*, 2023, §§ 68–70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적 보호 조치의 대상으로 요양원에 3년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던 연상의 사촌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77. *H.F. and Others v. France* [GC], 2022, §§ 148–152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던 딸들과 손자들의 송환을 피청구국이 거부한 것에 관하여 청구하면서 협약 제 3 조 및 제 8 조, 제 4 의정서 제 3 조제 2 항에 의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딸들과 손자들이 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협약 및 의정서에 따른 실효적인 권리 보호를 박탈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들과 직접피해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가까운 가족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프랑스 송환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딸들과 손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정황이 있었다.

78. 재판소는 위임장이 없고 협약에 따라 제소하기 전 피해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예외적인 정황에서 협회가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 112). 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피청구국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위험과 더불어 협약 위반 혐의가 심각해도 국제적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Romania – Helsinki Committee on behalf of Ionel Garcea v. Romania*, 2015, § 42; *Kondrulin v. Russia*, 2016, § 31). HIV 양성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발렌틴 쿰페아누(Valentin Câmpeanu)의 취약성, 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제기된 혐의의 심각성, 협약 절차를 대신 제기할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부재, 청구인이 발렌틴 쿰페아누와 여러 번 접촉하였고 사망 후 국내 절차에 관여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툼이 없던 점을 이유로 들며, 청구인 단체들에게 위임장은 없어도 그를 대신하여 행위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104–11).

79. 제 3 조에 따라 심리된 *L.R. v. North Macedonia*, 2020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판소에서 청구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법정후견인이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후견인은 국내 당국 및 재판소에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전반적으로 방치했다는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 3 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를 위반한 사람이 같은 이유로 재판소에 진정을 제기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50). 반면, 청구인을 대리하는 협회는 사건이 공개된 직후 청구인을 방문하였고, 여러 기관에 청구인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지체 없이 검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최고 검찰 당국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갔다. 그 결과 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협회가 청구인을 대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51–53).

80. 제 3 조 및 제 3 조를 결합한 제 13 조에 따라 심리한 *Association Innocence en Danger and Association Enfance et Partage v. France*,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두 곳의

아동보호협회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행위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119–131). 해당 자녀의 상속인으로 알려진 사람 또는 법정 대리인(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모, 형제 세 명과 자매 한 명, 3 촌 관계인 여성 한 명)이 있었지만, 재판소는 이 사건의 예외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 단체들에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였다.

81. *Kaganovskyy v. Ukraine*, 2022, §§ 67–72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7년 10월 간 신경정신의료기관 “특별(집중) 감독실”에 감금된 것에 대해 제 3 조 및 제 5 조에 따라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사망한 후 우크라이나 헬싱키 인권연합은 (청구인의 후견인이었고 청구 진행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형제가 있었지만)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를 진행하였다. 재판소는 결국 협약 제 37 조제 1 항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일반 대중의 관심사와 관련된 심각한 성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존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인권 존중을 위해 재판소가 청구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82. 반면, *Bulgarian Helsinki Committee v. Bulgaria* (de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신발달장애인동시설에서 사망한 미성년자들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청구인 단체는 미성년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접촉한 적이 없고 국내 절차에서 정식으로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59), 또한 직접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청구인 단체가 국내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고, 청구인 단체가 그 목적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소된 사실관계가 단체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재판소가 지적하며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Nencheva and Others v. Bulgaria*, 2013, § 93 참조.

83. 제 3 자가 개입하여 재판소에서 타인을 대리하도록 허용하는 협약 조항은 없다(*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2015, § 110).

B. 개인 청구권 행사의 자유

협약 제 34 조 – 개인의 청구사건

“...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이 권리의 실효적 행사를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지 않는다.”

HUDOC 주제어

청구권 행사 방해(34)

1. 원칙 및 예시

84. 재판소에 청구할 권리는 절대적이며 어떠한 방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협약 기관과 의사소통할 자유를 의미한다(구금 중 서신교환은 *Peers v. Greece*, 2001, § 84; *Kornakova v. Latvia*, 2006, §§ 157 이하 참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에 관한 1996년 유럽협정 참조(CETS No. 161).

85. 국내 당국은 어떤 형태로도 청구인에게 진정을 철회 또는 수정하라는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재판소에 따르면 압력은 청구인 또는 잠재적 청구인, 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강요 및 노골적인 협박 행위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간접 행위 또는 접촉도 가능하다(*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 [GC], 2005, § 102). 재판소는 개인 청구권 행사를 단념시키는 효과를 심리한다(*Colibaba v. Moldova*, 2007, § 68). 피청구국 정부가 가했다는 간접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 행사가 실제로 제한되거나 그 영향이 상당하지 않아도 제 34 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협약

제 34 조 및 제 38 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는 절차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해지는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위축 효과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2019, § 41).

86. 상황에 따라 재판소는 청구인이 개인 청구권의 실효적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협박을 받았나는 문제를 직권으로 제기할 수 있다(*Lopata v. Russia*, 2010, § 147).

87. 청구인의 취약성 및 당국이 청구인에게 영향을 줄 위험을 고려한다(*Iambor v. Romania (no. 1)*, 2008, § 212). 청구인이 재판 전 구금 상태로 가족이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라면 특히 취약할 수 있다(*Cotlet v. Romania*, 2003, § 71).

88. 주목할 만한 예시

- 제소 관련 당국의 심문에 관한 사건: *Akdivar and Others v. Turkey*, 1996, § 105, *Tanrikulu v. Turkey* [GC], 1999, § 131
- 청구인의 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위협: *Kurt v. Turkey*, 1998, §§ 159–65, 국내 절차에서 당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 *McShane v. the United Kingdom*, 2002, § 151, 청구인 변호사에게 징계 및 그 외 조치: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929–33
- 청구인 변호사에게 위임장 서명 관련 경찰 심문: *M.H. and Others v. Croatia*, 2021, §§ 62, 64 및 §§ 325–336, 청구인 변호사 및 통역사에게 정당한 배상금 관련 경찰 심문: *Fedotova v. Russia*, 2006, §§ 49–51, 정부 대리인이 명령한 조사 관련: *Ryabov v. Russia*, 2008, §§ 53–65
- 청구인의 변호사와 의사가 만날 수 없음: *Boicenco v. Moldova*, 2006, §§ 158–59
- 청구인이 대리인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Shtukaturov v. Russia*, 2008, § 140(변호사 방문 금지 및 전화 통화와 서신 금지가 제 34 조에 따른 피청구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된 사건) 및 *Zakharkin v. Russia*, 2010, §§ 157–60(청구인의 재판소 대리인이 전문 변호사가 아니며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과의 접촉을 제한한 사건)
- 법정 대리인이 구금된 청구인에게 제소를 목적으로 작성하여 재판소 제소를 마무리할 권한 양식을 동봉하여 보낸 편지를 가로챔: *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2019, §§ 39–45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 회의실에서 변호사–청구인 간 논의의 비밀을 보장하지 않음: *Oferta Plus SRL v. Moldova*, 2006, § 156
- 교정당국의 위협: *Petra v. Romania*, 1998, § 44
- 교정당국이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재판소로 제소사건 전달 거절: *Nurmagomedov v. Russia*, 2007, § 61
- 구금 조건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증인에게 가해지는 압력: *Novinskiy v. Russia*, 2009, §§ 119 이하
- 서신 작성용 필기구 및 재판소 제소에 필요한 문서 제공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누락하면서 소송을 단념시키는 교정당국의 발언: *Gagiu v. Romania*, 2009, §§ 94 이하
- 수감된 청구인의 재판소 제소에 필요한 문서 사본 제공을 당국이 거부: *Naydyon v. Ukraine*, 2010, § 68; *Vasiliy Ivashchenko v. Ukraine*, 2012, §§ 107–10
- 수감자의 재판소 제소와 관련된 대체 불가능한 서류를 교정당국이 분실: *Buldakov v. Russia*, 2011, §§ 48–50;
- 재판소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국이 청구인을 협박 및 압박: *Lopata v. Russia*, 2010, §§ 154–60.

89. 사건의 정황에 따라 개인 청구권 간섭 혐의의 심각성이 낮을 수도 있다(*Sisojeva and Others v. Latvia* (종료) [GC], 2007, §§ 118 이하). 또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6개월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스웨덴 법률에 따라 법원 심리 녹음테이프를 파기한 것은 청구인의 실효적인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Holland v. Sweden* (dec.), 2010 사건, 신체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특수 시설이 부족하여 국내 구제절차를 경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소가 보기에는 청구인의 실효적인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던 *Farcăș v. Romania* (dec.), 2010 사건, 교정당국이 수감자의 편지를 재판소에 발송하는 우편료 지급을 거부하였지만, 재판소가 보기에는 청구인의 실효적인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던 *Yepishin v. Russia*, 2013, §§ 73–77 사건, 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국내 당국의 결정은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유의미하게 독자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재판소가 보기에는 청구인의 실효적인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던 *Yam v. the United Kingdom*, 2020, §§ 79–83 사건 참조.

2. 피청구국의 의무

a. 재판소규칙 제 39 규칙

90. 재판소규칙 규칙 제 39 조에 따라 재판소는 임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 [GC], 2005, §§ 99–129). 체약국 당국이 재판소가 지시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밟지 않으면 제 34 조 위반이다(*Paladi v. Moldova* [GC], 2009, §§ 87–92).

91. 정부는 재판소에 임시 조치 준수를 입증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인 경우 준수하지 못하게 한 객관적인 장애물이 있었으며 정부는 그 장애를 제거하고 재판소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모든 합리적 단계를 밟았음을 입증한다(예를 들어 *A.N.H. v. Finland* (dec.), 2013, § 27 참조).

92. 예시

- 이와 관련하여 규칙 제 39 조에 명시된 임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금 중인 망명신청자와 변호사가 적시에 만나지 못함: *D.B. v. Turkey*, 2010, § 67
- 임시 조치를 위반하여 피구금자를 이라크 당국에 이송: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2010, §§ 162–65
- 임시 조치를 위반하여 첫 번째 청구인 추방: *Kamaliyev v. Russia*, 2010, §§ 75–79;
- 제 8 조와 관련하여 부주의로 인해 임시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음: *Hamidovic v. Italy* (dec.), 2011;
- 수감자를 전문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임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음: *Makharadze and Sikharulidze v. Georgia*, 2011, §§ 100–05, 또는 그러한 조치 준수를 부당하게 지연: *Sy v. Italy*, 2022, §§ 167–174
- 본국 송환 시 고문당할 실제적 위험을 이유로 재판소가 지시한 임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음: *Mannai v. Italy*, 2012, §§ 54–57; *Labsi v. Slovakia*, 2012, §§ 149–51
- 우즈베키스탄에서 학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임시 조치가 시행 중인 사람의 비밀 이송: *Abdulkhakov v. Russia*, 2012, §§ 226–31
- 학대 및 임시 조치 회피의 실제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타지키스탄으로 강제 이송: *Savriddin Dzhurayev v. Russia*, 2013, §§ 218–19, 또한 구금 중인 타지키스탄 국민이 타지키스탄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막지 못해 임시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 당국 관련 참조: *Nizomkhon Dzhurayev v. Russia*, 2013, §§ 157–59.

- 청구인이 재판소에 임시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성하여 추방 준비: *M.A. v. France*, 2018, § 70.

93. 임시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재판소의 몫이므로, 임시 조치를 무효로 하도록 재판소를 설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이를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Paladi v. Moldova* [GC], 2009, §§ 90–92; *Olaechea Cahuas v. Spain*, 2006, § 70; *Grori v. Albania*, 2009, §§ 181 이하).

94. 규칙 제 39 조 적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추방 결정 집행을 유예하게 할 수 없다(*Al-Moayad v. Germany* (dec.), 2007, §§ 122 이하; 또한 신의성실로 재판소에 협력해야 하는 피청구국의 의무 참조).

95. 제 34 조 청구와 관련하여 경료 요건이 없고, 임시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한은 오직 재판소에만 있지만, 재판소는 제 34 조에 따른 청구가 당국의 생명권 보호 실패에 대한 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후자의 제소가 국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 34 조 청구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 있다(*Ahmet Tunç and Others v. Turkey* (dec.), 2019, §§ 141–145).

b. 사실 확정

96. 재판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당사자의 행위는 증거를 구할 때 참작될 수 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61).

97.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사건의 유형에 따라 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혐의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도 있으며, 협약 제 34 조에 따라 제정된 개인 청구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려면 제소사건을 적절하고 실효적으로 심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azorkina v. Russia*, 2006, § 170; *Tahsin Acar v. Turkey* [GC], 2004, § 253). 이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재판소가 진상을 조사하든 제소사건 심리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수행하든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판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를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추론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국이 협약 제 38 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ibid.*, § 254; *Imakayeva v. Russia*, 2006, § 200;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202).

98. 재판소가 요청한 증거를 제공할 의무는, 그때가 정부에 제소사건을 처음 전달한 시점이든 절차의 후속 단계이든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순간부터 피청구국 정부에 구속력을 발휘한다(*ibid.*, § 203; *Enukidze and Girgviliani v. Georgia*, 2011, § 295; *Bekirski v. Bulgaria*, 2010, §§ 111–13). 재판소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요청된 자료 전체를 제출하고 누락된 요소를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203). 또한, 요청된 자료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상당히 지연된다면 재판소는 피청구국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소가 정한 시한 내에 신속히 제출한다(*ibid.*).

99. 재판소의 이전 판단에 따르면 피청구국은 요청받은 문서 제출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예를 들어 *Maslova and Nalbandov v. Russia*, 2008, §§ 128–29 참조) 재판소가 열람할 원본 제출을 거부하며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사본을 제출하여(예를 들어 *Trubnikov v. Russia*, 2005, §§ 50–57 참조) 제 38 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100. 정부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기밀 유지 또는 보안 문제를 내세운다면, 재판소는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기밀로 취급할 합리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205). 기밀 보고서를 재판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ibid.*, §§ 207 이하, *Nolan and K. v. Russia*, 2009, §§ 56 이하.

101. 제 34 조 및 제 38 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Bazorkina v. Russia*, 2006, §§ 170 이하 및 175 참조. 개인 청구권의 실효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 34 조는 일종의 일반 조항이지만, 제 38 조는 국가가 재판소에 협력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c. 조사

102. 피청구국은 제소사건의 실효적 심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지원할 의무도 있다(제 38 조)(*Cakici v. Turkey* [GC], 1999, § 76). 진상 조사 방문을 방해하면 제 38 조 위반에 해당한다(*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2005, § 504).

I. 심리부적격의 절차상 근거

A.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

협약 제 35 조제 1 항 – 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 국내 구제절차 경료 후에만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

HUDOC 주제어

국내 구제절차 경료(35-1) – 국내 구제절차 경료 면제(35-1) – 실효적 국내 구제절차(35-1)

103. 제 35 조 본문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칙에 기반을 둔다. 국내 구제절차 경료 의무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다(예를 들어 인터한텔 사건(*Switzerland v. the United States*) 1959년 3월 21일 판결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 41 조제 1 항제(c)호) 및 그 선택의정서(제 2 조 및 제 5 조제 2 항제(b)호), 미주인권협약(제 46 조) 및 아프리카 인권헌장(제 50 조 및 제 56 조제 5 항) 등 다른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971 사건에서 국가는 국내 구제절차 경료 규칙의 이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55).

104. 재판소는 국가의 인권 보호 제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며, 국내법과 협약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판단할 기회는 일차적으로 국내 법원에 있어야 한다(*A, B and C v. Ireland* [GC], 2010, § 142). 국내 법원이 판단하였지만 이어서 스트라스부르에도 청구하게 된다면, 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핵심 세력과 계속해서 직접 접촉하고 있으므로 국가 법원의 견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42).

105. 제 35 조제 1 항은 국내 구제절차에만 해당하며, 국제기구 체제에서는 구제절차를 경료할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로 청구인이 사건을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제출한다면,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b)호에 따라 제소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I.E. 참조). 다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선결적 판결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구제절차를 경료해야 할 수도 있다(제 1 의정서 제 1 조 권리 침해 협의와 관련된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할 기준에 대한 CJEU의 선결적 판결이 국내 법원에 지침을 제공한 *Laurus Invest Hungary KFT and Others v. Hungary* (dec.), 2015, § 42). 특정 기구의 법적 성격,

설립 수단, 권한, 기존 법률 체계에서의 위치(해당하는 경우), 자금 조달 등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국내 기구인지 국제기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재판소의 몫이다(*Jelič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2005; *Peraldi v. France* (dec.), 2009) (“소권 남용” 참조).

1. 규칙의 목적

106. 경료 규칙의 근거는 국가 당국, 주로 법원에 협약 위반 혐의를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Gherghina v. Romania* (dec.) [GC], 2015, §§ 84–89;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21 및 이하;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69–77 의 원칙 요약 및 사건 내 추가 참고 문헌 참조). 이는 제 13 조에 반영된 국내 법질서가 협약 권리 침해에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협약 체제의 보충성에서 중요한 측면이다(*Selmouni v. France* [GC], 1999, § 74; *Kudła v. Poland* [GC], 2000, § 152; *Andrášik and Others v. Slovakia* (dec.), 2002). 협약 조항이 국내법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Eberhard and M. v. Slovenia*, 2009). 국내 구제절차 경료 규칙은 협약에 따른 보호 체계가 기능하려면 필수적인 부분이자 기본 원칙이다(*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 69 및 97,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69–77, 특히 *Akdivar and Others v. Turkey*, 1996 사건에 있는 추가 참고문헌).

107. 어떤 국내 절차가 제 35 조제 1 항이 의미하는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청구인이 반드시 경료해야 하고 따라서 4 개월 시한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인, 특히 청구인의 진정, 해당하는 협약 조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 범위, 피청구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 및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34; 또한 *Kozacioğlu v. Turkey* [GC], 2009, § 40 and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16 참조).

2. 규칙의 적용

a. 유연성

108. 경료 규칙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황금률이라고 평할 수 있다. 위원회와 재판소는 인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과도한 형식주의 없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Ringeisen v. Austria*, 1971, § 89; *Lehtinen v. Finland* (dec.), 1999; *Gherghina v. Romania* (dec.) [GC], 2015, § 87).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 후 심리적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내 구제수단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것도 허용한다(*Molla Sali v. Greece* [GC], § 90).

109. 경료 규칙은 절대적인 것도,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Kozacioğlu v. Turkey* [GC], 2009, § 40).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해당 국가의 최고 법원조차도 사용할 의무가 없는 구제절차의 도움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라고 결정하였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16–18). 재판소는 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제출물을 얼마나 “서둘러” 제출해야 했는지 강조하여 청구인들의 답변 시한이 촉박했음을 참작하였다(*Financial Times Lt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9, §§ 43–44). 그러나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특히 국내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활용하고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Saghhinadze and Others v. Georgia*, 2010, §§ 83–84).

110. 국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비정부기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국내 구제절차 경료의 한 가지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공익 소송이 개인 청구인의 상황 및 구체적인 불만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인 청구인이 직접 국내 절차를 제기하는 것을 면책할

수는 없다(로마족 아동 차별 주장에 관한 *Kósa v. Hungary* (dec.), 2017, §§ 55–63).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 78–81 사건에서 재판소는 비정부기구가 비록 재판소에 제소한 청구인은 아니지만,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법정 등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설립된 단체였으므로, 국내 형사 절차에서 청구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검찰과 국내 법원(2 건)에서 청구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문이나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도 참작하였다(또한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37–39 참조).

b. 국내 규칙 및 제한 사항 준수

111. 청구인은 국내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은 제소는 제 35 조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Ben Salah Adraqui and Dhaime v. Spain* (dec.), 2000; *Merger and Cros v. France* (dec.), 2004; *MPP Golub v. Ukraine* (dec.), 2005; *Agboví v. Germany* (dec.), 2006;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2 및 80). 청구인의 절차상 실수를 이유로 심리를 위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35 조제 2 항은 준수되지 않은 것이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43). 청구인이 국내 규칙(예: 헌법적 구제를 구하기 전 통상적인 구제절차를 경료해야 한다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재판소는 해당 규칙이 법률 또는 확립된 판례법에서 파생되었으며 원래부터 존재하던 의무적인 법정 요건인지 확인해야 한다(*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69; *Pop-llić and Others v. Serbia*, 2014, § 42).

112. 다만, 상소법원이 청구의 본안을 심리한다면 심리부적격으로 본다고 하여도 제 35 조제 1 항은 준수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Voggenreiter v. Germany*, 2004).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협약 권리의 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국내 헌법재판소가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하여도 가용한 구제절차가 경료된 것으로 본다(*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2020, §§ 53, 56–57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국내법에 규정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관할 당국이 그 청구의 실체를 심리하였다며 마찬가지로 본다(*Vladimir Romanov v. Russia*, 2008, § 52). 법적 요건을 간신히 자킬 정도로 매우 피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청구라 하여도 법원이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본안 판결을 내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이다(*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o. 2)* [GC], 2009, §§ 43–45).

c. 여러 구제절차의 존재

113. 실효성이 있을 구제절차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청구인은 그중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Moreira Barbosa v. Portugal* (dec.), 2004; *Jelič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2005; *Karakó v. Hungary*, 2009, § 14; *Aquilina v. Malta* [GC], 1999, § 39). 실제로 하나의 구제절차를 시도하였다며, 본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한 구제절차를 하나 더 사용할 필요는 없다(*Riad and Idiab v. Belgium*, 2008, § 84; *Kozacioğlu v. Turkey* [GC], 2009, §§ 40 이하; *Micallef v. Malta* [GC], 2009, § 58; *Lagutin and Others v. Russia*, 2014, § 7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77). 사건에 가장 적합한 구제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청구인의 몫이다(청구인이 민사 당사자로 참여한 지 7년 만에 형사 절차가 중단되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Fabris and Parziale v. Italy*, 2020 사건 §§ 49–59; *O'Keeffe v. Ireland* [GC], 2014, §§ 110–111; 청구인이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민사 당사자로서 형사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선택에 관한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76). 요약하면, 국내법이 서로 다른 법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병행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구제절차 중 한 가지를 통해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는 청구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구제절차를 여러 가지 이용할 필요는 없다(*Jasinskis v. Latvia*, 2010, §§ 50 and 53–54). 이와 상반되는 사례(연방

헌법재판소와 연방 기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청구 간 서로 차이 나는 실효성 수준)는 *Köhler v. Germany* (dec.), 2021, §§ 67–74 참조.

d. 실질적으로 제기된 진정

114. 국내 절차에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협약상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Castells v. Spain*, 1992, § 32; *Ahmet Sadik v. Greece*, 1996, § 33;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1999, § 38; *Azinas v. Cyprus* [GC], 2004, §§ 40–41;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2, 79 및 81–82; *Platini v. Switzerland* (dec.), 2020, § 51; *Kemal Çetin v. Turkey*, 2020, §§ 28–30). 즉, 청구인이 협약 조항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국내법에 근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변론을 제기해야만 그 위반 혐의에 대해 구제할 기회를 국내 법원에 부여할 수 있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42, 144 및 146;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17; *Karapanagiotou and Others v. Greece*, 2010, § 29; *Marić v. Croatia*, 2014, § 53; *Portu Juanenea and Sarasola Yarzabal v. Spain*, 2018, §§ 62–63; *Rodina v. Latvia*, 2020, §§ 81–83 및 최종 관할권 수준에서 둑시적으로라도 제기되지 않은 진정과 관련하여 *Association Les témoins de Jéhovah v. France* (dec.), 2010; *Nicklinson and Lamb v. the United Kingdom* (dec.), 2015, §§ 89–94; *Peacock v. the United Kingdom* (dec.), 2016, §§ 32–41). 청구인이 협약 권리 위반에 대한 진정과 관련 없는 다른 근거로 문제가 된 조치를 번복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효적 구제절차”가 경료되었다고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공표된 협약 진정이 있었어야 한다(*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5; *Nicklinson and Lamb v. the United Kingdom* (dec.), 2015, § 90).

115. 요컨대, 청구인이 관련 법원에 사건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 35 조제 1 항의 요건 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거나 심지어 심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지라 하여도(즉, ‘법률은 법원이 안다(jura novit curia)’ 원칙 적용), 청구인은 재판소가 국내 구제절차 경료라는 목적에서 국내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변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17; *Fu Quan, s.r.o.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171 참조), 추후 재판소에 제기하고자 하는 진정은 먼저 국내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여러 당국 중 *Kandarakis v. Greece*, 2020, § 77 참조). 재판소는 스스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제기된 변론 및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청구사항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Grosam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91). 따라서 국내 구제절차를 적절히 경료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청구인의 제출물만으로는 협약 위반이 “명백”하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실제로 청구인이 이에 대해 차후 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진정이 국내 차원에서도 확실히 제기되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진정을 제기했어야 한다(*Peacock v. the United Kingdom* (dec.), 2016, § 38; *Farzaliyev v. Azerbaijan*, 2020, § 55; *Grosam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90; *Fu Quan, s.r.o.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145 및 172).

116. 예를 들어 청구인이 협약 제 2 조 또는 제 3 조의 절차 단락을 따르는 실효적인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협약 제 35 조제 1 항을 준수하려면, 국내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법적 주장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관할 국내 법원에서 해당 수사의 효력을 다투고, 수사 과정, 기간 및 후속 법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법원이 수사의 실효성을 심사하도록 관련 사실 요소를 언급하면 된다(*Hanan v. Germany* [GC], 2021, §§ 149–151).

117. 한편, 국내법은 법원이 협약 진정사항의 실체에 적절히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구제절차에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P.C. v. Ireland*, 2022, § 107).

e. 존재 및 적절성

118. 청구인은 해당 시점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스스로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내 구제절차, 즉 접근할 수 있고 진정사항에 대해 구제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합리적인 구제절차일 때만 경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Sejdovic v. Italy* [GC], 2006, § 46; *Paksas v. Lithuania* [GC], 2011, § 75; 또한 협약 제 9 조를 기준으로 법리에 대한 상소의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에 관한 *S.A.S. v. France* [GC], 2014, § 61 사건에서 재판소의 보충성 고려사항 참조).

119. 예를 들어 법원에 결정 심사를 요구하거나(*Cinar v. Turkey* (dec.), 2003; *Prystavskaya v. Ukraine* (dec.), 2002) 절차 재개를 요청하는 재량적 또는 특별 구제절차는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요청이 사실상 실효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확립되어 있거나(*K.S. and K.S. AG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94; *Shibendra Dev v. Sweden* (dec.), 2014, §§ 41–43, 45 및 48) 법적 효력을 획득한 판결의 취소만이 피청구국의 법체계 내에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Kiiskinen and Kovalainen v. Finland* (dec.), 1999; *Nikula v. Finland* (dec.), 2000; *Dinchev v. Bulgaria* (dec.), 2017, §§ 27–29) 같은 특수한 정황을 제외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상급 기관에 대한 상소는 실효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Horvat v. Croatia*, 2001, § 47; *Hartman v. the Czech Republic*, 2003, § 66), 청구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고 중재자의 재량 행사에 의존하는 구제절차 역시 실효적이지 않다(*Tănase v. Moldova* [GC], 2010, § 122). 특히 형사 사안에서 상급 검사에 대한 상소는 단순한 위계적 질서에 따른 상소가 아니라 이를 심리하게 할 개인적 권리가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있을 때만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된다(*Aspiotis v. Greece* (dec.), 2022, § 52 및 *a contrario*, *Belevitskiy c. Russia*, 2007, §§ 59–60). 정부 부서에 대한 진정은 위계적 질서에 따른 진정에 해당하며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생각하지 않는다(*Polyakh and Others v. Ukraine*, 2019, § 135; *Milovanović v. Serbia*, 2019, § 104). 원칙상 의무사항이 아닌 상소(옴부즈맨)의 실효성은 *Egmez v. Cyprus*, 2000, §§ 66–73 의 논리 참조. 마지막으로, 정확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국내 구제절차는 실효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William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9,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Nicholas v. Cyprus*, 2018, §§ 38–39).

120. 현법재판소에 대한 개인의 제소가 협약 제 35 조제 1 항이 요구하는 것인지는 피청구국 법체계의 특수성과 현법재판소의 관할권 범위에 따라 크게 다르다(*Uzun v. Turkey* (dec.), 2013, §§ 42–71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따라서 현법재판소의 관할권이 법률 조항의 합헌성 및 상위법 조항과의 양립성 심사로 제한되는 국가에서는 청구인이 법령 또는 규정의 조항 자체가 협약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현법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Grišankova and Grišankovs v. Latvia* (dec.), 2003; *Liepājnieks v. Latvia* (dec.), 2010). 그러나 청구인이 그 자체로는 위헌이 아닌 법령 또는 규정의 잘못된 적용 또는 해석을 단순히 고발하는 경우라면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Smirnov v. Russia* (dec.), 2006; *Szott-Medyńska and Others v. Poland* (dec.), 2003; *Petrova v. Latvia*, 2014, §§ 69–70). 연방국이라면 연방 현법재판소와 연방 구성체의 현법재판소에 제기된 청구의 실효성에 대해 재판소는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Köhler v. Germany* (dec.), 2021, §§ 67–74). 또한 재판소는 현법재판소에 개인이 낸 청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청구를 적절히 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발전하였는지 여부(사회적/국유 기업에 대해 내려진 판결의 집행 불능에 관한 *Riđić and Others v. Serbia*, 2014, §§ 68–74) 및 원칙적으로 실효적인 그러한 구제절차가 법적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도 실제로 실효적인지 여부(협약 제 3 조에 따른 구금 조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Story and Others v. Malta*, 2015, §§ 82–85) 역시 참작하였다. 예를 들어, 현법재판소가 최근 사건에서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을 심사하면서 재판소의 판례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자 재판소는 현법소원이 실효적인 구제절차라고 보았다(*Kuš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19, §§ 104–105). 나아가 재판소는 “구제절차”라는 용어를 폭넓게 해석하므로 업격한 의미에서 구제절차가 아닌 구제 조치도

경료되어야 한다(쟁점이 된 약식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3 인 판사 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에 관한 *Dos Santos Calado and Others v. Portugal*, 2020, § 91).

121. 재판소가 부적절하다고 본 구제절차를 청구인이 시도한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된 시간도 4개월 시한에 포함되므로 해당 제소사건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될 수 있다(*Rezgui v. France* (dec.), 2000; *Prystavska v. Ukraine* (dec.), 2002).

f. 가용성 및 실효성

122. 구제절차는 이론상으로도 실제로도 확실히 존재해야 한다. 특정 구제절차가 가용성 및 실효성 기준을 지키는지 판단하려면 개별 사건의 고유한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아래 4 참조). 국내 법원이 취하는 입장은 국내 법질서에 충분히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는 해당 법원의 판례법상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한 “실효적”이지 않다(*Ferreira Alves v. Portugal* (no. 6), 2010, §§ 27–29).

123. 사법적 구제절차가 실효적이려면 국내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협약 관련 진정의 실체를 적절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P.C. v. Ireland*, 2022, § 107).

124.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종결된 구금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용하고 충분한 배상적 구제절차, 즉 승소 가능성이 합리적인 구제절차가 협약 제 35 조제 1 항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Lienhardt v. France* (dec.), 2011; *Rhazali and Others v. France* (dec.), 2012; *Ignats v. Latvia* (dec.), 2013; *J.M.B. and Others v. France*, 2020, § 163). 그러나 청구인이 제소 당시에도 여전히 구금 중인 상태에서 구제절차가 실효적이려면 제소하게 만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Torreggiani and Others v. Italy*, 2013, § 50;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181 및 192–93; *Vasilescu v. Belgium*, 2014, §§ 70 및 128).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구금 조건에 대해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용하고 실효적인 예방적 구제절차를 적절히 사용한 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배상적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부적절한 구금 조건으로 머무르는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실효적인 예방적 구제절차를 찾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러한 조건으로 배치되었던 과거를 보상하는 보상적 구제절차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기간은 국내 구제절차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Ulemelek v. Croatia*, 2019, §§ 84–88). 재판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구제절차를 심리한 바 있으며, 예를 들어 *Petrescu v. Portugal*, 2019, §§ 81–84, *J.M.B. and Others v. France*, 2020, §§ 212–221; *Shmelev and Others v. Russia* (dec.), 2020, §§ 123–131 참조.⁴

125. 청구인이 제 3 국에서 제 2 조 또는 제 3 조를 위반할지도 모르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체약국으로부터 퇴거되지 않고자 한다면, 집행정지 효과가 있는 구제절차만 실효적이다(제 4 의정서 제 3 조 및 제 4 조 진정은 *M.K. and Others v. Poland*, 2020, §§ 142–148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다시 말해, 어떤 구제절차에 집행정지 효과가 있다면 청구인은 해당 절차를 경료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 심사가 가능하고 사법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퇴거 금지 조치의 역할을 한다면, 사법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법원에 제소하거나 또는 퇴거를 연기하기 위해 재판소규칙 규칙 제 39 조에 따라 임시 조치를 실제로 요청하기 전 경료해야 하는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간주되어야 한다(*NA v. the United Kingdom*, 2008, § 90; *A.M. v. France*, 2019, §§ 64 및 79).

126. 협약 제 5 조의 맥락에서, 예방적 및 배상적 구제절차는 상보적이다. 자유의 박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석방 가능성성이 없는 구제절차는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간주될 수 없다.

4. 수감자 권리 가이드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국내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구금이 종료되었다면, 위반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배상금 지급을 끌어낼 수 있는 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그 실효성이 설득력 있게 실제로 입증되었다면 추구할 필요가 있다(형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판 전 구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전에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청구가 실효적인 구제책으로 생각되지 않은 경우인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205–214; 또한 민사 법원에서의 배상 청구가 제 5 조에 따라 제출된 구체적인 진정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절차라고 생각되지 않은 경우인 *Dubovtsev and Others v. Ukraine*, 2021, §§ 67–71 참조).

127. 재판소는 실효적인 구제절차는 과도한 지체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tory and Others v. Malta*, 2015, § 80). 절차에 걸린 기간에 관한 사건이라면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고안하여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구제절차가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그러한 구제절차는 실효성이 없다고 간주하고 보상적 구제절차만 도입할 수도 있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83 이하; *Marshall and Others v. Malta*, 2020, §§ 82). 합리적 시간 원칙에 부합하려면 소송 기간에 대한 구제절차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두 관할권에서 집행 단계까지 포함하여 2년 6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ibid.*, § 88).

128. 판결 미집행에 대해서 재판소는 *Solonskiy and Petrova v. Russia* (dec.),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판결 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당국을 상대로 대리 책임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청구인들의 사건에서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34–40).

129. 무죄추정 원칙(제 6 조제 2 항)에 관해서라면, 민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반 혐의에 실효적인 것을 본다. 몇 가지 사건에서 재판소는 무죄 추정의 침해를 인정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다른 절차와 더불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법상의 구제절차가 협약이 의미하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결하였다(청구인이 명예와 존엄 침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던 *Januškevičienė v. Lithuania*, 2019, §§ 58–62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참조).

130. 제 8 조에 따른 양육권/면접교섭권 관련 권리가 계속 미집행되는 맥락에서, 청구인은 주(主)절차에서 그 수가 많을 수 있는 모든 임시 명령의 미집행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이재판소에 일일이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국내 절차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주(主)절차의 맥락과 본안에서 중요할지도 모르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Milovanović v. Serbia*, 2019, § 106).

131. 명예훼손 소송의 맥락이라면, 재판소는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구제절차는 제 8 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사건의 목적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Lewit v. Austria*, 2019, §§ 66–67). 명예권 침해 혐의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수용하여 신속한 시정 절차가 아닌 민사 법원의 배상 절차(양당사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분쟁의 다양한 이해관계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허용)가 적절한 구제절차라고 판단하였다(*Gülen v. Turkey* (dec.), 2008, §§ 58–69).

132. 형사 절차에서 은밀한 감시 사안을 제기하는 것이 제 8 조에 따른 진정과 관련하여 실효적 구제절차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 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증거 채택의 공정성 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간섭이 “법에 따르지” 않거나 “민주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는 제 8 조 진정 내용을 다루거나 해당 진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구제책을 부여할 수 없다면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할 수 없었다(*Hambardzumyan v. Armenia*, 2019, §§ 40–44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Zubkov and Others v. Russia*, 2017, § 88).

133.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위배되는 권력 남용 혐의(지자체 당국의 강제 건물 철거)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문제의 철거에 대한 적법성 판단과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청구인들의 금전적 구제 가능성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금전적 청구가 있는 형사 절차가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FINE DOO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dec.), 2022, § 35).

134. 재판소는 국내 법제에서 가용한 공식 구제절차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절차가 작동하는 일반적인 법적 및 정치적 맥락,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Akdivar and Others v. Turkey*, 1996, §§ 68–69; *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2005, §§ 116–117;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119; *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117–119; *Communauté genevoise d'action syndicale (CGAS) v. Switzerland*, 2022, §§ 55–59).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건의 모든 정황에서 국내 구제절차 경료를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지 심리해야 한다(*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2007, §§ 116–122). 예를 들어, 청구인이 국내 법원에서 제안하였고 다음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명백히 무의미하다고 간주할 수 없는) 구제절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P. v. Ukraine* (dec.), 2019, §§ 52–55). 긴급 재정착을 명령하는 판결 집행이 지연되어 필수 시한을 넘겨 집행된 사건에서, 판결의 장기 미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판소에 제소한 이후에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실효적인 구제절차로 볼 수 있다(*Bouhamla v. France* (dec.), 2019, §§ 35–44).

135. 국경은 사실상이든 법정이든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국내 구제절차 경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체약국 관할권 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실질적인 불편함이나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거부감이 있다 하여도 해당 국가 내에서 국내 구제절차 경료가 면제되지 않는다(피청구국 관할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 관한 *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 98 및 101).

3. 규칙 적용의 한계

136.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 가용한 국내 구제절차 이용 의무에서 청구인을 면제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Sejdovic v. Italy* [GC], 2006, § 55) (아래 4 참조).

137. 이 규칙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의 반복과 국가 당국의 공식적인 용인으로 이루어진 “행정 관행”이 존재하며 절차가 무의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된 경우로 드러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다(*Aksøy v. Turkey*, 1996, § 52; *Georgia v. Russia (I)* [GC], 2014, §§ 125–159; *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2020, §§ 260–263, 363–368;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98–99 및 220–221). 다만, 주장된 “행정 관행”的 두 가지 구성 요소(“행위의 반복” 및 “공식적인 용인”)가 모두 일정의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어야만 협약 제 35 조제 1 항에 따른 경료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2020, § 366).

138. 청구인에게 특정한 구제절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협약 제 34 조에 따른 개인 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가로막는 비례성을 상실한 장애가 된다면, 재판소는 청구인이 그러한 요건에서 면제된다는 결론을 짓는다(*Veriter v. France*, 2010, § 27; *Gaglione and Others v. Italy*, 2010, § 22; *M.S. v. Croatia (no. 2)*, 2015, §§ 123–125).

139. 과정을 남용한 혐의가 없다면 상소 결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경료되어야 하는 구제절차에서 제외된다(*Prencipe v. Monaco*, 2009, §§ 95–97).

140. 협약 제 6 조에 따라 법관의 중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이 법관의 결격사유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국내법이 이를 요구한다면 해당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다(*Škrlj v. Croatia*, 2019, §§ 43–45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문헌). 청구인이 국내 법제의 최종심 사법기관의 중립성 결여를 이유로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을 주장하여 더 이상 가용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보충성 원칙은 국내 구제절차 경료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특별한 성실성(예: 해당 법관 기피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고려 사항은 청구인이 문제의 법원 구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Croatian Golf Federation v. Croatia*, 2020, §§ 110–120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문헌).

141. 원칙적으로, 국내 구제절차 경료(절차 재개 선택지 포함) 요건은 협약 제 41 조에 따라 제출된 정당한 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Jalloh v. Germany* [GC], 2006, § 129; *S.L. and J.L. v. Croatia* (정당한 배상), 2016, § 15).

4. 증명책임 배분

142. 정부가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실효적이고 가용한 구제절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책임은 정부가 진다(*Molla Sali v. Greece* [GC], § 89;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25; *Dalia v. France*, 1998, § 38; *McFarlane v. Ireland* [GC], 2010, § 107;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7). 이러한 구제절차의 가용성은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확실해야 한다(*Vernillo v. France*, 1991). 따라서 해당 구제절차는 국내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Scavuzzo-Hager and Others v. Switzerland* (dec.), 2004; *Norbert Sikorski v. Poland*, 2009, § 117; *Sürmeli v. Germany* [GC], 2006, §§ 110–112). 그 구제절차로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해 배상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Scoppola v. Italy (no. 2)* [GC], 2009, § 71; *Magyar Kereszteny Mennonita Egyház and Others v. Hungary*, 2014, § 50; *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2016, §§ 75–82;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205). 예를 들어, 국가 대리인에 의한 불법적인 무력행사에서 손해배상 판결만을 끌어내는 소송은 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측면에 근거한 진정사항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27 및 234; *Jørgensen and Others v. Denmark* (dec.), 2016, §§ 52–53;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 과실 사건에서 재판소가 청구인이 민사 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한 사건,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37–138; *V.P. v. Estonia* (dec.), 2017, §§ 52–61; *Dumpe v. Latvia* (dec.), 2018, §§ 55–76 참조; 또한 이와 대조적으로 위험한 산업 활동의 맥락에서 국가가 재산 보호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관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 정유소 폭발로 인한 재산 피해에 관한 사건, *Kurşun v. Turkey*, 2018, §§ 118–132 참조). 존재한다고 알려진 구제절차의 개발 및 가용성(그 범위와 적용 포함)은 실무 또는 판례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확인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Mikolajová v. Slovakia*, 2011, § 34). 이는 청구인이 의거하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규정하는 성문법이 있는 관습법적 제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25년 가까이 이론상으로는 가용했지만 사용된 적이 없었던 구제절차에 관한 *McFarlane v. Ireland* [GC], 2010, § 117).

143. 각국 판례의 사례를 제시하면 정부의 변론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이다(*Andrášik and Others v. Slovakia* (dec.), 2002; *Di Sante v. Italy* (dec.), 2004; *Giummarrà and Others v. France* (dec.), 2001; *Paulino Tomás v. Portugal* (dec.), 2003; *Johtti Sapmelaccat Ry and Others v. Finland* (dec.), 2005; *Parrillo v. Italy* [GC], 2015, §§ 87–105; *P. v. Ukraine* (dec.), 2019, § 53). 정부는 국내 판례의 예를 들어 구제절차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체적인 종류의 사건 수가 대규모 관할권보다 적은

소규모 관할권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음을 재판소도 인정한다(*Aden Ahmed v. Malta*, 2013, § 63; *M.N. and Others v. San Marino*, 2015, § 81).

144. 인용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청구 전에 내려졌어야 하고(*Norbert Sikorski v. Poland*, 2009, § 115, *Dimitar Yanakiev v. Bulgaria (no. 2)*, 2016, §§ 53 및 61) 당면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Sakhnovskiy v. Russia* [GC], 2011, §§ 43–44), 재판소에 절차가 계속 중인 동안 새로운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관한 원칙(아래 언급) 참조.

145. 청구인이 국내 법원에서 협약에 직접 의거할 수도 있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구제절차의 확실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Slavgorodski v. Estonia* (dec.), 1999). 이는 국가 헌법의 특정한 일반 조항에 직접 근거한다고 하는 구제절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Kornakovs v. Latvia*, 2006, § 84).

146. 재판소는 국가 입법부가 과도한 사법 절차 기간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제절차를 도입한 경우 이러한 변론을 빨리 수용하는 편이었다(*Brusco v. Italy* (dec.), 2001; *Slaviček v. Croatia* (dec.), 2002). 또한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36–148 참조. *Merit v. Ukraine*, 2004, § 65 사건과 대조.

147.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면하고 나면 청구인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 그 구제절차를 실제로 사용함(*Grässer v. Germany* (dec.), 2004)
- 그 구제절차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건의 고유한 정황에서 부적절하고 실효성이 없었음(*Selmouni v. France* [GC], 1999, § 76;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7; *Gherghina v. Romania* (dec.) [GC], 2015, § 89; *Joannou v. Turkey*, 2017, §§ 86–87 및 §§ 94–106). 예를 들어, 조사 수행이 과도하게 지연된 사건(*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 34) 또는 법리에 대한 상소처럼 일반적으로 가용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접근했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정황에서는 실효적이지 않은 구제절차(*Scordino v. Italy* (dec.), 2003; *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26–27)로 문제의 결정이 최근이더라도 무방하다(*Gas and Dubois v. France* (dec.), 2010). 이는 청구인이 해당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Tănase v. Moldova* [GC], 2010, § 122).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청구인들이라도 일부는 정부가 언급한 법원에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국내 구제절차가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그들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면책되기도 하였다(*Vasilkosk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0, §§ 45–46; *Laska and Lika v. Albania*, 2010, §§ 45–48). 다만, 적용되는 사건은 대단히 독특하다(*Saghinadze and Others v. Georgia*, 2010, §§ 81–83 비교).
- 청구인이 요건에서 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Akdivar and Others v. Turkey*, 1996, §§ 68–75; *Sejdic v. Italy* [GC], 2006, § 55; *Veriter v. France*, 2010, § 60).

148.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국가 대리인이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음에도 국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등 완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황에서는 입증책임이 다시 한번 전환되어 피소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응하여 피청구국 정부가 한 일을 알릴 의무는 피청구국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 70).

149. 특정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청구인이 의심한다는 것만으로는 구제절차를 시도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Epözdemir v. Turkey* (dec.), 2002; *Milošević v. the Netherlands*

(dec.), 2002; *Pellegriti v. Italy* (dec.), 2005; *MPP Golub v. Ukraine* (dec.), 2005;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74 및 84; 헌법재판소 법관의 종립성에 대한 청구인의 우려와 관련된 *Zihni v. Turkey* (dec.), 2016, §§ 23 및 29–30). 오히려 적절한 법원에 제소하여 그 해석 권한을 통해 기존 권리의 발전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이익에 부합한다(*Ciupercescu v. Romania*, 2010, § 169).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법제에서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시험하고 국내 법원이 해석을 통해 그러한 권리의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침해를 당한 개인의 책무이다(*A, B and C v. Ireland* [GC], 2010, § 142;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선결적 항변) [GC], 2014, § 84). 그러나 제안된 구제절차를 예로 들어 확립된 국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성이 없다면,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심리적격을 가로막을 수 없다(*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27;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58).

5. 절차적 측면

150. 청구인의 국내 구제절차 경료 요건은 일반적으로 재판소에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Baumann v. France*, 2001, § 47), 사건의 정황이 특수하면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다(아래 6 참조). 이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규칙 규칙 제 39 조에 따른 임시 조치 요청서에 적용되며, 정식으로 청구하기 전에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A.M. v. France*, 2019, §§ 65 및 68). 그렇지만 재판소는 그러한 구제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때가 청구 직후 심리적격 문제를 결정하기 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Molla Sali v. Greece* [GC], § 90; *Karoussiotis v. Portugal*, 2011, § 57; 청구인이 파기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협약 제 3 조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소한 후 1년 8 개월이 지나 판결이 등록된 경우인 *Cestaro v. Italy*, 2015, §§ 147–148;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인 망명 요청이 재판소 청구 후 이루어진 경우인 *A.M. v. France*, 2019, §§ 66 및 80;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193–194).

151. 정부가 미경료 항변을 제기하려는 경우,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그 의무에서 면제될 수는 있지만, 항변의 성격과 상황이 허용하는 한 제소사건의 심리적격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서를 통해 제기하여야 한다(*López Ribalda and Others v. Spain* [GC], § 83; *Mooren v. Germany* [GC], 2009, § 57–59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GC], 2014, §§ 79–83; *Blokhan v. Russia* [GC], 2016, §§ 96–98; 또한 재판소규칙 규칙 제 55 조 참조). 이 단계에서 제소에 대한 통지가 피청구국 정부에 제공되고 정부가 미경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소는 직권으로 이를 심리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명시적인 심리부적격 항변을 제기해야 한다(피청구국 정부는 청구인이 국내 절차에서 쟁점이 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을 뿐인 *Navalny v. Russia* [GC], 2018, §§ 60–61; 정부는 청구인에게 가용한 다른 구제절차를 설명했지만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은 *Liblik and others v. Estonia*, 2019, § 114). *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건의 특수한 정황을 참작할 때, 정부가 추가 의견서에서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금반언으로 막히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심리적격 및 본안에 관한 정부의 최초 의견서에 이어 대법원의 법적 견해 채택, §§ 33, 35; 그 반대로는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52 참조). 재판소는 본안 단계에서라도 재판소규칙 규칙 제 55 조에 따라 청구의 심리적격 선언 결정을 재고할 수도 있다(*O'Keeffe v. Ireland* [GC], 2014, § 108; *Muršić v. Croatia* [GC], 2016, § 69;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14).

152. 특히 절차적 의무 또는 보장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 미경료를 사유로 한 이의가 본안과 결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03), 제소사건은 예를 들어 다음과 관련된다.

- 제 2 조의 절차 영역(*Dink v. Turkey*, 2010, §§ 56–58; *Oruk v. Turkey*, 2014, § 3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03–104; *Vovk and Bogdanov v. Russia*, 2020, § 58)
- 제 3 조의 절차 영역(*Husayn (Abu Zubaydah) v. Poland*, 2014, § 337; *Al Nashiri v. Poland*, 2014, § 343)
- 제 5 조(*Margaretić v. Croatia*, 2014, § 83)
- 제 6 조(*Scoppola v. Italy (no. 2)* [GC], 2009, § 126)
- 제 8 조(*A, B and C v. Ireland* [GC], 2010, § 155; *Konstantinidis v. Greece*, 2014, § 31)
- 제 13 조(*Sürmeli v. Germany* [GC], 2006, § 78; *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336; *J.M.B. and Others v. France*, 2020, § 176)
- 제 1 의정서 제 1 조(*S.L. and J.L. v. Croatia*, 2015, § 53; *Joannou v. Turkey*, 2017, § 63)

6. 신규 구제절차 생성

153. 국내 구제절차 경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주로 재판소에 제소한 날짜의 소송절차 진행 상황을 참조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신규 구제절차가 수립된 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İçyer v. Turkey* (dec.), 2006, §§ 72 이하). 재판소는 특히 절차에 걸린 기간 관련 사건 *Predil Anstalt v. Italy* (dec.), 2002; *Bottaro v. Italy* (dec.), 2002; *Andrášik and Others v. Slovakia* (dec.), 2002; *Nogolica v. Croatia* (dec.), 2002; *Brusco v. Italy* (dec.), 2001; *Korenjak v. Slovenia* (dec.), 2007, §§ 66–71; *Techniki Olympiaki A.E. v. Greece* (dec.), 2013; *Szaxon v. Hungary* (dec.), 2023, §§ 42–48) 또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배상적 구제절차 관련 사건(*Charzyński v. Poland* (dec.), 2005; *Michałak v. Poland* (dec.), 2005; *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 177 및 §§ 216–218; *Olkhowik and Others v. Russia* (dec.), 2022, §§ 34–41) 또는 국내 판결 미집행 사건(*Nagovitsyn and Nalgiyev v. Russia* (dec.), 2010, §§ 36–40; *Balan v. Moldova* (dec.), 2012) 또는 교도소 과밀화 사건(*Łatak v. Poland* (dec.), 2010; *Stella and Others v. Italy* (dec.), 2014, §§ 42–45) 또는 부적절한 구금 조건 관련 사건(*Shmelev and Others v. Russia* (dec.), 2020, §§ 123–131)에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154. 재판소는 사후 추가된 구제절차의 실효성과 가용성을 고려한다(*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 88). 신규 구제절차가 문제의 사건에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는 *Parizo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08, §§ 41–47 참조. 신규 헌법적 구제절차가 실효적인 사건은 *Cvetković v. Serbia*, 2008, § 41 참조.

155. 판례가 변경되면 청구인에게 국가의 사법체계에 새로 편입된 구제절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공정하냐는 문제에서 재판소는 개인에게 사법적 결정을 숙지할 합리적인 시간을 주지 않고서 그러한 새로운 구제절차의 경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Broca and Texier-Micault v. France*, 2003, § 20). “합리적인 시간”의 범위는 사건별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재판소는 약 6 개월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Depauw v. Belgium* (dec.), 2007; *Yavuz Selim Güler v. Turkey*, 2015, § 26). 예를 들어 *Leandro Da Silva v. Luxembourg*, 2010, § 50 사건에서는 문제의 국내 결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8 개월, 공표된 날로부터 3 개월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McFarlane v. Ireland* [GC], 2010, § 117 참조. 시범 판결 이후 신규 도입된 구제절차인 경우 *Fakhretdinov and Others v. Russia* (dec.), 2010, §§ 36–44 참조. 국내 판례법 이탈은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47 참조.

156. 재판소는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및 *Cocchiarella v. Italy* [GC], 2006 사건에서 국내 구제절차가 절차에 걸린 기간 관련 사건에 실효적이려면 갖추어야 할 특징을 제시하였다(또한 *Vassilios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2010, §§ 54–56 참조). 원칙적으로 절차에 걸린 기간과 관련하여 예방적 또는 배상적 효과가 없는 구제절차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Puchstein v. Austria*, 2010, § 31). 절차에 걸린 기간 관련 구제절차는 특히 과도한 지연 없이 운용해야 하고 구제의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95 및 §§ 204–207).

157. 재판소가 국내법 또는 관행에서 구조적 또는 일반적 결함을 발견하였다면,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실효적으로 조처하여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재판소에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Lukenda v. Slovenia*, 2005, § 98). 재판소는 협약 권리가 침해되면 진실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확보되도록 국가가 기존 구제절차 범위를 수정하거나 신규로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예를 들어, *Xenides-Arestis v. Turkey*, 2005, § 40 및 *Burdrov v. Russia (no. 2)*, 2009, §§ 42, 129 이하 및 140 사건의 시범 판결 참조). 특히 실효적인 국내 구제절차를 보장할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Vassilios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2010, § 41 사건 시범 판결 참조).

158. 피청구국이 신규 구제절차를 도입한 경우 재판소는 그 실효성 유무를 확인하였다(예를 들어, *Robert Lesjak v. Slovenia*, 2009, §§ 34–55; *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 87; *Xynos v. Greece*, 2014, §§ 37 및 40–51; *Preda and Others v. Romania*, 2014, §§ 118–133 참조). 각 사건의 정황을 심리하여 새로운 입법 체계가 실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적용에 근거해야 한다(*Nogolica v. Croatia* (dec.), 2002; *Rutkowski and Others v. Poland*, 2015, §§ 176–186). 그러나 그 입법 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 또는 행정 관행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구제절차가 실효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Nagovitsyn and Nalgiyev v. Russia* (dec.), 2010, § 30).

159. 신규 구제절차가 실효성이 있다고 재판소가 판단한다는 것은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전제 하에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청구인들이 그 구제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규 구제절차가 생성되기 전에 제소된 사건이라 해도 제 35 조 1 항에 따라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되었다(*Grzinčič v. Slovenia*, 2007, §§ 102–110; *İçyer v. Turkey* (dec.), 2006, §§ 74 이하; *Stella and Others v. Italy* (dec.), 2014, §§ 65–68; *Preda and Others v. Romania*, 2014, §§ 134–42; *Muratovic v. Serbia* (dec.), 2017, §§ 17–20;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 177 및 216–218).

160. 다음은 제소 후 가용해진 국내 구제절차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이 신규 구제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심사할 때는 특히 해당 국내 규정의 성격과 규정이 도입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Fakhretdinov and Others v. Russia* (dec.), 2010, § 30).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실효적인 국내 구제절차 도입을 명령한 시범 판결 이후 도입된 구제절차는 청구인들이 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61. 재판소는 또한 국가가 어떤 금전적, 도덕적 의무를 이행할지 선택해야 하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한편, 국가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법 계획과 관련된 상황에서 당국의 넓은 재량 언급하였다(공산주의 정권 시절 수용(收用)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의 장기 미집행에 대해 시범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신규 구제절차와 관련된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 194).

162. 재판소는 시범 판결 이후 도입된 구제절차의 잠재적 실효성에 대해, 신규 입법이 시범 판결 및 협약 기준에 일반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내 당국의 관행이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접근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Muratovic v. Serbia* (dec.), 2017, §§ 17–20;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 222).

163. 또한 재판소는 제 35 조제 1 항의 적용 조건을 제소일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Fakhretdinov and Others v. Russia* (dec.), 2010, §§ 31–33; *Nagovitsyn and Nalgiyev v. Russia* (dec.), 2010, §§ 29 이하 및 40–41).

B. 4 개월 기간 미준수

협약 제 35 조제 1 항 – 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만 ...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HUDOC 주제어

4 개월 시한(35-1) – 최종 국내 결정(35-1) – 계속되는 상황(35-1)

1. 규칙의 목적

164. 4 개월 규칙의 주요 목적은 협약에 따른 사안을 청구하는 사건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심리되게 하여 법적 확실성을 유지하고, 당국 및 그 외 관계자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58;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29). 또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청구된 사안을 공정하게 심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비 청구인이 청구 여부를 고려하고, 청구한다면 청구할 구체적인 진정사항과 변론을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며, 사건의 사실관계 확립을 용이하게 한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99–101; *Sabri Güneş v. Turkey* [GC], 2012, § 39).

165. 이 규칙은 재판소가 행사하는 감독의 시간적 한계를 표시하고 개인과 국가 당국에 재판소의 감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기간을 알려 준다(*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38). 이는 과거의 판결을 가져와 끊임없이 문제 삼지 않게 하려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바람을 반영하고 질서, 안정, 평화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 해당한다(*Idalov v. Russia* [GC], 2012, § 128; *Sabri Güneş v. Turkey* [GC], 2012, § 40;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29).

166. 4 개월 규칙은 공공의 정책에 관한 규칙이며,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소가 직권으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Sabri Güneş c. Turquie* [GC], § 29 ; § 29; *Svinarenko and Slydanev v. Russia* [GC], 2014, § 85; *Blokhin v. Russia* [GC], 2016, § 102; *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47;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38). 따라서 피청구국 정부가 이 점에 대해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반언으로 막혔는지는 재판소가 심사할 필요가 없다(*Fu Quan, s.r.o.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168).

167. 4 개월 규칙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입장이 국내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청구인이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하게 할 수는 없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57; *Lekić v. Slovenia* [GC], 2018, § 65; *Chapman v. Belgium* (dec.), 2013, § 34). 관련된 원칙의 요약은 *Svinarenko and Slydanev v. Russia* [GC], 2014, § 86 참조.

168. 협약 제 15 의정서 발효(2021년 8월 1일) 이전에는 협약 제 35 조제 1 항에서 6 개월 기간을 언급하였다. 제 15 의정서 제 4 조는 제 35 조제 1 항을 수정하여 6 개월을 4 개월⁵

5. 제 15 의정서 제 4 조: 협약 제 35 조제 1 항 중 “6 개월 기간 내에”를 “4 개월 기간 내에”로 대체한다.

기간으로 축소하였다. 의정서의 경과 규정(제 8 조제 3 항)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예비 청구인이 새로운 기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정서 발효 후(2022년 2월 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적용된다. 나아가, 새로운 기간은 신규 규칙의 발효일 이전에 협약 제 35 조제 1 항이 의미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제소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효가 없다([제 15 의정서 설명보고서](#), § 22 참조). 제 35 조제 1 항이 의미하는 최종 결정을 제 15 의정서 발효 전에 내렸지만 2021년 8월 1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통지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여전히 6개월이지만, 최종 결정 통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Orhan v. Türkiye* (dec.), 2022, §§ 23–47).

169. 여기에서 언급된 제 15 의정서 이전 판결 및 결정에서는 “6개월 기간” 또는 “6개월 규칙”을 언급하였지만, 이 해설서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새로운 기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용어를 “4개월 기간” 및 “4개월 규칙”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전 규칙의 운용 방식에 대한 법원 판례법의 일반 원칙은 새로운 기간이 적용된 후에도 유효하다(*Saakashvili v. Georgia* (dec.), 2022, § 46).

2. 4개월 기간 기산 시작일

a. 최종 결정

170. 4개월 기간은 국내 구제절차 경료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날부터 기산한다(*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1; *Lekić v. Slovenia* [GC], 2018, § 65). 청구인은 실효성 있고 충분한 국내 구제절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어야 한다(*Moreira Barbosa v. Portugal* (dec.), 2004; *O’Keeffe v. Ireland* [GC], 2014, §§ 110–113; 또한 일시적으로 실효적인 구제절차에 관한 *Călin and Others v. Romania*, 2016, §§ 59–60 및 62–69 참조). 최종 결정이 하나인 경우, 다른 관할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4개월 시한을 위한 절차는 한 번만 진행된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2017, § 93). 있는 줄 알았던 구제절차를 사용하다가 나중에야 그 구제절차가 실효성이 없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제 35 조제 1 항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처음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4개월 기간이 시작되어야 한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60).

171. 제 35 조제 1 항의 요건을 지키지 않는 구제절차를 추구하는 것은 “최종 결정”의 날짜를 정하거나 4개월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 산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재판소가 고려하지 않는다(*Jeronovič v. Latvia* [GC], 2016, § 75; *Alekseyev and Others v. Russia*, 2018, §§ 10–16). 청구인은 협약에 따라 쟁점이 되는 진정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권리나 능력이 없는 기구 또는 기관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소를 제기하여 협약이 부과하는 엄격한 시한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만 참작할 수 있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32; *Fernie v. the United Kingdom* (dec.), 2006). 그러나 청구인이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Červenka v. the Czech Republi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해당 구제절차를 경료하려 한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90 및 113–121). 마찬가지로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2019 사건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사건에 걸린 절차 기간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 6 조제 1 항을 위반했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이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문제의 구제절차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했고 그 결과 최종 판결이 송달되기 전 어느 시점에서든 4개월 기간을 기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213–216).

172. 어떤 국내 절차가 청구인이 반드시 경료해야 하므로 4개월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실효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려면 특히 청구인의 진정, 해당 협약 조항에 따른 국가 의무의 범위, 피청구국에서 적용한 구제절차,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대리인의 불법적인 무력행사에 관한 사건과 의료 과실에 관한 사건은 다를 수 있다(*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34–137). 은밀한 감시 조치에 관한 사건으로는 *Hambardzumyan v. Armenia*, 2019, §§ 52–53 참조.

173. 구제절차를 사용하려면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제절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간이 없는 구제절차는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제 35 조제 1 항에 있는 4 개월 규칙을 무의미하게 한다(*William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9; *Abramyan and Others v. Russia* (dec.), 2015, §§ 97–102 and 104; *Kashlan v. Russia* (dec.), 2016, §§ 23 및 26–30). 그러나 청구인이 재량적 구제절차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판소가 판단한 예외적인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없는 부적절한 절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시한을 연기하려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Petrović v. Serbia*, 2014, §§ 57–61).

174. 원칙적으로 제 35 조제 1 항은 청구인이 절차 재개를 신청하였다거나 유사한 특별 구제절차를 사용하였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러한 구제절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4 개월 시한 연장을 허용하지도 않는다(*Berdzenishvili v. Russia* (dec.), 2004; *Tucka v. the United Kingdom (no. 1)* (dec.), 2011; *Haász and Szabó v. Hungary*, 2015, §§ 36–37). 그러나 특별 구제절차가 청구인에게 가용한 유일한 사법적 구제절차라면, 4 개월 시한은 그 구제절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Ahtinen v. Finland* (dec.), 2005; *Tomaszewscy v. Poland*, 2014, §§ 117–119).

175. 청구인의 절차 재개 요청을 각하하는 결정으로부터 4 개월 내에 진정사항을 제출하는 제소는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심리적격이 아니다(*Sapeyan v. Armenia*, 2009, § 23).

176. 절차가 재개되거나 최종 결정이 심사되는 경우, 최초 절차 또는 최종 결정에 관한 4 개월 기간의 기산은 그러한 심사 또는 재개의 근거가 되고 특별상소기구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협약 쟁점에 대해서만 중단된다(*ibid.*, § 24). 특별 심사 신청이 최초 절차의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이후 재판소에 제기한 인권 사안의 핵심을 국내 법원이 다룰 기회가 마련되어 이를 다시 다른 경우에도 4 개월 시한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Schmidt v. Latvia*, 2017, §§ 70–71).

b. 기산점

177. 4 개월 규칙은 자율적이며 개인의 실효적인 청원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건별 사실관계에 맞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법과 관행을 고려하기는 해야 하지만 4 개월 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Sabri Güneş v. Turkey* [GC], 2012, §§ 52 및 55). 예를 들어, 국내법에 있는 특정한 절차 규칙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서로 관련된 진정사항이 있는 청구인이 각기 다른 날짜에 두 번 제소하게 하는 것은 재판소가 보기에 4 개월 시한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Sociedad Anónima del Ucieza v. Spain*, 2014, §§ 43–45). 재판소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법관 기피 신청이 국내 절차 과정에서 최종 판결에 의해 기각되고 이후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경우 해당 청구에 관한 4 개월 기간은 사건의 본안에 대한 국내 최종 판결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Sperisen v. Switzerland*, 2023, §§ 47–49).

i. 결정 인지 시점

178. 4 개월 기간은 청구인 및/또는 그 대리인이 국내 최종 결정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Koç and Tosun v. Turkey* (dec.), 2008).

179. 청구인이 국내 최종 결정을 인지하게 된 날을 확정하는 것은 4 개월 기간 미준수를 주장하는 국가의 몫이다(*Sahmo v. Turkey* (dec.), 2003; *Belozerov v. Russia and Ukraine*, 2015, §§ 93–97).

ii. 결정의 송달

180. 청구인에게 송달: 국내 최종 결정의 사본을 자동으로 송달받을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 결정 사본의 송달일로부터 4 개월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협약 제 35 조제 1 항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며(*Worm v. Austria*, 1997, § 33), 이때 결정이 구두로 먼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관계없다(*Akif Hasanov v. Azerbaijan*, 2019, § 27).

181. 변호사에게 송달: 4 개월 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변호사가 국내 구제절차 경료를 완료하는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Celik v. Turkey* (dec.), 2004).

iii. 결정 미송달

182. 국내법에 송달 조항이 없는 경우, 결정이 최종 확정된 날짜, 즉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Papachelas v. Greece* [GC], 1999, § 30). 청구인 또는 그 변호사는 법원 등기소에 기탁된 결정 사본을 얻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Ölmez v. Turkey* (dec.), 2005). 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국내법이 그러한 상소 결정에 3 일 시한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청구인은 기본 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당국에 상소 결과에 관한 정보를 구할 개인의 의무가 있다(*Akif Hasanov v. Azerbaijan*, 2019, §§ 28–33).

iv. 가용한 구제절차 부재

183. 국내 구제절차 경료에 관한 제 35 조제 1 항의 요건과 4 개월 기한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75;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2017, § 130). 청구인에게 실효성이 있는 구제절차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4 개월 기간은 제소된 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청구인이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날 또는 그 불리한 영향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Denni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57; *Aydaro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18, § 90).

184. 있는 줄 알았던 구제절차를 사용하다가 나중에야 그 구제절차가 실효성이 없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처음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4 개월 기간이 시작되어야 적절할 수 있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57–158; *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75; *Zubkov and Others v. Russia*, 2017, §§ 105–109).

v. 계속되는 상황

185.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개념은 국가에 의한 또는 국가가 자행하는 계속되는 활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피해자가 된다. 계속되는 상황은 청구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가하는 입법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S.A.S. v. France* [GC], 2014, § 110; *Parrillo v. Italy* [GC], 2015, §§ 109–114). 시간이 흘렀더니 종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Lordache v. Romania*, 2008, § 49; *Călin and Others v. Romania*, 2016, §§ 58–60).

186.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일상적으로 처했던 조건에는 현저한 변화가 없다면, 청구가 제기된 전체 기간을 재판소의 권한 내에 두는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감옥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조건에 관한 *Fetisov and Others v. Russia*,

2012, § 75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형사 재판 중 피고인 수용에 사용한 금속 우리 관련 *Svinarenko and Slydanev v. Russia* [GC], 2014, §§ 86–87; 수감 중 접견 조건 관련 *Chaldayev v. Russia*, 2019, §§ 54–57; 무기수들이 감방을 나설 때마다 수갑을 채우는 규칙에 관한 *Shlykov and Others v. Russia*, §§ 60–65).

187. 위반 혐의가 국내 구제절차가 없는 계속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황이 종료되어야 그 시점부터 4 개월 기간을 기산한다(*Sabri Güneş v. Turkey* [GC], 2012, § 54;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59; *Ülke v. Turkey* (dec.), 2004). 상황이 계속되는 한 4 개월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Iordache v. Romania*, 2008, § 50; *Oliari and Others v. Italy*, 2015, §§ 96–97).

188. 하지만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4 개월 규칙의 적용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다. 재판소는 국가가 진행 중인 실종, 재산권 또는 주거권, 국영 기업의 금전적 채무 미집행 같은 국가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청구인에게 주의의 의무와 주도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였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59–172; *Sargsyan v. Azerbaijan* (dec.) [GC], 2011, §§ 124–148; *Sokolov and Others v. Serbia* (dec.), 2014, §§ 31–36; 또한 아래 5.a 참조).

3. 4 개월 기간 만료

189. 시간은 최종 결정이 공개적으로 선고된 날 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지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되며, 실제 역월(曆月) 기간과 관계없이 4 개월 후 만료된다(*Otto v. Germany* (dec.), 2009; *Ataykaya v. Turkey*, 2014, § 40).

190. 4 개월 기간 준수 여부는 피청구국별 국내법이 아닌 구체적인 협약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BENet Praha, spol. s r.o.,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Poslu and Others v. Turkey*, 2010, § 10). 재판소가 국내 규칙과 무관하게 기간을 산정할 때 자체 기준을 적용하면 법적 확실성 및 적절한 사법 집행과 그에 따라 협약기제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Sabri Güneş v. Turkey* [GC], 2012, § 56).

191. 4 개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고 국내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을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한다는 사실은 종기(終期)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ibid.*, §§ 43 및 61).

192. 재판소는 4 개월 기간 만료일을 피청구국이 지정한 날짜와 일치하기 않게 결정할 수 있다(*Ipek v. Turkey* (dec.), 2000).

193. 또한 매우 예외적인 사정으로 협약 제 32 조에 따른 해석적 관할권에 의거하여 개인 청원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4 개월 규칙의 산정법을 재판소가 조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의 전 지구적 발병과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기간에 2020년 3월 16일과 4월 9일에 재판소장은 발생하는 어려움에 청구인,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재판소가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예외 조치를 발표하였다.⁶ 재판소규칙 규칙 제 9 조에 따라 소장이 재판소 업무 및 행정을 지휘할 권한을 행사하여 결정한 이러한 조치의 결과 중 하나는 재판소 사무국이 새로 접수된 제소사건을 등록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사법 결정을 침해하지 않고 2020년 3월 16일~6월 15일 당시 6 개월 기간이 시작되거나 반대로 만료될 때마다 6 개월 기간 산정에 총 3 개월을 추가한다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당시 6 개월 기간은 전 지구적 대유행이 임계치에 달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공법상 불가항력의 일반 원칙과 행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언인 '시효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다'(*contra non*

6. 재판소 사무처장(Registerar of the Court)이 2020년 3월 16일 및 4월 9일 발행한 보도 자료 참조.

valentem agere nulla currit praescriptio)'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기간이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기간에 시작하였거나 만료될 예정이었다면, 당시 6 개월 규칙은 예외적으로 역월 3 개월간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Saakashvili v. Georgia* (dec.), 2022, §§ 49–59); *Makarashvili and Others v. Georgia*, 2022, § 47). 예외 기간이 종료된 후 기간이 만료된 부정적 사례는, *Kitanovska and Barbulovski v. North Macedonia*, 2023, § 40 참조.

4. 청구일

a. 청구서 작성 완료

194.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에 따르면, 협약 제 35 조제 1 항의 목적을 위한 청구일은 해당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가 재판소에 송부된 날을 의미한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각 부분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담고 관련 증빙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 *Malysh and Ivanin v. Ukraine*, 2014 사건의 결정을 보면 개정된 규칙 제 47 조가 운용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규칙 제 47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4 개월의 시한이 중단된다([절차 제도에 관한 실무 지침](#), § 1).

195. 대리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청구서 위임란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청구인과 대리인 모두 위임란에 서명해야 한다(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제 1 항제(c)조 참조). 재판소에 따르면 필수 정보는 소장에 모두 담아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별도의 위임장을 허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구서 위임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재판소에 설명해야 한다. 4 개월 시한 내에 청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라는 요건을 맞추느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적절한 소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절차 제도에 관한 실무 지침](#), § 9).

196. 규칙 제 47 조제 5 항제 1 호을 이유로, 이 규칙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조건에 따라 해당 청구사건을 재판소에서 심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Radomilja and Others* [GC], §§ 112).

b. 발송일

197. 청구일은 청구인이 정식으로 작성한 소장을 재판소에 발송한 소인이 짹힌 날이다(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제 6 항제(a)호. 또한 *Abdulrahman v. the Netherlands* (dec.), 2013; *Brežec v. Croatia*, 2013, § 29; *Vasiliauskas v. Lithuania* [GC], 2015, §§ 115–17); *J.L. v. Italy*, §§ 73–74 참조).

198. 청구서를 언제 우편으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청구서 자체에 기재된 날짜를 공식 제소일로 사용하거나 그 날짜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 사무국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를 사용한다(*Bulinwar OOD and Hrusanov v. Bulgaria*, 2007, §§ 30–32).

199. 청구인들은 우송 도중 지연이 발생하여 재판소와의 서신 교환에 영향을 주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Anchugov and Gladkov v. Russia*, 2013, § 70).

c. 팩스 발송

200. 팩스로 소장을 보내도 4 개월 기간 기산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동일한 4 개월의 기간 내에 서명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절차 제도에 관한 실무 지침](#), § 3).

d. 진정서의 성격 분류

201. 개인의 청구권 행사에서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범위는 청구인의 진정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제 34 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09). 진정사항의 성격은 단순히 의거하고 있는 법적 근거나 변론이 아니라 해당 진정사항에 주장된 사실관계로 분류한다(*Scoppola v. Italy (no. 2)* [GC], 2009, § 54);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10–126). ‘법률은 법원이 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및 그 의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법적 근거에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의거한 것과 다른 협약 조항에 따라 심리하여 진정사항의 사실관계에 법에 따라 부여할 특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청구인은 단 두 가지 진정사항만 제 18 조에 의거하였지만 재판소가 제 18 조에 따른 진정사항의 사실 요소가 최초 청구사건 전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진정사항의 일부가 시간 외, 즉 대재판부 절차 도중 제기되었다는 정부의 이의를 각하한 *Navalnyy v. Russia* [GC], 2018, §§ 62–66).

202. 그러나 단순히 제출된 변론과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새로운 진정사항을 작성할 권한은 재판소에 없다는 점을 명심한다(*Grosam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91). 재판소는 제소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약 위반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협약 또는 그 의정서에 명시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제소하여야 하고, 어떤 진정사항이 제기되었는지 재판소가 추측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Grosam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90; *Fu Quan, s.r.o.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145). 따라서 모호한 구절이나 따로 떨어진 단어만으로는 특정한 진정사항이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Ilias and Ahmed v. Hungary* [GC], 2019, §§ 82–85; *Fu Quan, s.r.o.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146).

203.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제 1 항 제(e)호 및 제(f)호에 따르면, 모든 청구사건에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와 협약 위반 혐의 및 관련 변론에 대한 간결하고 읽기 쉬운 진술이 있어야 한다. 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제 1 항제(f)호 및 제 2 항제(a)호에 따르면, 제출된 진정사항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술한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간결하고 읽기 쉬운 진술을 제외한 다른 어떤 문서도 참작해서는 안 된다(*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244–246).

204.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된 진정사항(즉, 협약 위반 혐의를 구성하는 원인 또는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변론)과 진정사항을 뒷받침하는 부차적 변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Grosam v. the Czech Republic* [GC], 2023, §§ 94–95).

e. 후속 진정사항

205. 최초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진정사항의 경우, 그 진정사항이 재판소에 처음 제출되는 날까지 주어진 4 개월의 기간은 계속 흐른다(*Allan v. the United Kingdom* (dec.), 2001).

206. 청구인은 처음에 제출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추가 사항이 사실상 새로운 별개의 진정사항 제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진정사항은 4 개월 규칙 등 심리적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22 및 128–139). 4 개월 기간 만료 후 제기된 진정사항은 사실상 별도의 진정사항이 아니라 기간 내에 제기된 최초의 진정사항을 뒷받침하는 단순히 추가적인 측면 또는 추가적인 변론인 경우에만 심리할 수 있다(*Merabishvili v. Georgia* [GC], 2017, § 250; *Sâmbata Bihor Greco-Catholic Parish v. Romania* (dec.), 2004).

207.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제 6 조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사항의 사실적 근거와 위반 혐의의 성격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 6 조에 따라 제기된 모든 후속 진정사항이 제출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2018, §§ 102–106; *Allan v. the United Kingdom* (dec.), 2001; *Adam and Others v. Germany* (dec.), 2005). 마찬가지로 제 14 조에 따른 진정사항에서는 적어도 청구인이 다르게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교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표시하고 차별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재판소는 협약 제 14 조에 따른 진정사항이 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제 14 조에 따라 제기된 모든 후속 진정사항이 제출된 것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Fábián v. Hungary* [GC], 2017, § 96).

208. 국내 절차의 문서를 제공해도 해당 절차에 근거한 모든 후속 진정사항을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사항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4 개월 기간을 중단하려면 협약에 따른 위반 혐의의 성격을 간략하게나마 표시해야 한다(*Božin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05).

5. 특수한 상황

a. 생명권, 주거권, 재산권 관련 계속되는 상황에 시간 제약 적용 가능성

209. 4 개월 기간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판소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실종 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청구인에게 주의의 의무와 주도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상황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기 마련이므로, 국가 당국의 절차가 비록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문제가 만연하더라도 종료될 때까지 실종자의 친척이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62–163).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판소에 오기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부당하게 지체하지 말고 청구해야 한다(*ibid.*, §§ 161–166). 청구인의 부당한 지연에 대한 심리는 진정사항 및 정보 요청과 관련하여 친척과 당국 간 유의미한 접촉이 있거나 조사 조치가 진전된다는 징후 또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ibid.*, § 165; 또한 *Pitsayeva and Others v. Russia*, 2014, §§ 386–393; *Sultygov and Others v. Russia*, 2014, §§ 375–380; *Sagayeva and Others v. Russia*, 2015, §§ 58–62; *Doshuyeva and Yusupov v. Russia* (dec.), 2016, §§ 41–47 참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대개 청구인은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여야 한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66; 또한 *Açış v. Turkey*, 2011, §§ 41–42; *Er and Others v. Turkey*, 2012, §§ 59–60 및 *Trivkanović v. Croatia*, 2017, §§ 54–58 참조).

210. 마찬가지로, 분쟁이 오래되어 재산권 또는 주거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혐의가 우려되는 경우,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어 청구인이 청구에 나서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조만간 재산과 주거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청구인이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만 하는 순간이 되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과도하게 청구를 미루면 청구해도 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다. 분쟁 후 상황이 복잡하다면 상황이 안정되고 국내 수준에서 해결책을 얻기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청구인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다(협약 비준 후 약 3년이 경과한 경우인 *Sargsyan v. Azerbaijan* (dec.) [GC], 2011, §§ 140–141; 비준 후 4년 4개월이 거의 다 된 경우인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dec.) [GC], 2011, §§ 141–142; **비준 후 6년 이상 경과한 경우인 Samadov v. Armenia** (dec.), §§ 9–18 사건과 비교 및 대조).

211. 주의의 의무 원칙은 국영 기업이 금전적 채무를 불이행한 맥락에도 적용되었다(*Sokolov and Others v. Serbia* (dec.), 2014, §§ 31–33).

b. 사망 및 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재에 시간 제약 적용 가능성

212. 사망 또는 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재(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를 제소하려는 청구인에 대한 주의의 의무 범위를 정할 때 재판소는 국제 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의 맥락에서 개인의

실종에 관한 판례를 주로 참고하였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67). 이러한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당국과 유의미한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조사 조치에 진전이 있다는 징후 또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Sakir Kaçmaz v. Turkey*, 2015, §§ 72–75; *Vatandaş v. Turkey*, 2018, §§ 26–27).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국내 조사의 실효성을 믿는 것이 정당한지 평가할 때 국내 조사의 범위와 복잡성도 고려하였다(*Melnichuk and Others v. Romania*, 2015, §§ 87–89). 제소해도 당국이 반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국내 구제절차의 비실효성을 알게 된 날을 결정하는 경우는 *Mehmet Ali Eser v. Turkey*, 2019, §§ 30–31 참조).

213. 주의 의무에는 서로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청구인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내 당국에 즉시 연락해야 하며,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즉시 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 국내 수준에서 청구인의 부작위는 4개월 요건 충족 여부 심사와 무관하다. 그러나 재판소의 결론이 청구인이 관할 국내 당국에 청원하기 전에 이미 범죄 조사의 비실효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이후 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기간 도과임이 더욱 확실해진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56–257, 262–64 및 272). *Sakvarelidze v. Georg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절차 초기 단계부터 정기적으로 조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더욱 실효적인 조사 결과를 기대하며 조사 진행 속도를 높이도록 조치한 청구인은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41–46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214. 주의의 의무 준수 여부는 해당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심사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진정이 없어도 당국은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학대 대상일 수 있음을 당국이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라면 청구인이 국내 당국에 제소할 때 지연이 있었다고 해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Velev v. Bulgaria*, 2013, §§ 40 및 59–60). 또한 청구인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그러한 지연은 청구사건의 심리적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국내 차원에서 제소가 지연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청구인의 취약성과 무력감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65 및 273–275).

215.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나 깨달았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정확하게 결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지연이 과도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기간 도과로 각하하였다(*Melnichuk and Others v. Romania*, 2015, §§ 82–83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또한 *Khadzhimura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73–74 참조).

216. 사망 경위를 새롭게 밝혀줄 정보가 나중에 공개되는 사건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절차적 조사 의무가 부활하여 4 개월 기간 산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하기도 한다(*Khadzhimura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67 및 75–77). 조사의 여러 단계가 각각 별개로 간주되는 경우 청구인은 초기 조사의 결함을 주장하는 진정사항과 관련하여 4 개월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사전 범죄 수사의 두 단계 사이에 5 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인 *Tsalikidis and Others v. Greece*, 2017, § 52).

c. 구금 조건에서 4 개월 규칙 적용

217. 청구인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유형의 구금 시설에 구금된 한, 청구인의 구금은 “계속되는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부재(청구인이 면담 또는 그 외 절차적 행위를 위해 시설 밖으로 나간 경우)는 구금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석방되거나 시설 안팎의 유형이 다른 구금 방식으로 옮겨지면 “계속되는 상황”이 종료된다. 구금 조건에 관한 진정은 진정 상황이 종료되거나 또는 실효적인 국내 구제절차가 경료된 경우라면 경료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 75–78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및 교도소 두

곳에서의 구금 사례인 경우 *Petrescu v. Portugal*, 2019, § 93). 재판소는 구금이 3 개월 이상 중단되었다 재구금되면 “계속되는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Shishanov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5, §§ 68–69).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여러 번 체포되고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바로 기소, 유죄판결, 징역형 선고가 이어지면, 청구인이 자유를 누린 기간이 단 몇 분에 불과하더라도 “계속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Gough v. the United Kingdom*, 2014, §§ 133–134).

218. *Ulemelek v. Croatia*, 2019 사건에서 크로아티아 최고법원은 청구인이 석방된 후 두 곳의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전체 기간 동안 부적절했던 구금 조건에 대해 제기한 진정사항의 본안을 심리하였고, 청구인의 재판소 제소 건은 국내 구제절차 미경료 및/또는 4 개월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았다(§§ 117–118).

219. 조지아의 사실상 압하지야(Abkhaz) 당국이 두 명의 취약한 남성을 불법 체포, 학대, 구금한 *Mamasakhilisi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고문 및 그 외 학대의 심리적 영향은 사람들이 자체 없이 제소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사건의 예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체포된 청구인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인정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상황이 잘 풀려 결정적인 사실적 또는 법적 사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재판소는 이를 감안하고 실효적인 국내 구제절차가 부재한 점도 고려하여 제소가 늦지 않았음을 받아들였다(§§ 271–277).

d. 협약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복수의 구금 기간 사건에 4 개월 규칙 적용

220. 여러 차례, 연속으로 구금된 기간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4 개월 기간은 마지막 구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Solmaz v. Turkey*, 2007, § 36).

221. 피고인의 재판 전 구금이 연속되지 않은 복수의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일단 석방된 청구인은 실제 석방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재판 전 구금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진정사항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이 청구인에 대한 동일한 형사 절차의 일부인 경우, 재판소는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구금의 전반적인 합리성을 심사하면서 청구인이 이전에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적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Idalov v. Russia* [GC], 2012, §§ 129–30).

C. 익명 청구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a)호 – 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제 34 조에 따른 제소사건 중 다음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a) 익명”⁷

HUDOC 주제어

익명 청구 35-2-a)

7.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a)호가 의미하는 “익명” 제소는 재판소 절차에서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에 관한 일반 규칙을 이행정지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신원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문제 및 재판소에서의 기밀 유지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재판소규칙 규칙 제 33 조, 제 47 조제 4 항 및 이에 부속된 실무지침 참조).

222. 청구인은 소장에 신원을 밝혀야 마땅하다(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제 1 항제(a)호). 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원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규칙 제 47 조제 4 항), 그 사건에서 청구인은 머리글자 또는 그저 문자 하나로 지정된다.

223. 재판소는 제소의 익명성이 제 35 조제 2 항제(a)호에 따른 것인지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69). 피청구국 정부는 제소사건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면 이를 즉시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ibid.*).

1. 익명 청구

224. 재판소에 제소할 때 사건 파일에 재판소가 청구인을 식별할 요소를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익명 청구로 간주한다(“*Blondje*” v. *the Netherlands* (dec.), 2009). 제출된 양식이나 서류에 청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참조와 가명만 있으며 위임장에는 “X”로 서명하여 청구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225. 재판소는 청구서에 기재된 이름 및/또는 성, 때로는 성별이 국내 절차에서 나타난 것과 달라 신원 확인이 지나치게 어려운 집단의 청구사건을 (익명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관할에 부합하지 않아 심리부적격이라고 선언하였다(*Mastil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2022, §§ 35–36).

226.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을 대신하여 제소한 단체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주장하지 않고 대리한다고 선언한 청구인인 신원 불상의 개인을 대신하여 사생활 존중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라면 익명으로 본다(*Federation of French Medical Trade Unions and National Federation of Nurses v. France*, 위원회 결정, 1986).

2. 비익명 청구

227. 재판소가 청구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주요 사실관계 및 제기된 진정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및 법적 정보를 청구인이 제출하면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a)호는 적용할 수 없다(*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71).

228. 가명 청구사건: 개인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가족 구성원 및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명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소에 설명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실제 신원을 숨기는 전술의 이면에는 이름을 제외한 다양한 표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들과 문제의 사건 간 충분히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재판소는 익명 청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dec.), 2003), 또한 *Shamayev and Others*, § 275 사건의 판결 참조.

229. 교회 기구 또는 구성원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종교적·철학적 목적의 단체가 청구하자 익명이라고 각하되지 않았다(협약 제 9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 *Omkarananda and Divine Light Zentrum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81 참조.

D. 실질적으로 동일함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b)호 – 심리적격의 기준

“2. 재판소는 제 34 조에 따른 제소 사건 중 다음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

(b) 재판소에서 심리한 적 있거나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제출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가 없음”

HUDOC 주제어

재판소에서 심리한 적 있는 문제(35-2-b) – 다른 국제 절차에 제출된 적 있는 문제(35-2-b) –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35-2-b)

230. 재판소 또는 다른 국제 조사·해결 절차로 심리된 적 있는 사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가 없는 제소사건은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b)호에 따라 각하된다.

1. 재판소에서 심리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함

231. 제 35 조제 2 항제(b)호 전단의 목적은 재판소 결정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다시 제소하여 재판소의 이전 판결 또는 결정에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Harkin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17, § 51; *Kafkaris v. Cyprus* (dec.), 2011, § 67; *Lowe v. the United Kingdom* (dec.), 2009). 또한, 제 35 조제 2 항제(b)호는 최종성 및 법적 확실성에 부합하는 것 외에 재판소 관할권의 한계도 명시한다. 과도한 형식주의에 기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심리적격 규칙도 있기는 하지만, 법적 확실성에 부합하고 재판소 권한의 한계 표시가 그 목적이자 취지인 심리적격 기준을 적용할 때 재판소는 보다 엄격하게 접근하는 쪽을 택하였다(*Harkin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17, § 52–54).

232. 청구사건이나 진정이 “재판소에서 심리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가 없다면,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한다.” 여기에는 재판소가 우호적 해결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 이전 청구사건을 재판소 사건 목록에서 제외한 경우도 포함한다(*Kezer and Others v. Turkey* (dec.), 2004). 다만, 이전에 청구되었을 때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다시 제소된 사건이 재판소에서 심리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Sürmeli v. Germany* (dec.), 2004).

233.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소한 두 건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진정사항과 관련되어 있는지 심리한다(*Vojnović v. Croatia* (dec.), 2012, § 28; *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o. 2) [GC], 2009, § 63; *Amarandei and Others v. Romania*, 2016, §§ 106–111; *Leon Madrid v. Spain*, 2021, § 44).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b)호의 관점에서 청구 또는 진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려면, 진정사항은 언제나 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규정되어야 한다(*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20).

234. 국가 간 청구가 있다고 해서 개인이 청구하며 별도의 청구사항을 제출하거나 추구할 가능성을 박탈하지 않는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18; *Shioshvili and Others v. Russia*, 2016, §§ 46–47).

235. 이전 청구와 동일한 사실 근거로 다시 청구하면 이 조항에 위배되기 마련이다. 청구인이 단순히 새로운 법리논쟁으로 과거의 진정사항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거나(*I.J.L. v. the United Kingdom* (dec.), 1999; *Mann v. the United Kingdom and Portugal* (dec.), 2011) 이전의 각하 사유를 변경할 수 없는 국내법에 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1)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전에 청구된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제소사건을 재판소가 고려하게 하려는 청구인은 진실로 새로운 진정사항을 제기하거나 이전에 재판소가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Kafkaris v. Cyprus* (dec.), 2011, § 68).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는 새로운 사실 정보여야 하며, 준거법의 종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Ekimdzhev and Others v. Bulgaria*, 2022, § 255). 재판소 판례가 달라진 것은 제 35 조제 2 항제(b)호의 목적상 “새로 추가된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Harkin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17, §§ 50 및 55–56).

236. 이전 청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협약기구가 판단한 청구 또는 진정은 *Nobili Massuero v. Italy* (dec.), 2004; *Riener v. Bulgaria*, 2006, § 103; *Chappex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1994; *Yurttas v. Turkey*, 2004, §§ 36–37; *Sadak v. Turkey*, 2004, §§ 32–33; *Amarandei and Others v. Romania*, 2016, §§ 106–112; *Tsalikidis and Others v. Greece*, 2017, §§ 56–58; *Volodina v. Russia (no. 2)*, 2021, §§ 37–40; *Ekimdzhiev and Others v. Bulgaria*, 2022, §§ 253–255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 또는 진정이라고 판단한 사건으로는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Hokkanen v. Finland*, 위원회 결정, 1996; *Adesina v. France*, 위원회 결정, 1996; *Bernardet v. France*, 위원회 결정, 1996; *Gennari v. Italy* (dec.), 2000; *Manuel v. Portugal* (dec.), 2002 사건이 있다.

2.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제출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

237. 제 35 조제 2 항제(b)호 후단의 목적은 여러 국제기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은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복수의 국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협약의 정신 및 문언과 양립할 수 없다(*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520; *Eğitim ve Bilim Emekçileri Sendikası v. Turkey*, 2012, § 37;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180).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이 문제를 직권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PO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3, § 27).

238. 이 협약 조항에 따라 관할권 배제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이 일련의 병행 절차에 제출된 적 있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살펴보고 만일 동일하다면 그 동시에 진행 절차는 제 35 조제 2 항제(b)호에서 의미하는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로 볼 수 있는지 결정한다(*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520; *Gürdeniz v. Turkey* (dec.), 2014, §§ 39–40; *Doğan and Çakmak v. Turkey* (dec.), 2019, § 20).

a. 사건의 유사성 심사

239. 사건의 유사성을 심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절차별 당사자, 당사자가 의거하는 관련 법률 조항, 청구사항의 범위, 구하는 구제의 유형을 비교한다(*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521; *Greek Federation of Bank Employee Unions v. Greece* (dec.), 2011, § 39).

240. 이에 따라 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제 35 조제 2 항제(b)호 첫번째 영역(*Patera v. the Czech Republic* (dec.), 2006; *Karoussiots v. Portugal*, 2011, § 63; *Gürdeniz v. Turkey* (dec.), 2014, §§ 41–45; *Pauger v. Austria*, 위원회 결정, 1995)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청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 사실 및 진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41. 예를 들어, 두 기관의 청구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재판소 “청구사건”은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제출된 적 있는 ... 문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Folgerø and Others v. Norway* (dec.), 2006). 따라서 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도 심리를 배제하지 않기로 판단한 국제 절차는 비정부기구(*Celniku v. Greece*, 2007, §§ 39–41; *Illi and Others v. Belgium* (dec.), 2009) 또는 그에 소속된 노조 연맹(*Eğitim ve Bilim Emekçileri Sendikası v. Turkey*, 2012, § 38) 또는 정부가 정부 간 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하여 개시하고(*Bryan and Others v. Russia*, 2023, § 40) 청구인 스스로 개시하지 않은 것이다. *Kavala v. Turkey*, 2019 사건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및 자의적 구금 작업반(WGAD) 부의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도입한 특별 절차의 맥락에서 절차 개시가 가능한 “긴급 상소”를 담은 서한을 튜르키예에 보냈다. 그러나 WGAD는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그의 가까운 친척도 유엔 기구에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청구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았다(§§ 92–94; 또한 *Taner Kılıç v. Turkey (no. 2)*, 2022, § 62–63 참조).

242. 그러나 최근 재판소는 이전에 다른 국제기구(ILO)가 청구한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당사자적격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 국한된 집단적 성격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전 제소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될 수도 없는 개인 청구인이 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이 해당 기구에 제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재확인하였다. 이는 개인 청구인들의 신분이 문제가 된 노동조합의 임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절차 및 진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재판소에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협약 제 35 조제 2 항제(b)호를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PO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3, §§ 30–32).

b.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라는 개념

243. 제 35 조제 2 항제(b)호에 따른 심사에서 재판소는 문제가 된 병행 절차가 이 심리적격 기준의 목적상 다른 국제 절차에 해당하는지 정해야 한다(*PO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28).

244.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심리는 형식적인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다면 감독기구의 성격, 감독기구가 따르는 절차, 결정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 35 조제 2 항제(b)호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이 배제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확장된다(*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522; *De Pace v. Italy*, 2008, §§ 25–28; *Karoussiots v. Portugal*, 2011, §§ 62 및 65–76; *Greek Federation of Bank Employee Unions v. Greece* (dec.), 2011, §§ 33–38; *Doğan and Çakmak v. Turkey* (dec.), 2019, § 21; *Peraldi v. France* (dec.), 2009).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의미하는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해결 절차”로 간주되려면 국제기구가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작성하였다. 사법 절차 또는 준사법 절차가 협약기제와 유사해지려면 심리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국가의 책임을 결정하고 위반 혐의를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를 제공할 권한을 유관 기관에 부여하는 법적 수단에 근거한 몇 가지 권리에 국한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성, 중립성 및 당사자주의적 절차 같은 제도적·절차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2020, §§ 182–186; *Tunç v. Turkey* (dec.), 2022, §§ 65–66).

E. 개인 청구권 남용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a)호 – 심리적격의 기준

“3. 재판소는 다음을 고려한다면 제 34 조에 따른 개인의 청구라 해도 심리부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a) 제소사건이 … 개인 청구권 남용”

HUDOC 주제어

개인 청구권 남용(35-3-a)

1. 일반적인 정의

245.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a)호가 의미하는 “남용”의 개념은 일반적인 법률 이론에 따른 통상적인 의미인 권리를 고안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유해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협약에 규정된 개인 청구권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고 재판소의 적절한

기능 또는 재판소에 제기된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청구인의 모든 행위는 개인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Zhdanov and Others v. Russia*, 2019, §§ 79–81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62 및 65; *S.A.S. v. France* [GC], 2014, § 66; *Bivolaru v. Romania*, 2017, §§ 78–82).

246. 어떤 제소사건의 청구권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소는 청구인의 행동을 재판소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수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Ferrara and Others v. Italy* (dec.), 2023, § 43). 나아가 재판소에서 청구인의 변호사 또는 그 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대리인의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되며 청구권 남용으로 제소가 각하될 수 있다(*Bekauri v. Georgia* (선결적 항변 s), 2012, §§ 22–25; *Migliore and Others v. Italy* (dec.), 2013; *Martins Alves v. Portugal* (dec.), 2014, §§ 11–13 및 16–17; *Gross v. Switzerland* [GC], 2014, § 33).

247. 변호사는 협약 제 19 조에 정의된 재판소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익한 진정을 자제하고, 일단 재판소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관련 절차 규칙과 직업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최대한 신중히 처리하고 재판소와 유의미하게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를 남용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재판소가 바라보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며, 이런 식으로 지속될 경우 2022년 2월 7일 재판소가 개정한 재판소규칙 규칙 제 36 조제 4 항제(c)호 및 규칙 제 44D 조에 따라 절차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Ferrara and Others v. Italy* (dec.), 2023, § 66).

248. 재판소는 개인 청구권 남용을 사유로 한 각하는 예외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다(*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62). 재판소가 청구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건은 (1) 오도하는 정보, (2) 모욕적인 언어 사용, (3) 우호적 해결 절차의 기밀 유지 의무 위반, (4) 명백하게 성가시거나 실질적인 목적이 없는 제소, (5) 국내 구제절차의 남용 또는 그 외 재판소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수준의 비난할 만한 행위 등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재판소 오도

249. 재판소를 속이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제소하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Varbanov v. Bulgaria*, 2000, § 36;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2015, § 76). 이러한 남용의 가장 심각하고 노골적인 사례는 첫째, 허위 신분으로 소장 제출(*Drijfhout v. the Netherlands* (dec.), 2011, §§ 27–29) 및 둘째, 재판소에 위조 서류 송부(*Jian v. Romania* (dec.), 2004; *Bagheri and Maliki v. the Netherlands* (dec.), 2007; *Poznanski and Others v. Germany* (dec.), 2007;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2015, §§ 77–78) 등이 있다. 추방 보류 구금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국적에 대해 국내 당국과 재판소를 오도한 경우 청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Bencheref v. Sweden* (dec.), 2017, § 39 참조).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내 절차에서 자신이 한 증언과 상반되는 사실적 주장을 재판소에서 한 경우(*Povilonis v. Lithuania* (dec.), 2022, §§ 92–101) 또는 청구인이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정황이 재판소가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건과 유사하게 보이게 한 경우에도(*Kongresna Narodna Stranka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2016, §§ 13 및 15–19) 청구가 남용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250. 이러한 유형의 남용은 청구인이 사건 심리에 필수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재판소에 알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Kerechashvili v. Georgia* (dec.), 2006; *Martins Alves v. Portugal* (dec.), 2014, §§ 12–15; *Gross v. Switzerland* [GC], 2014, §§ 35–36; *Gevorgyan and Others v. Armenia* (dec.), 2020, §§ 31–37; *Safaryan v. Armenia* (dec.), 2020, §§ 24–30; 대조할 사건으로는 *Al-Nashif v. Bulgaria*, 2002, § 89; *G.I.E.M. S.R.L. and Others v. Italy* [GC], § 174; *S.L. and J.L. v. Croatia*, 2015,

§ 49; *Zličić v. Serbia*, §§ 55–56). 그러나 이러한 부작위가 개인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려면 오도하는 정보는 사건의 핵심과 관련되어야 한다(*Bestry v. Poland*, 2015, § 44; *Mitrović v. Serbia*, 2017, §§ 33–34; *Shalyavski and Others v. Bulgaria*, 2017, § 45; *Saakashvili v. Georgia* (dec.), 2022, §§ 64–65). 청구인이 재판소규칙 규칙 제 44C 조제 1 항에 반하여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제 37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청구사건을 종료하는 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Belošević v. Croatia* (dec.), 2019, §§ 48–49 및 §§ 51–54, 및 *Şeker v. Turkey* (dec.), 2021, §§ 19–23).

251. 마찬가지로, 재판소 절차 도중 중대한 사항이 새로 발생하고 청구인은 재판소규칙에 따라 그래야 할 명시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재판소에 공개하지 않아 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 경우 사건은 청구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Hadrabov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2007; *Predescu v. Romania*, 2008, §§ 25–27; *Gross v. Switzerland* [GC], 2014, §§ 28–37; *Dimo Dimov and Others v. Bulgaria*, 2020, §§ 42–47).

252. 재판소를 오도하려는 의도를 입증하려면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Melnik v. Ukraine*, 2006, §§ 58–60; *Nold v. Germany*, 2006, § 87; *Miszczynski v. Poland* (dec.), 2011; *Gross v. Switzerland* [GC], 2014, § 28; *S.L. and J.L. v. Croatia*, 2015, §§ 48–49; *Bagdonavicius and Others v. Russia*, 2016, §§ 64–65;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2021, §§ 29–30). 당사자는 재판소가 각하한 변론을 제출할 수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제출물은 개인 청구권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Hoti v. Croatia*, 2018, § 92).

253. 재판소의 본안 판결이 이미 확정된 후에야 청구인이 사건 심리에 유관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밝혀지면 재판소는 보정 절차(재판소규칙 규칙 제 80 조)를 통해 판결을 재개하고 청구권 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Gardean and S.C. Grup 95 SA v. Romania* (보정), 2013, §§ 12–22; *Vidu and Others v. Romania* (보정), 2017, §§ 17–30; *Petroiu v. Romania* (보정), 2017, §§ 16–30). 판결 보정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청구국 정부가 재판소의 사건 심리 당시 문제의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규칙 제 80 조제 1 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6 개월 이내에 보정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Grossi and Others v. Italy* (보정), 2012, §§ 17–24; *Vidu and Others v. Romania* (revision), 2017, §§ 20–23; *Petroiu v. Romania* (보정), 2017, §§ 19 및 27–28).

3. 모욕적인 언어

254. 청구인이 재판소와 서신을 교환하며 피청구국 정부, 그 대리인, 피청구국 당국, 재판소, 재판소 법관, 재판소 사무국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특히 성가시거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청구권 남용이다(*Röhák v. the Czech Republic* (dec.), 2004; *Duringer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Stamoulakato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7). 청구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맥락을 벗어나 재판소와 그 법관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고 경고한 후에도 계속 게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Zhdanov and Others v. Russia*, 2019, §§ 82–86).

255. 청구인의 언어가 단순히 신랄하거나 반론을 하거나 비꼬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교양 있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으면 폭언으로 간주된다(*Di Salvo v. Italy* (dec.), 2007, *Apinis v. Latvia* (dec.), 2011; 반대 사례로 참조할 사건으로는 *Aleksanyan v. Russia*, 2008, §§ 116–118; *X and Others v. Bulgaria* [GC], § 146; *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2022, §§ 83–84). 절차 도중 재판소의 공식 경고를 받은 청구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중단하거나 명시적으로 철회하거나 더 나아가 사과하는 경우 더 이상 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각하되지 않는다(*Chernitsyn v. Russia*, 2006, §§ 25–28).

256. 재판소는, 근거하고 있는 사실 주장이 허위가 아닌 한, 피청구국 정부의 대리인을 “절차의 남용”으로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국가는 청구인이 개인 청원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사건이 심리부적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 없이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대리인이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 없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 평등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2022, § 84).

4. 우호적 해결 절차의 기밀 유지 원칙 위반

257. 협약 제 39 조제 2 항 및 재판소규칙 규칙 제 62 조제 2 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된 우호적 해결 협상의 기밀 유지 의무를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위반하면 청구권 남용으로 생각되어 각하될 수 있다(*Hadrabov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2007; *Popov v. Moldova* (no. 1), 2005, § 48; *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66).

258. 청구인이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의무의 한계부터 정의해야 한다. 이 의무는 항상 당사자와 재판소를 향후 압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우호적 해결을 촉진한다는 일반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호적 해결과 관련된 문서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a)호가 의미하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문서를 제 3 자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면 청구인이 재판소에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건에서 일회성으로 정보에 입각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 등에서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재판소가 이러한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협약 제 39 조제 2 항 및 재판소규칙 규칙 제 62 조제 2 항이 당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언론, 다수가 읽을 수 있는 서한 또는 그 외 방식으로 문제가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68; 또한 청구인의 아내가 재판소의 우호적 해결 제안을 언론에 공개한 *Mătăs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dec.), 2020, §§ 36–39 사건 참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수반되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259. 청구소 남용으로 간주되려면 기밀 정보를 고의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의 직접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지는 언제나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어야 하며, 그저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66 말미부). 이 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 사건이 각하된 사례는 청구인들이 자국 법무부와 서신을 교환하며 재판소 사무국이 공식화한 우호적 해결 제안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사건이 청구 남용으로 각하된 *Hadrabov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2007 참조. 청구가 심리적격으로 판단된 사례로는 세 명의 청구인이 모두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 재판소가 정부의 선결적 항변을 각하한 *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참조.

260. 엄격하게 기밀이 보장되는 우호적 해결 절차의 맥락에서 선언한 것과 피청구국 정부가 재판소에서의 공개적인 당사자주의적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그러한 절차의 실질적 결과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서로 선을 그어야 한다. 일방적인 선언의 조건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Eskerkhanov and Others v. Russia*, 2017, § 26–29).

261. 본안 판결이 선고된 후 재판소가 정당한 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비추어 사건 심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Žáková v. the Czech Republic* (정당한 배상), 2017, §§ 18–25 참조.

5. 명백하게 성가시거나 실질적인 목적이 없는 제소

262. 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된 사건과 유사하게 성가시고 명백히 근거가 없는 제소를 반복하면 청구권 남용이다(*M. v. the United Kingdom* 및 *Philis v. Greece*, 위원회 결정, 1987, 1996). 근거가 불충분한 연속적인 불만 진정 또는 청구인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명백하게 남용하는 행위로 협약에 따른 재판소의 실제 기능과 양립할 수 없는 무상 업무를 재판소에 부과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될 수 없다(*Bekauri v. Georgia* (선결적 항변), 2012, § 21; 또한 *Migliore and Others v. Italy* (dec.), 2013 및 *Simitzi-Papachristou and Others v. Greece* (dec.), 2013 참조).

263.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방문자에게 재판소 집단 청구에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표준 소장 양식으로 복수의 소장을 제출하게 하는 글을 게시하자 청구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식으로 재판소에 1 만 8,000 건의 소장이 접수되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이 추구한 목적은 각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소에 “혼잡, 과도한 업무량, 적체”를 초래하고, “재판소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재판소의 운영을 위협하여 재판소와 “협상”하기 위해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재판소가 “사슬의 연결 고리”였던 “체제가 탈선”하게 하는 것이었다. 협약 체제와 재판소 기능의 약화를 바라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 청구권의 목적, 협약 정신,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Zambrano v. France* (dec.), 2021, §§ 35–38).

264. 또한 재판소는 명백히 실질적인 목적이 없거나, 금액이 사소하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청구인의 이익과 무관한 제소도 청구권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Simitzi-Papachristou and Others v. Greece* (dec.), 2013; *Bock v. Germany* (dec.), 2010, *S.A.S. v. France* [GC], 2014, §§ 62 및 68 사건과 대조). 2010년 6월 1일 제 14 의정서가 발효된 후 이러한 종류의 청구사건은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에 따라 처리의 즉시성이 개선되었다(증대한 불이익 부재).

6. 국내 구제절차의 남용 또는 그 외 국내 수준의 비난할 만한 행위

265. 국내 수준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제소가 개인 청구권 남용인지 심사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구제절차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재판소는 국내 수준과 재판소에서 청구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구제절차를 노골적으로 남용하면 제소를 남용으로 인한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될 수 있다(*Ferrara and Others v. Italy* (dec.), 2023, § 43). 예를 들어, 국내법을 이용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 없이 국내 집행 절차를 부당하게 파편화하는 동시에 재판소에 동일한 기법(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한 청구를 개별적으로 여러 번 제기하면서 그 청구를 합치거나 심지어 재판소에 그 연결성을 알리지 않음)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으로, 국내 법원 및 재판소 자체의 조직과 업무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ibid.*, §§ 63–68).

266. 때로는 재판소의 판결과 결정 및 아직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체약국에서 국가 차원의 정치적 연설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홍보 또는 선전을 꾀하며 제소하는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McFeel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0 및 또한 *Khadzhaliyev and Others v. Russia*, 2008, §§ 66–67). 그러나 청구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이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재판소에 계속 중인 절차에 대해 무책임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인다면 남용이 될 수 있다(*Georgian Labour Party v. Georgia*, 2008). 선의의 오류로 인해 허위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재판소가 이미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한 청구라고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잘못 주장한 사건인 *Podeschi v. San Marino*, 2017, § 88).

267. 재판소는 청구인이 타인의 협약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증거를 기준으로 재판소에 제 8 조를 발동한 경우 개인 청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동의 없이 강제로 DNA 시료를 채취하여 아동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그 결과 전 부인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공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Koch v. Poland* (dec.), 2017, §§ 31–34).

7. 피청구국 정부가 채택할 접근 방식

268. 피청구국 정부가 보기에 청구인이 소권을 남용하였다면, 이를 재판소에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유관 정보를 제출하여 재판소가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협약 및 재판소 규칙이 청구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절차적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피청구국 정부가 아니라 재판소의 몫이다. 그러나 재판소에서의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청구인을 상대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를 제기하겠다는 정부 및 정부 기관의 위협은 개인 소권의 실효적 행사 방해를 금지하는 협약 제 34 조 말미부에 따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2009, § 70).

269. 청구인들의 행동이 개인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남용 가능성 문제는 재판소가 직권으로 제기할 수 있다(*Gevorgyan and Others v. Armenia* (dec.), 2020, § 32; *Dimo Dimov and Others v. Bulgaria*, 2020, § 41).

II. 재판소 관할권 관련 심리부적격 사유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a)호 – 심리적격의 기준

“3. 재판소는 다음을 고려한다면 제 34 조에 따른 개인의 청구라 해도 심리부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a) 청구가 협약 또는 협약 의정서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협약 제 32 조 – 재판소 관할권

“1. 재판소 관할권은 제 33 조, 제 34 조,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언급된 협약 및 협약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로 확장된다.

2. 재판소 관할권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다면 재판소가 결정한다.”

HUDOC 주제어

인적 관할(35-3-a) – 장소적 관할(35-3-a) – 시간적 관할(35-3-a) – 계속되는 상황(35-3-a) – 물적 관할(35-3-a)

A. 인적 관할 양립 불가능

1. 원칙

270. 인적 관할 양립불가능은 협약 위반 혐의의 주체가 체약국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체약국에 기인해야 한다.

271. 피청구국이 재판소 인적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이 사안은 재판소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27; *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63).

272. 국제 인권 조약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은 이후 당사국이 해체 또는 승계를 겪는다고 하여도 그 영토 내(領內)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2009, § 69).

273. 국영 기업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도 운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협약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국영 기업의 채무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 114–115; *Kuzhelev and Others v. Russia*, 2019, §§ 93–100, 117; *Mykhaylenky and Others v. Ukraine*, 2004, §§ 43–45). 채무와 관련하여 개발된 이 원칙은 해당 회사의 특허 발명품 사용 같은 다른 작위 및 부작위에도 적용된다(*Tokel v. Turkey*, §§ 58–62). 사법(私法) 재단의 작위와 부작위에도 협약에 따른 피청구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2018, §§ 65–67).

274. 제소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약의 인적 관할과 양립불가능으로 선언된다.

- 청구인에게 협약 제 34 조 관련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Municipal Section of Antilly v. France* (dec.), 1999; *Döşemealtı Belediyesi v. Turkey* (dec.), 2010; *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2010, §§ 32–35; *Bulgarian Helsinki Committee v. Bulgaria* (dec.), 2016; *V.D. and Others v. Russia*, 2019, §§ 72–76; *Ihsan Doğramacı Bilkent Üniversitesi v. Turkey* (dec.), 2020, §§ 34–47;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dec.), 2020, §§ 13–21 참조)
- 자신이 위반 혐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Kátai v. Hungary* (dec.), 2014, §§ 25–26; *Trivkanović v. Croatia*, 2017, §§ 49–51; 서문 A.3 “피해자 신분” 참조)
- 개인을 상대로 제소한 경우(*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76; *Durini v. Italy*, 위원회 결정, 1994)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제기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제소하는 경우(*Stephens v. Cyprus, Turkey and the United Nations* (dec.), 2008, 마지막 단락)
- 피청구국이 비준하지 않은 협약 의정서 관련 청구인 경우(*Horsham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5; *De Saedeleer v. Belgium*, 2007, § 68).

2. 관할권⁸

275. 장소적 관할권 결여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인들이 협약 제 1 조가 의미하는 일국 이상의 체약국 “관할권”에 속하는지 살펴보는 재판소 심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1992, § 90).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청구국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제소사건이 협약의 인적 관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2001, § 35 사건에서 피청구국 정부의 제출자료 참조;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00;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2006; 또한 러시아 정부가 인적 및 장소적 이의를 제기한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6, § 79 사건 참조; *M.A. and Others v. Lithuania*, 2018, § 67 참조). 협약 제 1 조의 “관할권”은 기준선 조건(최초 기준)이다. 관할권 행사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야기하고 체약국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8. 유럽인권협약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있는 필수 조건이다(*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11;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 130).

276. 제 1 조에 따른 일국의 관할권은 주로 영토 관할권이다(*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2001, §§ 61 및 67;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04). 관할권은 보통 해당 국가의 영토 전체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N.D. and N.T. Spain* [GC], §§ 102–103, 105 이하; *Assanidze v. Georgia* [GC], 2004, § 139; *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129, 139 및 150). 관할권은 국경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예를 들어, 망명 신청 및 청구인의 입국을 국경 관리가 거부한 *M.A. and Others v. Lithuania*, 2018, §§ 69–70; *M.K. and Others v. Poland*, 2020, §§ 126–132). “관할권” 개념은 국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 관할권을 제외하고나 변경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관할권은 국경을 형성하는 선에서 시작된다는 국제공법상 용어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소는 생긴 지역의 외부 경계선을 형성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의 유입에 대처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인정했지만, 해당 국가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았다(국가가 불법 이민 맥락에서 영토 관할권 예외를 발동한 경우 *N.D. and N.T. Spain* [GC], §§ 104–111, §§ 107–108).

277. 국가는 역외에서 수행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국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1992, § 91;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 86 및 91; *Loizidou v. Turkey* (선결적 항변 s), 1995, § 62). 그러나 이는 예외적으로만 발생하며(*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2001, § 71;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14), 즉 체약국이 해당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거나 최소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ibid.*, §§ 314–316 및 392;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06–107;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 138–140; *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2010, §§ 63–64; 적대 행위 중단 후 점령 단계에 관한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61–175). 한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국군을 통한 실효적 지배의 개념에 대해서는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14–316 참조. 또한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GC] (dec.), 2001, §§ 67 이하 및 74–82; *Cyprus v. Turkey* [GC], 2001, §§ 75–81; *Loizidou v. Turkey* (본안), 1996, §§ 52–57;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2014, § 75; *Ukraine v. Russia* (크림반도 관련) (dec.) [GC], 2020, §§ 315–335;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26 및 165 참조.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지원 덕분에 생존하는 하위 지방 행정부를 통해 행사되는 실효적 지배의 개념은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16–122;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169–186;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66–174 참조.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를 “병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맥락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의 예는 *Ukraine v. Russia* (크림반도 관련) (dec.) [GC], 2020, §§ 338–349 참조.

278. 타국의 역내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일국의 대리인을 통해 일국의 권한과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의 협약 권리가 위반되면 일국이 책임질 수 있다(*Issa and Others v. Turkey*, 2004, § 71; *Sánchez Ramirez v. France*, 위원회 결정, 1996; *Öcalan v. Turkey* [GC], 2005, § 91; *Veronica Ciobanu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1, §§ 25–26; 해외 군사 작전에 관해서는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 149;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2014, §§ 76–80; *Jaloud v. the Netherlands* [GC], 2014, §§ 140–152 참조).

279. 유엔이 승인한 다국적군의 군대가 저지른 행위와 국제기구가 해당 행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나 최종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의 국가 책임 귀속 여부는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 84–86 참조. 유엔 완충 지대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관련하여 *Isaak and Others v. Turkey* (dec.), 2006 참조. 두 체약국 간 국제 무력 분쟁의 맥락에서 적대 행위(폭격 및 포격)가 활성화되는 단계와 관련하여,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25–144 참조.

280. 법적으로 체약국의 역내에 있지만 그 국가의 실효적인 권한/통제 하에 있지 않은 영역인 경우, 제소사건은 협약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An and Others v. Cyprus*, 위원회 결정, 1991), 협약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12–313 및 333 이하; 또한 *Stephens v. Cyprus, Turkey and the United Nations* (dec.), 2008; *Azemi v. Serbia* (dec.), 2013;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2011, §§ 105–106;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2, §§ 109–10;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6, §§ 99–100 참조). 국제적으로 인정된 체약국 역내에서 다른 국가가 실효적 지배권을 갖지 않는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139–151 참조. 체약국이 완전히 지배하는 교도소이지만 그 전기와 수도는 체약국의 지배를 사실상 벗어난 지방 당국에 의해 차단된 경우, *Pocasovschi and Mihaila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2018, §§ 43–46 참조. 국가가 비국민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세 개의 울타리를 세우고 개인이 세 개의 울타리를 모두 통과해야만 관할권 내에 속한다고 주장한 경우, 재판소는 국가가 국경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관할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N.D. and N.T. Spain* [GC], §§ 104–111).

281. 체약국 중 일국 영토에 개인의 물리적 존재가 해당 개인을 해당 국가의 관할권 아래에 두는 효과가 있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예: 청구인의 진정이 제기된 국제기구의 본부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재지와 건물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유죄판결에 관한 국제 심판소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해당 국가에 귀속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Galić v. the Netherlands* (dec.), 2009; *Blagojević v. the Netherlands* (dec.), 2009; *Djokaba Lambi Longa v. the Netherlands* (dec.), 2012). 국제기구의 항구적 소재지로서 피청구국을 상대로 제소한 경우, *Lopez Cifuentes v. Spain* (dec.), 2009, §§ 25–26; *Klausecker v. Germany* (dec.), 2015, §§ 80–81 참조. 피청구국 역내 국제민사행정부의 수용에 대해서는 *Ber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2007, § 30 참조.

282. 일국이 타국에서 제기된 소송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치외법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McElhinney v.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0; *Treska v. Albania and Italy* (dec.), 2006; *Manoilescu and Dobrescu v. Romania and Russia* (dec.), 2005, §§ 99–111). 그러나 한 개인이 일국의 법원이나 심판소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되는 사건의 치외법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과 국가 간에는 “관할권 연계”가 명백히 존재한다(협약 제 6 조 관련 *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2006, §§ 49–55; 유사하게 외국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체약국의 관할권에 관한 *Arlewin v. Sweden*, 2016, §§ 65–74 참조; 대조적으로, 협약 제 3 조를 위반하여 망명을 청구하고 치료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에 입국할 허가를 얻으려고 벨기에에서 제소한 절차와 관련하여 *M. 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2020, §§ 121–125 참조).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수사·사법 당국이 사망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범죄 수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그 사망이 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수사·절차의 개시만으로도 해당 국가와 이후 재판소에 제 2 조 절차 단락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피해자의 친척 간에 협약 제 1 조의 목적상 “관할권 연계”를 형성할 수 있다(*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2019, §§ 188–189 및

191; *Aliyeva and Aliyev v. Azerbaijan*, 2014, § 57; 이와 대조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역외 군사 작전의 맥락에서 발생한 사망에 관한 *Hanan v. Germany* [GC], 2021, §§ 134–135 사건 참조). 해당 체약국에서 조사 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주어진 사건의 “특수성”은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했거나 반드시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제 2 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관할권 연계”를 유발할 수 있다(살인 용의자들이 튀르키예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키프로스 역내인 곳으로 도주하여 키프로스가 해당 용의자들에 대한 자체 범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2019, §§ 190 및 192–196, 러시아 연방이 국제 인도법과 국내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는 적대 행위의 활동 단계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에 관한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331–332, 독일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는 중범죄와 관련하여 국군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유지한 *Hanan v. Germany* [GC], 2021, §§ 136–142). 재판소는 “특수성” 접근법을 적용하여 다른 체약국에서 시작된 형의 집행을 계속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관할권 연계”를 확인하였다(아제르바이잔 장교가 형가리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본국으로 송환된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 49–51).

283. 또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개시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맥락에서 제 3 국에서 집행된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치외법권 책임을 규율하는 원칙도 제시하였다(*Stephens v. Malta (no. 1)*, § 52; *Vasiliciuc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7, §§ 22–25).

284. 일국의 치외법권 행사가 인정된 다른 사례로는 해외에서 자국의 외교 또는 영사 대리인의 활동과 관련된 사건(*M. v. Denmark*, 위원회 결정, 1994; 대조적으로 *M. 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2020, §§ 106 및 117–119 참조) 및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국가의 국기를 달고 있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사건(*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70–75 및 79–81; *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2010, § 65; *Bakanova v. Lithuania*, 2016, § 63)이 있다.

3. 책임성 및 귀책성

285. 협약과의 인적 관할 양립 가능성으로 위반 혐의의 책임이 체약국에 귀속될 수 있다(*Gentilhomme, Schaff-Benhadji and Zerouki v. France*, 2002, § 20; *M.A. and Others v. Lithuania*, 2018, § 70).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인적 관할 양립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책임의 귀책성/책임성/귀속성 문제를 고려하였다(*Assanidze v. Georgia* [GC], 2004, §§ 144 이하 참조; *Hussein v. Albania and 20 Other Contracting States* (dec.), 2006; *Isaak and Others v. Turkey* (dec.), 2006; *Stephens v. Malta (no. 1)*, § 45; *Jaloud v. the Netherlands* [GC], 2014, §§ 154–155).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62 사건에서 재판소는 진정이 제기된 사실관계가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지와 그 사실관계가 피청구국에 귀속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두 가지는 본안 심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86. 사인(私人)의 행위에 대한 체약국의 책임은 전통적으로 인적 관할 양립 가능성이라는 제목 하에 고려되었지만, 협약의 개별 권리 조건과 그 권리에 부가되는 적극적 의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GC], 2013, § 78; *Aksu v. Turkey* [GC], 2012, § 59; *Siliadin v. France*, 2005, §§ 77–81; *Beganović v. Croatia*, 2009, §§ 69–71 참조). 국가는 관할권 내에서 타인의 협약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의 행위를 당국이 둑인 또는 둑시한 결과(*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18; 대조적으로, 국가의 명확하고 명백한 “승인” 및 “채택” 없이 공무원이 사적 자격으로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 111–120 참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자국 역내에서 외국 공무원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도(*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206; *Al Nashiri v. Poland*, 2014, § 452;

Nasr and Ghali v. Italy, 2016, § 241; *Al Nashiri v. Romania*, 2018, §§ 594 및 600–602) 협약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

287. 사인(私人) 간 분쟁에 관한 사법적 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협약 권리에 대한 간섭의 존재를 기준으로 관여할 수 있다(가스 및 송유관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요청에 따른 위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법 명령에 대해 재판소는 그러한 명령이 청구인들의 평화적 소유권 향유에 대한 당국의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의 인적 관할 양립 불가능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 사건에서 국가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Zhidov v. Russia*, 2018, §§ 71 및 95).

4.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협약 당사국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

288. 협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적용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의 임무 이전 또는 임무 수행 도중 발생한 체약국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재판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유엔의 주요 임무 수행을 간섭하게 된다(*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dec.) [GC], 2007, §§ 146–152; 유엔 안보리에 권한과 통제권이 없고 체약국에 귀속되는 다국적군 내 국군의 행위에 관한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 74–85 사건과 대조).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국가의 행위가 유엔에 직접 귀속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이 개입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재판소의 접근 방식은 달라진다(*Nada v. Switzerland* [GC], 2012, §§ 120–122;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93–96).

289. 국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실제 소송 절차에 관한 제소를 다룰 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Galić v. the Netherlands* (dec.), 2009; *Blagojević v. the Netherlands* (dec.), 2009).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권한을 갖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고위 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Bosnia and Herzegovina)의 결정에 의한 공무원 해임은 *Ber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2007, §§ 26 이하 참조.

290. 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산하 조직이 내린 결정이나 조치로 인해, 해당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권 보호가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주장되지도 않았고 해당 국가가 문제가 된 행위를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 협약 위반 혐의는 체약국에 귀속될 수 없다(*Gasparini v. Italy and Belgium* (dec.), 2009; *Klausecker v. Germany* (dec.), 2015, § 97).

291. 따라서 재판소는 회원국과는 별개의 법인격인 국제기구의 내부 법질서 내에 전적으로 속하는 노동분쟁의 맥락에서 해당 국가가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해당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협약에 따른 책임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국제기구의 관할 기관이 내린 개별 결정에 대한 청구를 처리할 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유럽항공항법 안전기구(Eurocontrol)와 개별 노동 분쟁: *Boivin v. 34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2008; 국제올리브위원회 내부 징계 절차: *Lopez Cifuentes v. Spain* (dec.), 2009, §§ 28–29; 유럽 평의회 내부 징계 절차: *Beygo v. 46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200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무원의 해고로 인한 협약 위반 혐의와 EU 법원의 절차는 *Connolly v.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2008; *Andreasen v. the United Kingdom and 26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2015, §§ 71–72 참조.

292. 이러한 결과는 관련 당사국이 주권 권한의 일부를 이양한 국제기구의 내부 기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기구의 기본권 보호가 협약이 보장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건에서의 재판소 심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유익하다(*Gasparini v. Italy and Belgium* (dec.), 2009; *Klausecker v. Germany* (dec.), 2015, §§ 98–107).

293.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쟁점이 된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국제적 책임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며, *Bosphorus Hava Yollari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53; *Michaud v. France*, 2012, §§ 102–104; *Nada v. Switzerland* [GC], 2012, §§ 120–122;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93–96 참조.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dec.) [GC], 2007, § 151 사건과 비교. 다음 사례도 참조한다.

- 유럽연합 내부에서 체결된 조약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Matthews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 유럽연합 지침을 이행하는 프랑스 법률을 청구인에게 집행(*Cantoni v. France*, 1996)
- 국제기구에 부여된 관할권 면책을 이유로 독일 법원에 대한 접근 거부(*Beer and Regan v. Germany* [GC], 1999; *Waite and Kennedy v. Germany* [GC], 1999; *Klausecker v. Germany* (dec.), 2015, § 45)
- 유럽법에 따른 법적 의무에 의거하여 피청구국 당국이 장관의 명령에 따라 피청구국 역내에서 압수(*Bosphorus Hava Yollari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정된 유럽연합규정 – §§ 153–54 참조)
-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선결적 판결을 내려 달라는 국내법원의 요청(*Coöperatieve Producentenorganisatie van de Nederlandse Kokkelvisserij U.A. v. the Netherlands* (dec.), 2009)
- 제 3 국 국민이 회원국 중 한 국가에 제기한 망명 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는 회원국을 결정하는 기준과 기제를 정한 더블린 II 규정(EU 와 연합협정을 맺어 스위스에도 적용)에 따라 청구인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낸 스위스 당국의 결정(*Tarakhel v. Switzerland* [GC], 2014, §§ 88–91)

294. 유럽연합의 경우, 개별 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법 적용에 관한 제소는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심리부적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Bosphorus Hava Yollari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37; *Matthews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 26–35).

295. 협약 당사국이 아닌 유럽연합 기관을 직접 제소한 경우, 인적 관할 양립 불가능성에 따라 심리불가능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더 오래된 권한이 있다(*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v. the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 결정, 1978; *Bosphorus Hava Yollari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52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Coöperatieve Producentenorganisatie van de Nederlandse Kokkelvisserij U.A. v. the Netherlands* (dec.), 2009).

296. 이러한 입장은 유럽특허청(*Lenzing AG v. Germany*, 위원회 결정, 1998) 및 유엔 등의 그 외 국제기구(*Stephens v. Cyprus, Turkey and the United Nations* (dec.), 2008)에서도 채택되었다.

297. 국제조약의 부속서인 헌법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Sejd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2009, § 30 참조.

B. 장소적 관할 양립 불가능⁹

1. 원칙

298. 장소적 관할 양립 가능성이 존재하려면 협약 위반 혐의가 피청구국의 관할권 내 또는 피청구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에서 발생해야 한다(*Cyprus v. Turkey* [GC], 2001, §§ 75–81; *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1992, §§ 84–90).

299. 체약국 역외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에 근거하고 해당 사건과 체약국 관할권 내의 어떤 당국과도 연관성이 없는 청구인 경우, 협약과 장소적 관할 양립 불가능을 근거로 기각된다.

300. 진정사항이 체약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동에 관한 것일 경우, 정부는 해당 청구사건이 협약의 규정과 장소적 관할은 양립할 수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Loizidou v. Turkey*(선결적 항변 s), 1995, § 55; *Rantsev v. Cyprus and Russia*, 2010, § 203;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2016, §§ 79 및 111;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 170–174; *Hanan v. Germany* [GC], 2021, §§ 104–113). 이러한 항변은 협약 제 1 조에 따라 심리된다¹⁰(이 조에 따른 “관할권” 개념의 범위는 예를 들어 *N.D. and N.T. Spain* [GC], §§ 102–103;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2001, § 75;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 178–197; *Hanan v. Germany* [GC], 2021, §§ 132–142; *Ukraine and the Netherlands v. Russia* [GC] (dec.), 2022, §§ 547–564 참조; 또한 위에 나온 II.A.2 참조). 정부가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소는 직권으로 해당 문제를 심리할 수 있다(*Vasiliciuc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7, § 22; *Stephens v. Malta* (no. 1), § 45).

301. 피청구국 정부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은 다른 체약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청구국의 규정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피청구국에서 절차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사건이 협약 규정과의 장소적 관할 양립 불가능으로 심리부적격이라고 항변을 제기하기도 한다. 재판소는 또한 제 1 조의 관점에서 그러한 청구를 심리할 것이다(*Haas v. Switzerland* (dec.), 2010).

302. 그러나 분명한 점은 국가는 해외에 있는 외교 및 영사 대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외교 공관(*X. v. Germany*, 위원회 결정, 1965;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 134; *M. v. Denmark*, 위원회 결정, 1994, § 1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대조적으로, *M. 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2020, §§ 106 및 117–119 참조) 또는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국가의 국기를 달고 있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수행된 행위와 관련하여(*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2001, § 73;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2012, §§ 77 및 81; *Bakanova v. Lithuania*, 2016, § 63) 장소적 관할 양립 불가능성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303. 마지막으로, 장소적 관할권의 결여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인들이 협약 제 1 조의 목적상 일국 이상의 체약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재판소의 심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1992, § 90).

304.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청구국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는 항변은 해당 청구가 협약의 인적 관할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2001, § 35;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300;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2006 사건에서 피청구국 정부들의 제출자료 참조).

9. 관할권 참조.

10. 유럽인권협약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2. 구체적 사건

305. 종속 영토에 관한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국이 제 56 조에 따라 해당 영토에 협약 적용 확대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 청구사건의 장소적 관할은 양립할 수 없다(*Gillow v. the United Kingdom*, 1986, §§ 60–62; *Bui Van Than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0; *Yonghong v. Portugal*(dec.), 1999;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dec.), 2012, §§ 60–76). 나아가 이는 협약 의정서에도 적용된다(*Quark Fishing Limited v. the United Kingdom*(dec.), 2006).

306. 체약국이 제 56 조에 따라 그러한 선언을 한 경우 양립 불가능성 사안은 발생하지 않는다(*Tyrer v. the United Kingdom*, 1978, § 23).

307. 종속 영토가이 독립하면 선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본국에 대한 후속 청구는 인적 관할 양립 불가능으로 선언된다(*Church of 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68).

308. 종속 영토가 체약국 본토의 일부가 되는 경우, 이 협약은 종전의 종속 영토에 자동으로 적용된다(*Hingitaq 53 and Others v. Denmark*(dec.), 2006).

C. 시간적 관할 양립 불가능

1. 일반 원칙

309. 국제법의 일반 규칙(조약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협약 규정은 해당 당사자와 관련하여 협약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 또는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체약국을 구속하지 않는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70; *Šilih v. Slovenia* [GC], 2009, § 140;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30).

310. 시간적 관할권은 피청구국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를 비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협약은 그 이전에 발생한 잘못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할 구체적인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지 않는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8).

311. 비준일 이후부터 국가의 모든 작위 및 부작위 혐의는 협약 또는 그 의정서에 부합해야 하며, 그 이후의 사실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상황의 연장에 불과하더라도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2000, § 43). 그러나 재판소는 비준 이전의 사실관계가 비준일 이후 연장된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비준일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의 이해와 관련될 수 있다면 비준 이전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Hutten-Czapska v. Poland* [GC], 2006, §§ 147–153;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240–241).

312. 이는 좁은 의미의 심리적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재판소는 직권으로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시간적 관할권을 심리할 의무가 있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67; *Petrović v. Serbia*, 2014, § 66; *Hoti v. Croatia*, 2018, § 84 – *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1995, § 58 사건과 비교).

2. 원칙 적용

a. 협약 비준 또는 협약 기관의 관할권 수락 관련 결정적 기일

313.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 기일은 해당 당사국에 대한 협약 및 협약 의정서 발효일이다(예를 들어 *Šilih v. Slovenia* [GC], 2009, § 164 참조).

314. 그러나 1950년 협약은 개인 제소사건을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제 25 조)과 재판소 관할권(제 46 조)을 체약국의 구체적인 선언에 의거하게 하였다. 이러한 선언에는 제한

중에서도 특히 시간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협약 비준일 이후에 그러한 선언을 작성한 국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재판소는 협약 발효와 관련 선언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관할권의 시간적 제한을 인정하였다(*X. v. Italy*, 위원회 결정, 1976; *Stamoulakatos v. Greece* (no. 1), 1993, § 32; 또한, “결정적 기일”은 영국이 개인 청원권을 인정한 날짜(1966년)이지 영국에 협약이 발효된 시점(1953년)이 아니라고 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Chong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8, §§ 84–90 참조).

315. 정부의 선언에 그러한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경우(1981년 10월 2일 프랑스 선언 참조), 협약 기관들은 관할권 수락의 소급 효력을 인정하였다(*X. v. France*, 위원회 결정, 1982).

316. 이러한 선언에 포함된 시간적 제한은 **제 11 의정서** 제 6 조에 비추어 협약의 현행 제 34 조에 따라 개별 제소를 받는 재판소의 관할권 결정에 여전히 유효하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72). 재판소는 이전 체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언과 재판소 관할권 인정 사이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대한 개인 청원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선언부터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Cankoçak v. Turkey*, 2001, § 26; *Yorgiyadis v. Turkey*, 2004, § 24;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33).

b. 발효 또는 선언 전/후 순간의 사실관계

317.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은 간접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간접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실관계와 침해 혐의가 있는 협약 권리의 범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82;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31; *Nešić v. Montenegro*, 2020, §§ 36–38).

318. 재판소는 이 심사를 결정적 기일 전후의 다른 사법 결정에 적용할 때,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최종 판결을 고려하였으며(대법원이 청구인의 임차권을 종료시킨 *Blečić v. Croatia* [GC], 2006, § 85; 또는 *Mrkić v. Croatia* (dec.), 2006 사건에서 카운티 재판소의 판결), 후속 구제절차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간접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85 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는 후속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Mrkić v. Croatia* (dec.), 2006 사건에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결정).

319. 그러한 간접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가 잇따라 실패한 것은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에 포함될 수 없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77–79).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간접에 대해 협약을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30).

320. 다음과 같은 사건 사례가 있다.

-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간접과 그 이후 내려진 최종 법원 결정(*Meltex Ltd v. Armenia* (dec.), 2008)
- 결정적 기일 이후 발생한 간접(*Lepojojić v. Serbia*, 2007, § 45; *Filipović v. Serbia*, 2007, § 33)
-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학대의 결과로 얻은 증거를 그 이후에 내려진 사법적 결정에 사용(*Harutyunyan v. Armenia*, 2007, § 50)
- 결정적 기일 이전에 제기되었지만 그 이후에 종결된 재산 소유권 무효화 소송(*Turgut and Others v. Turkey*, 2008, § 73)
- 재산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 날짜(*Fener Rum Patrikliği (Ecumenical Patriarchy) v. Turkey* (dec.), 2007)

321. 다음 사건 사례도 참조한다.

- 그리스가 제 25 조에 따라 선언하기 전에 그리스 법원이 청구인에게 부재증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그 날짜 이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는 결국 실패(*Stamoulakatos v. Greece* (no. 1), 1993, § 33)
- 비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청원서에 서명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암묵적인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시된 절차는 그 날짜 이후에 진행(*Kadiķis v. Latvia* (dec.), 2000)
- 비준 이전 청구인의 해고와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 소송 및 그 날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Jovanović v. Croatia* (dec.), 2002)
- 청구인들의 회사 경영권을 경제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사회로 이관하라는 장관 명령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었는데도 청구인들의 상소를 각하한 대법원판결은 결정적 기일 이전에 선고(*Kefalas and Others v. Greece*, 1995, § 45)
- 해당 날짜 이전에 언론인에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제 46 조에 따른 관련 선언 이후 청구인에게 내려진 유죄판결(*Zana v. Turkey*, 1997, § 42)
- 청구인 회사의 구내 수색 및 문서 압수 및 비준 이후 진행된 후속 절차(*Veeber v. Estonia* (no. 1), 2002, § 55; 또한 *Kikots and Kikota v. Latvia* (dec.), 2002 참조)

322. 그러나 청구인이 후속 절차와 협약 조항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한다면, 재판소는 문제가 된 구제절차에 대해 시간적 관할권이 있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Kerimov v. Azerbaijan* (dec.), 2006 사건에서 신문 제작 및 배포 중단을 명령한 제 1 심법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 상고; *Kotov v. Russia* [GC], 2012, §§ 68–69 사건에서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은행 자산의 불법 분배 및 결정적 기일 이후에 제기된 불법 행위 청구).

323. *Blečić v. Croatia* [GC], 2006 사건에서 확립된 심사와 기준은 일반적인 성격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는 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특정 권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Šilih v. Slovenia* [GC], 2009, § 147).

3. 구체적 상황

a. 계속되는 위반

324. 협약 기관들은 협약 발효일 이전에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위반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시간적 관할권 확장을 수용하였다(*De Becker v. Belgium*, 위원회 결정, 1958).

325. 재판소는 재산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여러 사건에서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 해군이 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보상 없이 계속 불법 점유(*Papamichalopoulos and Others v. Greece*, 1993, § 40)
- 북키프로스 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접근 거부(*Loizidou v. Turkey* (본안), 1996), §§ 46–47)
- 국유화 재산에 대한 최종 보상금 미지급(*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2000, § 43)
- 폴란드의 제 1 의정서 비준 전후에 시행된 법률로 인해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주택을 임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지속(*Hutten-Czapska v. Poland* [GC], 2006, §§ 152–153)
- 청구인에게 유리한 국내 결정이 국가를 상대로 계속 집행되지 않음(*Krstić v. Serbia*, 2013, §§ 63–69)

326. 한계: 개인의 주거 또는 재산에 대한 단순 박탈은 원칙적으로 “순간적인 행위”이며 관련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박탈”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Blečić v. Croatia* [GC], 2006, § 86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1945년 이후 이전 정권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구체적인 사건은 *Preussische Treuhand GmbH & Co. KG a.A. v. Poland* (dec.), 2008, §§ 55–62에서 인용된 참고 문헌 참조.

327. 위반의 지속성은 협약의 다른 조항과 관련해서도 확립될 수 있다(제 2 조 및 결정적 기일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사형선고는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406–408 참조; 제 8 조 및 결정적 기일 이전에 영주권자 명부에서 “지워진” 사람의 거주 제한 실패는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2012, §§ 240–241 참조; 또한 제 8 조 및 청구인의 거주 신분 정상화 불가능은 *Hoti v. Croatia*, 2018, § 84 참조).

b.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실종을 조사하기 위한 “계속되는” 절차적 의무

328. 실종은 “순간적인” 행위 또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재판소는 실종을 불확실하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발생한 일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와 모호함마저 있는 뚜렷한 현상으로 본다. 나아가 실종자의 행방과 생사를 설명하지 못하면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절차적 의무는 사망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필요한 조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계속되는 위반으로 간주된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148–149). *Varnava* 판례의 청구사건은 *Pal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11, § 46 참조.

c. 제 2 조에 따른 사망 조사에 대한 절차적 의무: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 외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절차

329. 재판소는 의심스러운 사망 또는 살인을 조사할 의무와 의심스러운 실종을 조사할 의무를 구분한다.

330. 따라서 협약 제 2 조에 따른 실효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는 사망이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의무를 구성한다고 본다(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사망에 관한 사건이지만 조사 수행의 결함 또는 부작위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 *Šilih v. Slovenia* [GC], 2009, § 159).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관할권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시한 내에 법적 확실성 원칙을 고려하여 행사한다(*ibid.*, §§ 161–163). 첫째, 결정적 기일 이후에 발생한 절차적 작위 및/또는 부작위만이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ibid.*, § 162). 둘째, 재판소는 절차적 의무가 발효되려면 사망과 피청구국에 대한 협약 발효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첫째, 사망과 협약 발효 간 시간 경과가 합리적으로 짧아야 하고(10년을 초과하지 않음) 둘째, 관련자의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갖춘 제도 등 절차적 단계의 상당 부분이 해당 국가의 협약 비준 이후에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었어야 함이 증명되어야 한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145–148;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05–206). “진정한 유대(genuine connection)” 심사의 후속 적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Sandru and Others v. Romania*, 2009, § 57; *Çakir and Others v. Cyprus* (dec.), 2010; *Jelić v. Croatia*, 2014, §§ 55–58; *Melnichuk and Others v. Romania*, 2015, §§ 72–75; *Ranđel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2017, §§ 92–94; *Chong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8, §§ 84–90; *Jurica v. Croatia*, 2017, §§ 67–72(의료 과실 사건에서 제 8 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에 심사 적용) 참조.

331. 고문 끝에 사망한 *Tuna v. Turkey*,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처음으로 *Šilih*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을 적용하여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른 청구인의 절차적 진정사항을 함께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절차적 의무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원칙, 특히 제 2 조 및 제 3 조의 실체적 측면에 관한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같이 관할권이 미치는 기간 이후에 발생했지만, 절차적 측면에 관한 사실관계, 즉 후속 절차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간적 관할권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두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32. 제 3 조에 따른 절차적 진정사항에 대한 후속 적용은 예를 들어 *Yatsenko v. Ukraine*, 2012 및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207–211 참조.

333. 그러나 재판소는 “진정한 유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협약의 보장 및 기본 가치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보호될 필요성에 근거하여 연결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Šilih v. Slovenia* [GC], 2009, § 163).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작동하여 과거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협약상 가치” 심사는 유발 사건이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의 경우와 같이 협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차원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950년 11월 4일 협약 채택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 해당한다. 따라서 협약 이전에 발생한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라도 협약 이전에 발생한 경우 체약국은 협약에 따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149–151, 1940년 카틴 학살 조사에 관한 사건이므로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 외에 해당; 1948년 말라야에서 영국군이 비무장한 민간인 24명을 살해한 *Chong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18, § 91).

d. 이전 사실관계 고려

334.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비준 이전의 사실관계가 그 날짜를 넘어 연장되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이해에 관련될 수 있는 한 비준 이전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Broniowski v. Poland* (dec.) [GC], 2002, § 74; *Hoti v. Croatia*, 2018, § 85).

e. 계속 중인 절차 또는 구금

335. 비준 이전에 제기되었지만 비준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법 절차 기간(협약 제 6 조제 1 항)에 관한 진정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결정적 기일 이후의 기간으로 제한되지만, 재판소는 종종 지침을 위해 해당 날짜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한다(예를 들어, *Humen v. Poland* [GC], 1999, §§ 58–59; *Foti and Others v. Italy*, 1982, § 53).

제 5 조제 3 항에 따른 재판 전 구금에 관한 사건(*Klyakhin v. Russia*, 2004, §§ 58–59) 또는 제 3 조에 따른 구금 조건(*Kalashnikov v. Russia*, 2002, § 36)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36.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재판 단계의 결함이 결정적 기일 이전에 수행된 조사에서 절차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지 심리할 수 있다(*Barberà, Messegué and Jabardo v. Spain*, 1988, §§ 61 및 84). 이 과정에서 스트拉斯부르의 판사들은 절차 전반을 고려한다(또한 *Kerojärvi v. Finland*, 1995, § 41 참조).

337. 협약 제 5 조제 5 항에 따른 절차적 진정은 협약 발효 이전에 자유가 박탈된 경우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에 속할 수 없다(*Korizno v. Latvia* (dec.), 2006).

f. 잘못된 유죄 판결에 배상받을 권리

338. 재판소는 결정적 기일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취소된 제 7 의정서 제 3 조에 따른 진정사항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였다(*Matveyev v. Russia*, 2008, § 38).

g. 거듭 재판받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

339. 재판소는 첫 번째 절차가 결정적 기일 이전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기일 이후에 두 번째 절차에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제 7 의정서 제 4 조에 따른 진정사항을 심리할 시간적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중재판 또는 이중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는 협약 비준 후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비준 전에 수행된 절차에 대해서 배제될 수 없다(*Marguš v. Croatia* [GC], 2014, §§ 93–98).

D. 물적 관할 양립 불가능

340. 청구 또는 진정의 협약과 물적 관할 양립 가능성은 재판소의 실체적 관할권에서 비롯된다. 적용 가능성 문제는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사안이므로, 이 문제를 본안에 포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관련 분석은 심리적격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93 사건에 명시된 원칙 참조 및 예를 들어 *Studio Monitori and Others v. Georgia*, 2020, § 32 참조).

341. 진정사항이 협약의 물적 관할과 양립 가능해지려면, 청구인이 의거하는 권리를 협약 및 발효된 협약 의정서가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권리(*X. v. Germany*, 위원회 결정, 1977), 자결권(*X.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76), 외국인이 체약국에 입국 및 거주할 권리(*Peñafiel Salgado v. Spain* (dec.), 2002) 또는 특정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Ahunbay and Others v. Turkey* (dec.), 2019, §§ 21–26)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소는 심리부적격이다.

342. 세계인권선언 제 15 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국적에 대한 권리” 또는 특정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Petropavlovskis v. Latvia*, 2015, §§ 73–74). 그런데도, 재판소는 자의적인 국적 거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협약 제 8 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Slivenko and Others v. Latvia* (dec.) [GC], 2002, § 77; *Genovese v. Malta*, 2011, § 30). 이미 취득한 시민권을 취소할 경우 개인의 가족생활 및 사생활 존중권에 대한 침해가 더 크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Ramadan v. Malta*, 2016, §§ 84–85; *K2 v. the United Kingdom* (dec.), 2017, §§ 49–50; *Ghoumid and Others v. France*, 2020, §§ 41–44).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시민권 포기 권리는 협약이나 그 의정서에 의해 보장되지 않지만, 시민권 포기 요청을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협약 제 8 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Riener v. Bulgaria*, 2006, §§ 153–154).

343. 재판소는 다른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지만, 협약 본문에서 용어와 개념의 의미를 정의할 때 협약 이외의 국제법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N.D. and N.T. v. Spain* [GC], 2020, §§ 172, 174–183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85;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2014, §§ 99 이하; *Blokchin v. Russia* [GC], 2016, § 203 참조).

344. *Blečić v. Croatia* [GC], 2006, § 67 사건에 따르면, 재판소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는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제출물이 아니라 협약 자체, 특히 제 32 조에 의해 결정되며(*Slivenko and Others v. Latvia* (dec.) [GC], 2002, §§ 56 이하), 단순히 양립 불가능에 관한 항변이 없다고 해서 그 관할권이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정부의 이의 제기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물적 관할권이 있는지 심리할 의무가 있다(*Tănase v. Moldova* [GC], 2010, § 131). 따라서 재판소는 직권으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다(*Studio Monitori and Others v. Georgia*, 2020, § 32).

345. 사안이 유보의 범위에 속하고(*Göktan v. France*, 2002, § 51), 유보가 협약 제 57 조의 목적에 따라 재판소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Grande Stevens and Others v. Italy*, 2014, §§ 206 이하) 피청구국이 유보한 협약 조항에 관한 제소는 협약의 물적 관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된다(*Benavent Díaz v. Spain* (dec.), 2017, § 53; *Kozlova and Smirnova v. Latvia* (dec.), 2001). 무효로 간주되는 해석 선언은 *Bellilos v. Switzerland*, 1988 참조. 이전 국제 조약 의무와 관련하여 유보된 사항은 *Slivenko and Others v. Latvia* (dec.) [GC], 2002, §§ 60–61 참조.

346. 또한 재판소는 체약국이 재판소 판결 중 하나로 부과된 의무를 준수했는지 심리할 물적 관할권이 없다. 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소가 이미 판결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청구는 재판소의 물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 34 (*Egmez v. Cyprus* (dec.), 2012, 및 § 35 인용)). 재판소는 협약 제 46 조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집행을 감독하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는 이러한 성격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각료위원회의 역할이 재판소가 판단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피청구국이 취한 조치가 판결에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안을 제기하여 재판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청구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o. 2)* [GC], 2009, § 62). 즉, 재판소는 판결 중 하나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준에서 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새로운 협약 위반을 야기한다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ibid.*; *Lyon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3). 국내 법원의 제 6 조 위반에 대한 이전 판결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 절차의 재개 거부에 대한 청구가 제 1 심판결에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경우(예: 해당 국내 법원의 후속 절차의 불공정성 주장), 재판소는 청구를 심리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민사 맥락에서 *Bochan v. Ukraine (no. 2)* [GC], 2015, §§ 35–39, 형사 맥락에서 *Moreira Ferreira v. Portugal (no. 2)* [GC], 2017, §§ 52–58). 마찬가지로, 제 3 조의 절차 단락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전 판결 이후 새로운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할 관할권은 재판소에 있을 수 있다(*V.D. v. Croatia (no. 2)*, 2018, §§ 46–54).

347. 물적 관할 양립 불가능을 이유로 제소의 심리부적격을 선언하는 결정의 대부분은 협약 또는 그 의정서 조항, 특히 협약 제 2 조(생명권), 제 3 조(고문의 금지), 제 4 조(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제 5 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 6 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 7 조(죄형법정주의), 제 8 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Denisov v. Ukraine* [GC], 2018, § 134 참조), 제 9 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 10 조(표현의 자유), 제 11 조(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재산의 보호) 및 그 외 조항의 범위 제한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 관련 판례 해설서(재판소 웹사이트: www.echr.coe.int – 판례 – 판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럽인권협약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4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5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6 조(민사 영역)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6 조(형사 영역)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7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9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10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13 조에 대한 해설서
- 유럽인권협약 제 14 조 및 협약 제 12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제 1 의정서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 제 1 의정서 제 3 조에 대한 해설서
- 제 4 의정서 제 4 조에 대한 해설서
- 제 7 의정서 제 4 조에 대한 해설서

III. 본안에 근거한 심리부적격

A. 명백하게 근거 부재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a)호 – 심리적격의 기준

“3. 재판소는 다음을 고려한다면 제 34 조에 따른 개인의 청구라 해도 심리부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a) … 명백히 근거가 없는 … 청구”

HUDOC 주제어

명백히 근거가 없는(35-3-a)

1. 일반적인 사항

348. 청구사건이 협약에 부합하고 모든 형식적인 심리적격 조건을 충족하여도 재판소는 본안 심리와 관계된 이유로 심리부적격을 선언할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제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제 35 조제 3 항제(a)호에서 “명백히”라는 용어의 사용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소가 억지스럽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반 독자가 보자마자 알 수 있을 정도여야 이러한 이유로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 기관(즉, 재판소 및 1998년 11월 1일 이전의 유럽인권위원회)의 풍부하게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이 표현은 사건의 최종 결과와 관련하여 한층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제소의 실체에 대한 사전 심리에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외관이 드러나지 않으면 “명백히 근거가 없는” 제소라고 보며, 그 결과 본안 심리(보통 판결로 이어짐)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심리부적격이 선언될 수 있다.

349. 어떤 청구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 위하여 재판소가 때로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문에 길고 상세한 추론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해당 제소사건의 성격이 “명백히” 근거가 없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Mentzen v. Latvia* (dec.), 2004).

350. 명백히 근거가 없는 제소의 대부분은 단독 판사 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약식절차에 따라(de plano) 심리부적격을 선언한다(협약 제 27조 및 제 28조).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진정사항을 소재판부 또는 예외적인 사건이라면 대재판부가 심리하기도 한다(제 6 조제 1 항에 관한 *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78–86; 제 8 조에 관한 *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2010, §§ 130–138; 독일에서 수행한 조사의 독립성 부재 주장에 관한 *Hanan v. Germany* [GC], 2021, § 152).

351. “명백히 근거 없는”이라는 용어는 제소 전체에 적용되거나 사건의 더 넓은 맥락에서 하나의 특정한 청구사항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제소의 일부는 “제 4 심” 성격이라고 각하되고 나머지는 심리적격으로 선언되어 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사항”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352. “명백히 근거 없는”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려면 협약 체계 전체를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이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과 집행을 존중하게 하는 임무는 재판소가 아닌 체약국 당국에 먼저 부여된다는 뜻이다. 국내 당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140).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가능한 한 국내에서 조사하고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자국의 중요한 요소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국내 당국이 협약 위반 혐의를 바로잡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다(*Dubská and Krejzová v. the Czech Republic* [GC], 2016, § 175).

353. 명백히 근거가 없는 청구사항은 (1) “제 4 심” 청구사항, (2) 명백히 또는 외관상 위반사항이 없는 청구, (3) 증명되지 않은 청구사항, (4) 혼란스럽거나 억지스러운 청구사항 등 4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2. “제 4 심”¹¹

354. 재판소에 제출되는 청구사항의 범주로 보통 “제 4 심” 청구사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협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협약 기관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 용어는(*Kemmache v. France (no. 3)*, 1994, § 44) 다소 역설적인데, 이는 재판소가 협약 체약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취소하거나 그 법원이 심리한 사건을 재심할 수 있는 상소법원이나 법원이 아니며 대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재심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4 심 제소사건은 재판소의 역할과 협약이 정한 사법 기관적 성격에 대한 청구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355.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협약은 다른 국가 간 조약,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국제 조약의 모습을 유지한다(*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2008, § 65). 따라서 재판소는 체약국이 주권적 의사에 따라 위임한 일반적인 권한의 경계를 넘어서는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협약 제 19 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협약과 그 의정서에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약속한 공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356. 따라서 재판소의 권한은 체약국이 협약(및 그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인권 관련 공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나아가, 체약국의 법률 체계에 직접 개입할 권리가 부여하므로 재판소는 체약국 법률 체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즉, 국내 법원에 의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는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처리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다. 또한 국내 법원이 어떤 결정을 선택하여 내리게 된 사실관계를 심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재판소는 제 3 심 또는 제 4 심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재판소의 행위에 부과된 한계를 무시하게 된다(*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 *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0).

357. 위의 고려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내 법원의 판단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 국내법 해석 및 적용
- 재판에서 증거의 심리적격성 및 심사
- 시민 분쟁 결과의 실질적 공정성
-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358.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재판소가 문제가 된 판단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후자가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명백히 자의적이며 그 자체로 협약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밖에 없다(*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0; *Kononov v. Latvia* [GC], § 189).

11. 자세한 내용은 협약 제 6 조의 [민사](#) 및 [형사](#) 측면에 대한 판례 해설서를 참조한다.

359. 제 4 심 청구는 협약의 모든 실체적 조항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내 수준에서 절차가 속하는 법적 영역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에는 제 4 심 원칙이 적용된다.

- 구금 관련 사건(*Thimothawes v. Belgium*, § 71)
- 민사 사건(*García Ruiz v. Spain* [GC], 1999, § 28; *Hasan Tunç and Others v. Turkey*, 2017, §§ 54–56)
- 형사 사건(*Perlala v. Greece*, 2007, § 25; *Khan v. the United Kingdom*, 2000, § 34)
- 범죄 발생 전 예방적 조치에 관한 사건(*De Tommaso v. Italy* [GC], 2017, §§ 156–173);
- 과세 사건(*Dukmedjian v. France*, 2006, §§ 71–75; *Segame SA v. France*, 2012, §§ 61–65)
- 사회적 사안 관련 사건(*Marion v. France*, 2005, § 22; *Spycher v. Switzerland* (dec.), 2015, §§ 27–32)
- 행정 사건(*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96–199)
- 국가 배상 책임에 관한 사건(*Schipani and Others v. Italy*, 2015, §§ 59–61)
- 징계 사건(*Pentagiotis v. Greece* (dec.), 2011)
- 투표권 관련 사건(*Ādamsons v. Latvia*, 2008, § 118)
- 비국적자 입국, 거주 및 퇴거에 관한 사건 (*Sisojeva and Others v. Latvia* (종료) [GC], 2007, § 89; *Ilias and Ahmed v. Hungary* [GC], 2019, §§ 147, 150)
- 집회 관련 사건(*Mushegh Saghatelian v. Armenia*, § 241)
- 제 1 의정서 제 1 조 관련 사건(*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 83–86)

360. 그러나 대부분의 제 4 심 청구는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에 관한 협약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제기된다. 청구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으로, 제 6 조 1 항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은 “실체적” 공정성(일부는 법적, 일부는 윤리적 개념이며 재판판사만이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동등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당사자주의적 절차를 의미한다(*Star Cage – Epilekta Gevmata and Others v. Greece* (dec.), 2010).

361. 당사자주의적 절차(*García Ruiz v. Spain* [GC], 1999; *De Tommaso v. Italy* [GC], 2017, § 172).

3. 명백히 또는 외관상 위반사항 부재

362. 청구인의 청구가 모든 형식적 심리적격 조건을 충족하고 협약에 부합하며 제 4 심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외관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도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선언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진정의 본안을 심리하여 위반의 외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리부적격이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진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 외관상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음

363.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 당국이 먼저 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국내법의 해석은 국내 법원 및 그 외 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판단 결과 및 결론은 재판소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 협약 체제에 내재된 권리의 실효성 원칙에 따르면, 청구인의 청구를 초래한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자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소 스스로 납득할 수 있고 납득해야 한다(사안에 따라 문제가 된 절차는 행정적 및/또는 사법적일 수 있음).

364. 따라서 재판소는 소송 과정에서 관할 국가 법원이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선행적으로 반증 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구는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절차 진행
- 국내법의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절차 진행
-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며 해당 기관이 이를 정식으로 청취
- 관할 기관이 객관적으로 볼 때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관련된 모든 사실적 및 법적 요소를 조사하고 고려
- 절차로 인해 충분한 이유가 제시된 결론 도출

b. 외관상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부재하지 않음

365. 의거하는 협약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명시적(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또는 묵시적(재판소 판례에 의해 정의된) 제한을 받는 경우, 재판소는 청구가이 제기된 간섭의 비례성을 심사하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366. 허용되는 제한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모아보면 제 8 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제 9 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 10 조(표현의 자유), 제 11 조(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4 개 조항을 중심으로 둑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모두 제 1 항에서 해당 기본권을 명시하고 제 2 항에서 국가가 해당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하는 동일한 구조로 짜여 있다. 제 2 항의 문구는 사례별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제 8 조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간섭할 수 없다.”

제 4 의정서 제 2 조(이동의 자유)도 제 3 항이 동일한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한다.

367. 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권리 중 하나에 대한 공공 기관의 간섭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항상 세 단계로 사안을 분석한다. 국가에 의한 “간섭”이 실제로 있었다면(이에 대한 해답이 언제나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임), 재판소는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을 구한다.

- 해당 간섭 행위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법률”을 따랐는가?
- 그랬다면, 그 간섭이 조항에 열거된 “정당한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추구하였는가(목록은 조항에 따라 다소 상이함)?
-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간섭이었는가? 즉, 해당 목적과 문제가 된 간섭은 비례성이 있는가?

368.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각 긍정적인 경우에만 해당 간섭은 협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니라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재판소는 세 번째 질문을 심리하면서 그 정황,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 및 간섭의 성격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국가의 재량을 고려해야 한다(*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2017, §§ 179–182;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2012, §§ 59–61).

369. 동일한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조항뿐만 아니라 협약의 다른 대부분의 조항과 해당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묵시적 제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협약 제 6 조제 1 항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권리의 본질상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협약의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있지만 체약국은 어느 정도 재량을 누릴 수 있다. 적용되는 제한이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킬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재판청구권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사용된 수단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없는 경우 제 6 조제 1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Cudak v. Lithuania* [GC], 2010, § 55;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2016, § 129).

370. 제소사건의 사전 심리가 끝나면 재판소는 위에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고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간섭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에 명백한 비례성의 결여가 없다고 납득한다면 해당 제소가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한다. 그러면 심리부적격 결정의 이유는 재판소가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본안 판결에서 채택하는 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Mentzen v. Latvia* (dec.), 2004).

c. 그 외 실체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안

371. 위에서 설명한 상황 외에도, 본안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외관상 근거로 삼은 협약 조항 위반이 없다고 이해된다면 재판소는 해당 청구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선언한다. 특히 이러한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가 풍부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협약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 해당 사안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룬 이전 판결이 없더라도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외관상 협약 위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Hartung v. France* (dec.), 2009).

372. 두 가지 정황에서 모두 사건의 사실관계 및 그 외 모든 관련 사실 요소를 장기간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Collins and Akaziebie v. Sweden* (dec.), 2007).

4. 증명되지 않은 진정사항: 증거 부재

373. 재판소 절차는 그 본질이 당사자주의적이다. 따라서 당사자, 즉 청구인과 피청구국 정부가 사실적 변론과(재판소에 필요한 사실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변론을(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청구인이 의거하는 협약 조항이 왜 위반되었는지 또는 위반되지 않았는지 설명) 증명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374. 재판소규칙 규칙 제 47 조에서 개인 제소사건의 내용을 관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협약 제 34 조에 따른 제소는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청구서의 해당 부분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d) 사실관계에 대한 간결하고 읽기 쉬운 진술

(e) 협약 위반 혐의 및 관련 변론에 관한 간결하고 읽기 쉬운 진술

...

2. (a) 위 제 1 항제(d)호 내지 제(f)호에 언급된 모든 정보는 청구서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것으로서 재판소가 다른 문서에 의존하지 않고도 제소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3.1 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첨부한다.

(a) 진정을 제기한 결정 또는 조치와 관련된 사법적 또는 그 외 문서 사본

(b) 청구인이 협약 제 35 조제 1 항에 규정된 국제 구제절차 경료 요건 및 시한을 준수하였다는 문서 및 결정의 사본

...

5.1 이 규칙 제 1 항 내지제 3 항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제소사건은 재판소가 심리하지 않는다.

(a) 청구인이 미준수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는 경우

...

(c) 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달리 지시하는 경우

..."

375. 또한, 재판소규칙 규칙 제 44C 조제 1 항에 따라

“재판소가 요청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스스로 신청한 관련 정보를 그 외 방식으로 절차에 실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간섭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376.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재판소는 명백히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제소는 심리부적격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은 특히 두 가지가 있다.

-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도 명백하지 않은데도 어떤 방식으로 위반되었는지 청구인이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 이상의 협약 조항만 인용하는 경우(*Trofimchuk v. Ukraine* (dec.), 2005; *Baillard v. France* (dec.), 2008)
-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거나(예: 교정 당국이 수감자의 사건 파일의 문서를 법원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 자체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증거(특히 법원 또는 그 외 국내 당국의 결정)를 생략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혼란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불만사항

377. 재판소는 진정사항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실 관계와 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불만사항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면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다. 억지스러운 불만, 즉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어냈음이 명백하거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불만사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협약을 위반한 외관이 아니라는 사실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관찰자에게도 명백하다.

B.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 – 심리적격의 기준

“3. 재판소는 다음을 고려한다면 제 34 조에 따른 개인의 청구라 해도 심리부적격을 선언해야 한다.

...

(b) 협약 및 그 의정서에서 정의한 인권 존중을 위해 제소사건 본안 심리가 필요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중대한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HUDOC 주제어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35-3-b) – 심리의 계속이 정당화되지 않음(35-3-b) – 국내 심판소에서 정식으로 고려한 사건(35-3-b)

1. 새로운 기준의 배경

378. 2010년 6월 1일 제 14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제 35 조에 규정된 기준에 새로운 심리적격 기준이 추가되었다. 의정서 제 20 조에 따라, 신규 조항은 재판소에 계속 중인 모든 청구사건에 적용되며, 심리적격으로 선언된 사건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66 사건에서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선결적 항변은 그 제소가 제 14 의정서 발효 전인 2006년 심리적격으로 선언되었으므로 기각되었다.

379. 재판소가 맡은 사건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기준은 재판소가 본안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즉, 재판소는 “경미한” 사건을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법은 경미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de minimis non curat praetor)”)에 따라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380. “경미하다(de minimis)”는 개념은 2010년 6월 1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유럽인권협약에 포함되지도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원들(*Eyoum-Priso v. France*, 1997; *H.F. K-F v. Germany*, 1996; *Lechesne v. France*, 1997 사건에서 위원회 보고서 참고), 재판소 판사들(예를 들어,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1981; *O'Halloran and Francis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Micallef v. Malta* [GC], 2009 참조) 및 각국 정부가 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예를 들어 *Koumoutsea and Others v. Greece* (dec.), 2001 참조) 여러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381. 협약 제 15 의정서는 2021년 8월 1일 발효하였고,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를 수정하여 해당 사건이 국내 심판소에서 정식으로 고려되었다는 단서를 삭제하였다. 이 수정안은 “법은 경미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de minimis non curat praetor)”라는 법언의 효과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제 15 의정서 설명보고서, § 23 참조). 이는 의정서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변경 사항은 의정서 발효일에 심리적격 결정이 계류 중인 제소에도 적용된다.

2. 범위

382. 제 35 조제 3 항제(b)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심리부적격 기준 그 자체.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다면 개인의 제소라 해도 심리부적격을 선언할 수 있다. 다음은 보호조치 조항으로, 재판소는 인권 존중을 위해 청구사건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제소의 심리부적격을 선언할 수 없다. 심리부적격 기준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재판소는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 및 제 4 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한다.

383. 제 15 의정서 발효 이전에는 국내 심판소에서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건은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각하될 수 없었다(예를 들어, *Varadinov v. Bulgaria*, 2017, § 25 참조; *Celik v. the Netherlands* (dec.), 2013 비교 및 대조). 협약을 수정하는 제 15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 두 번째 보호조치 조항은 삭제되었다.¹² 제 35 조제 3 항제(b)호의 새로운 표현을 최초 적용한 경우는 *Bartolo v. Malta* (dec.), 2021 참조.

384. *Shefer v. Russia* (dec.),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35 조제 3 항제(b)호의 여러 요소 사이에 공식적인 위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불이익” 문제가 새로운 기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이라면 새로운 기준의 각 요소를 차례로 다루는 위계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Kiril Zlatkov Nikolov v. France*, 2016; *C.P. v. the United Kingdom* (dec.), 2016; *Borg and Vella v. Malta* (dec.), 2015).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소는 이 심리적격 기준의 첫 번째 요소는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적도 있다(*Finger v. Bulgaria*, 2011; *Daniel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2016; *Turturica and Casian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2016; *Varadinov v. Bulgaria*, 2017, § 25).

385. 이 심리적격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재판소의 단독 권한이다. 발효 후 2년간 이 기준의 적용은 소재판부와 대재판부가 맡았다(제 14 의정서 제 20 조제 2 항). 2012년 6월 1일부터 재판소의 모든 사법 기구에서 이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86. 재판소는 직권으로(예를 들어 *Vasyanovich v. Russia* (dec.), 2016; *Ionescu v. Romania* (dec.), 2010; *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49 사건) 또는 정부의 이의 제기에 대한 응답으로(*Gaglione and Others v. Italy*, 2010) 새로운 심리적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재판소는 사건에 따라 다른 심리적격 요건에 앞서 새로운 기준을 살피기도 한다(*Korolev v. Russia* (dec.), 2010; *Rinck v. France* (dec.), 2010; *Gaftoniuc v. Romania* (dec.), 2011; *Burov v. Moldova* (dec.), 2011; *Shefer v. Russia* (dec.), 2012. 또는 다른 기준을 모두 배제한 후에야 새로운 기준으로 넘어가는 사건도 있다(*Ionescu v. Romania* (dec.), 2010; *Holub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387.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기준의 적용은 협약이 보호하는 특정 권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소는 다른 사유로는 심리적격이 될 수 없고 제 3 조의 범위에 속하는(즉, 최소 수준의 심각성 요건을 충족하는) 제 3 조에 따른 진정이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을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Y v. Latvia*, 2014, § 44). 이와 유사하게 재판소는 제 2 조 진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거부하면서 생명권은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2020, §§ 72–73). 제 5 조에 따른 진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지금까지 자유권이 민주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비추어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심리적격 기준의 적용을 거부하였다(*Zelčs v. Latvia*, 2020, § 44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 또한 재판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 9 조) 또는 표현의 자유(제 10 조)에 관한 사건에서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기준의 적용은 이러한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판소가 신중하게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명시하였다(제 9 조에 대해, *Stavropoulos and Others v. Greece*, 2020, §§ 29–30 참조). 제 10 조의 맥락에서 이러한 면밀한 조사는 일반 이익에 관한 논쟁에 기여한 정도, 해당 사건과 언론 또는 그 외 뉴스 미디어와의 관련 여부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Margulev v. Russia*, 2019, §§ 41–42; *Sylka v. Poland* (dec.), 2014, § 28; *Panioglu v. Romania*, 2020, §§ 72–76; *Šeks v. Croatia*, 2022, § 48).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제 11 조)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12. 제 15 의정서 제 5 조: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에서 ‘다만, 국내 심판소에서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건은 이를 이유로 각하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Obote v. Russia*, 2019, § 31; *Yordanovi v. Bulgaria*, 2020, §§ 49–52).

3. 청구인에 대한 의미 있는 불이익 유무

388. 이 기준에 포함된 주요 요소는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이다. “의미 있는 불이익”은 순전히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위반은 국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정도로 최소한의 심각성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형식의 틀을 치워버렸을 때 순전히 절차상의 미미하기만 한 위반이라면 유럽이 감독할 만한 가치가 없다(*Shefer v. Russia* (dec.), 2012). 이러한 최소 수준 심사는 상대적이며 사건의 모든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위반의 심각성은 청구인의 주관적 인식과 특정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Korolev v. Russia* (dec.), 2010).

389. 그러나 청구인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Ladygin v. Russia* (dec.), 2011). 협약 위반은 중요한 원칙 문제와 관련되어 금전적 이익과 관계없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Korolev v. Russia* (dec.), 2010; *Biržietis v. Lithuania*, 2016; *Karelin v. Russia*, 2016). *Giuran v. Romania*, 2011, §§ 17–2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산과 주거에 관한 존중권이라는 원칙의 문제와 관련된 절차로 인해 의미 있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진정의 대상이 된 국내 절차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350 유로 상당의 도난품을 회수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Konstantin Stefanov v. Bulgaria*, 2015, §§ 46–47 사건에서 재판소는 벌금이 청구인의 원칙 문제, 즉 직업 활동을 수행할 때 변호사라는 지위에 대한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390. 또한, 청구인에 대한 사안의 주관적 중요성을 평가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의 행동(예: 특정 기간 법원 절차에서 활동하지 않아 이 경우 절차가 청구인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청구인의 행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Shefer v. Russia* (dec.), 2012). *Giusti v. Italy*, 2011, §§ 22–36 사건에서 재판소는 침해가 의심되는 권리의 성격, 의심되는 침해의 심각성 및/또는 침해로 인해 청구인의 사적인 상황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결과 등 국제 법원의 심리를 정당하게 하는 최소한의 심각성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평가할 때, 재판소는 특히 쟁점이 되는 것 또는 국내 절차의 결과를 심리한다.

a. 의미 있는 재정적 불이익의 부재

391. 다수의 사건에서 도달한 심각성의 수준은 분쟁 중인 사안의 재정적 영향과 청구인에 대한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재정적 영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금전적 손해만을 고려하여 심사되지 않는다. *Kiousi v. Greece* (de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1,000 유로라는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쟁점이 된 사안을 산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비금전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이 소송의 가치를 자신이 추측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92. 미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해 재판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금액이 약 500 유로 이하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논란이 된 금액이 90 유로인 절차에 관한 사건(*Ionescu v. Romania* (dec.), 2010)
- 당국이 청구인에게 1 유로 미만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된 사건(*Korolev v. Russia* (dec.), 2010)
- 당국이 청구인에게 약 12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Vasilchenko v. Russia*, 2010, § 49)

- 150 유로의 교통 범칙금과 벌점 1점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Rinck v. France* (dec.), 2010)
- 25 유로 지급 지연(*Gaftoniuc v. Romania* (dec.), 2011)
- 125 유로 미상환(*Stefănescu v. Romania* (dec.), 2011)
- 국가 당국이 청구인에게 12 유로 미지급(*Fedotov v. Moldova* (dec.), 2011)
- 국가 당국이 청구인에게 총 228 유로(107 유로와 비용 및 경비 121 유로) 미지급(*Burov v. Moldova* (dec.), 2011)
- 범칙금 135 유로, 비용 22 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벌점 1점에 관한 사건(*Fernandez v. France* (dec.), 2012)
- 쟁점이 된 금전적 손해액이 504 유로라고 재판소가 언급한 사건(*Kiousi v. Greece* (dec.), 2011)
- 청구인이 자신의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처음에는 99 유로를 청구하였다가 본안 절차 기간 동안 1,515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고려된 사건(*Havelk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1)
- 합계가 약 200 유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체납한 사건(*Guruyan v. Armenia* (dec.), 2012)
- 227 유로의 비용에 관한 사건(*Šumber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2)
- 34 유로 판결 집행에 관한 사건(*Shefer v. Russia* (dec.), 2012)
-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445 유로의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Bazelyuk v. Ukraine* (dec.), 2012)
- 50 유로의 행정제재금에 관한 사건(*Boelens and Others. v. Belgium* (dec.), 2012)
- 98~137 유로의 보수와 미지급 이자를 청구한 경우(*Hudecová and Others v. Slovakia* (dec.), 2012)
- 29~62 유로 사이의 비교적 적은 금액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Shtefan and Others v. Ukraine*, 2014; *Shchukin and Others v. Ukraine* [위원회], 2014)
- 행정제재금이 35 유로 및 31 유로인 사건(*Şimşek, Andıç and Boğatekin v. Turkey* (dec.), 2020, §§ 26–29)
- 전체 명목 가치가 2 루블, 즉 0.50 유로 미만인 청구인의 회사 주식이 4년 반 이상 압류(*Sebeleva and Others v. Russia*, 2022, §§ 42–43)

393. *Havelk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1,515 유로의 배상금이 엄밀히 말하면 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르는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당한 배상과 비교하여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을 초래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394. *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현장의 비상 작전 참여자로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추가 수당이 지급되었다. 국가 당국이 법정 시한 내에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뒤늦게 상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판결은 나중에 취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제 1 의정서 제 6 조 및 제 1 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였다.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1 심 결정은 집행되기도 전에 무효가 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청구인들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47–48). 그러나 1 심판결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한 청구인들의 제소는 이 기준에 따라 심리부적격으로 보았다. 재판소는 이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협약은 특정 금액의 연금 또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문제가 된 금액은 청구인들의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는 점, 수당과 급부에 대한 권리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만 수정된 점,

청구인들이 그동안 기존 판결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늦게 상소하여 지연된 것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0–52).

395.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금전적 손실의 영향을 추상적인 용어로 측정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태와 거주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금전적 손해가 소액이라도 중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금전적 손실의 영향을 살펴본다. *Fernandez v. France* (dec.),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이 마르세유 행정상소법원 판사라는 사실은 재판소가 135 유로의 벌금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였다.

b. 의미 있는 재정적 불이익

396. 반대로 재판소가 보기에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재정적 불이익이 있었다면 해당 기준은 각하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의 사례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 절차에 걸린 기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집행이 9 개월~49 개월 지연되었음을 발견하였고, 관련 금액이 200 유로~13,749.99 유로에 이르는 사건(*Gaglione and Others v. Italy*, 2010)
- 수용(收用)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연과 수만 유로에 이르는 금액에 관한 사건(*Sancho Cruz and other "Agrarian Reform" cases v. Portugal*, 2011, §§ 32–35)
- 청구 금액이 약 1,800 유로인 고용권 분쟁에 관한 사건(*Živić v. Serbia*, 2011)
- 청구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상황에서 15년 5개월의 민사 절차 기간과 구제절차 부재에 관한 사건(*Giusti v. Italy*, 2011, §§ 22–36)
- 민사 절차에 걸린 기간에 관한 사건에서 문제의 금액이 크지 않은 장애 수당에 관한 사건(*De Ieso v. Italy*, 2012)
- 청구인이 납부할 법원 비용이 월 소득의 20%를 초과했던 사건(*Piętka v. Poland*, 2012, §§ 33–41)
- 청구인들이 반복적인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안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해야 할 월별 최고 금액이 30 유로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납부 요건이 운용되는 전체적인 맥락과 피청구국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전체 금액이 미미하다고 할 수 없던 사건(*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0, §§ 47–49).

c. 의미 있는 비재정적 불이익의 부재

397. 그러나 재판소는 중대한 불이익 부재 기준을 적용할 때 재정상의 합계가 미미한 사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국가 수준에서 사건의 실제 결과는 재정 이외의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olub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Bratří Zátkové, A.S., v. the Czech Republic* (dec.), 2001; *Matoušek v. the Czech Republic* (dec.), 2011; *Čavajd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1 및 *Hanzl and Špadrn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타방의 비공개 의견서에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사건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렸다. *Liga Portuguesa de Futebol Profissional v. Portugal* (dec.),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Holub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사건에서 제시된 논리와 동일한 논리를 따랐다. 문제가 된 손해는 청구인에게 검찰의 의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지 회사가 납부해야 할 1,900 만 유로의 금액이 아니었다. 재판소는 청구사가 문제가 된 의견서 미송달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98. 마찬가지로, *Janč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11 사건에서 1 심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에 청구가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벽체 철거 및 벽돌 제거 의무가 청구인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Savu v. Romania* (dec.), 2011 사건은 청구인이 직접 총액을 청구하지 않은 또 다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인증서 발급 의무 등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 판결의 미집행에 청구를 제기하였다.

399. *Gagliano Giorgi v. Italy*,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걸린 기간에 관한 청구를 다루었다. 절차에 걸린 기간 때문에 청구인의 형량이 줄어든 사실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이러한 감형이 청구인에게 배상으로 작용하였다거나 특히 길어진 절차로 인해 청구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줄어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재판소는 의미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Galović v. Croatia* (dec.),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6년 2개월 동안 자신의 부동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 걸린 과도한 기간이 실제로는 이익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두 건의 네덜란드 사건(*Celik v. the Netherlands* (dec.), 2013 및 *Van der Putten v. the Netherlands* (dec.), 2013)도 형사 절차에 걸린 기간과 실효적인 구제절차의 부재에 대해 다루었다. 청구인들의 진정은 오로지 상소법원이 사건 파일 완성에 소요한 시간으로 인해 대법원 절차에 걸린 기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청구인들은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법리에 관한 상소를 제기하였다. 상소법원의 판결 또는 이전 형사 절차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청구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재판소는 두 사건 모두에서 청구인들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은 없었다고 보았다.

400. *Kiril Zlatkov Nikolov v. France*,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 소송의 맥락에서 청구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더 나아가 청구인의 사적인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어떤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차별이 “의미 있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401. *Zwinkels v. the Netherlands* (dec.), 2012 사건에서 제 8 조에 따른 주거권 침해는 근로감독관의 차고 무단출입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거권 또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하였다. 마찬가지로 *Borg and Vella v. Malta* (dec.), 2015, § 41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상대적으로 작은 토지가 일정 기간 수용(收用)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402. *C.P. v. the United Kingdom* (dec.), 2016 사건에서 청구인은 3 개월 정학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대부분의 경우 3 개월의 정학은 아동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 사안의 경우 청구인이 겪은 지속적인 “불이익”的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겪은 모든 손해는 추측에 불과하다.

403. *Vasyanovich v. Russia* (dec.),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맥주 토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청구는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청구인의 주장에서 나머지와 그에 대한 상소는 내기에서 잊은 돈과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청구와 관련되며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였다. *Grozdanić and Gršković-Grozdanić v. Croatia*, 2021, §§ 127–13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협약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법정 접근권 진정은 (본안에서) 성공 가능성이 없는 법리에 대한 상소의 심리 거부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404. *Sylka v. Poland* (dec.), 2014, § 3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경찰관 사이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언어적 충돌에 관한 것으로 제 10 조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더 큰 함의나 공공의 관심을 동반하지 않는 사건이었다(*Eon v. France*, 2013 사건과 반대).

d. 의미 있는 비재정적 불이익

405. 재판소가 새로운 기준을 거부한 사건을 살펴보면, *3A.CZ s.r.o. v. the Czech Republic*, 2011, § 34 사건에서 재판소는 비공개 의견서에 청구 회사가 알지 못했던 일부 새로운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판례에서 *Holub v. the Czech Republic* (dec.), 2010 사건을 분리한 재판소는 회사에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었다. *BENet Praha, spol. s r.o., v. the Czech Republic*, 2011, § 135 및 *Joos v. Switzerland*, 2012, § 20 사건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사용되었다.

406. *Luchaninova v. Ukraine*, 2011, §§ 46–5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절차의 결과가 청구인의 직업 생활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특히, 청구인의 유죄판결은 해고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있었다. *Diacenco v. Romania*, 2012, § 46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원칙의 문제는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였다.

407. 제 6 조 관련 또 다른 사례는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구두 심리의 부재에 관한 *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28–30 and 40–41 사건이다. 정부는 구두 심리가 새로운 또는 다른 사실관계의 확립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들이 의회 방청석에서 퇴장당한 것과 관련된 유관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다 없이 합의되었고,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 증거에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정부의 이의가 진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본안 단계에서 이를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사건이 제 1 심이자 유일한 법원의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에서만 심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회 방청석에서 퇴장당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사실관계는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쟁점은 절차상의 문제도 아니고 순전히 법적인 문제도 아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구두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는 정부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408. *Schmidt v. Latvia*, 2017, §§ 72–75 사건에서 청구인은 라트비아에서 함께 살던 남편과 별거하고 부부가 이전에 살던 독일로 이사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은 라트비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은 이혼법원에 청구인의 현주소를 모른다고 알렸다. 부부의 라트비아 주소로 청구인에게 이혼 서류를 송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혼 법원은 라트비아 관보에 두 차례 공고를 게재하였다.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 청구인은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혼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남편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한 곳에 가서야 자신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고 남편이 재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혼 절차가 제 6 조를 위반했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의 중요성과 이것이 사생활 및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목하면서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409.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제 5 조 사건에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기준을 적용한 적은 아직 없다. *Čamans and Timofejeva v. Latvia*, 2016, §§ 80–81 사건에서 정부는 청구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 지속된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제 6 조와 관련하여 사적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Hebat Aslan and Firas Aslan v. Turkey*, 2014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상소의 쟁점과 결과는 구금의 적법성 및 특히 구금이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구금 종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자유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상소 심리에 관한 절차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면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었다.

410. *Van Velden v. the Netherlands*, 2011, §§ 33–39 사건에서 청구인은 협약 제 5 조제 4 항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였다. 정부는 재판 전 구금 기간 전체가 징역형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최종 유죄판결 및 최종 형의 선고 전에 구금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형사 절차의 특징인 체약 당사국이 다수이며, 재판 전 구금으로 인한 피해가 결과적으로 협약의 목적상 미미하다는 것이 재판소의 일반적인 판결이라면 제 5 조에 따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진정사항의 상당 부분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해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 기준에 따라 정부가 제기한 이의는 각하되었다. 현재 기준에 따른 정부의 이의 제기가 각하된 또 다른 제 5 조 사건은 *Bannikov v. Latvia*, 2013, §§ 54–60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재판 전 구금 기간은 1년 11개월 18일이었다.

411.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따른 진정사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불이익 부재를 기준으로 정부의 이의가 각하되었다. *Biržietis v. Lithuania*, 2016, §§ 34–37 사건에서 교도소 내부 규정은 청구인이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 금지 규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이 수감자가 원하는 외모를 사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관한 사안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분명 원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택 수색에 관한 *Brazzi v. Italy*, 2018, §§ 24–2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해당 문제의 주관적 중요성과(자신의 소유물과 주거를 평화롭게 누릴 권리) 객관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 즉 수색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른 실효적인 사법 감독의 존재를 고려하였다. 제철소의 대기 오염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부족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에 관한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35–13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청구의 성격과(제 8 조) 제철소 배출량이 환경 및 해당 지역 거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을 알리는 과학적 연구의 존재를 고려하였다. *Vartic v. Romania (no. 2)*, 2013, §§ 37–41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정 당국이 자신의 불교적 신념에 따르기 위한 채식 식단 제공을 거부하여 제 9 조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표명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이 진정의 쟁점이 중요한 원칙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결론지었다(또한 자신의 신념을 표명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자녀가 세례를 받지 않도록 한 부모의 선택이 표시된 출생증명서에 관한 *Stavropoulos and Others v. Greece*, 2020, §§ 29–30 참조). 국가 원수 모욕죄를 계속 형사 범죄로 분류할지가 쟁점이 된 *Eon v. France*, 2013, § 34 사건에서는 제 10 조에 따른 청구가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정부의 이의를 각하하고 이 사안이 청구인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Jankovskis v. Lithuania*, 2017, §§ 59–63 사건은 수감자의 정보 수신권에 관한 또 다른 제 10 조 사건이다. 청구인은 학습 및 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 이러한 정보는 청구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재활 및 이후 사회 복귀와도 관련이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간섭이 청구인에게 미친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정부의 이의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자신의 과학 논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일부 문서의 기밀 해제에 대한 국가 당국의 거부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Šeks v. Croatia*, 2022, § 49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참고 문헌이 없더라도 문제가 된 책이 결국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Panioglu v. Romania*, 2020, §§ 75–76 사건에서 재판소는 또한 정부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제 10 조 위반 혐의(파기원장의 도덕적, 직업적 청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게시한 판사에 대한 행동 강령 절차)가 청구인의 경력 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 제도의 개혁과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원칙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erladir and Others v. Russia*, 2012, § 34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따른 청구는 분명 원칙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를 참조하여 이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Akarsubaşı and Alçıçek v. Turkey*, 2018, §§ 16–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전국 총파업의 날 중등학교 앞 담장에 “직장 파업 중”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협의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들은 협약 제 11 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정부의 이의를 각하하였다. 재판소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벌금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로 다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반 혐의가 청구인들의 권리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거하여 (인권 운동가 관련) *Öğrү and Others v. Turkey*, 2017, §§ 53–54 사건에서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에 따라 정부가 제기한 이의를 각하하였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Yordanovi v. Bulgaria*, 2020, §§ 49–52(정당 설립 시도에 대한 형사 절차 관련) 참조.

412.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정부의 이의제기를 각하한 두 가지 사례는 *Siemaszko and Olszyński v. Poland*, 2016 사건 및 *Statileo v. Croatia*, 2014 사건이다. 첫 번째는 구금자들이 석방되면 인계할 저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을 이자율이 너무 낮아 적립금 가치가 감소한 저축 계좌에 넣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크로아티아의 주택 입법에 관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시장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4. 보호조치 조항: 인권 존중을 위해 본안에 대한 사건 심리의 필요성 여부

413. 재판소는 제시된 접근 방식에 따라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결정한 후, 제 35 조제 3 항제(b)호에 포함된 보호조치 조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한 진정을 살펴볼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414. 두 번째 요소는 협약 또는 그 의정서에 정의된 인권 존중을 위해 본안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면 제소가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호조치 조항(제 14 의정서에 관한 설명 보고서, § 81 참조)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의 질문은 예를 들어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피청구국이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된다(*Savelyev v. Russia* (dec.), 2019, § 33).

이 요소의 문구는 협약 제 37 조제 1 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는 재판소의 사건 목록에서 제소를 종료하는 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 39 조제 1 항에도 당사자 간 우호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로 동일한 문구가 사용된다.

415. 협약 기구는 당사자 간 해결되거나 또는 목록에서 사건을 제외할 그 외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b)호에 따른 진정 각하 기준에 맞더라도 인권 존중을 위해 본안에 관한 사건 심리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Maravić Markeš v. Croatia*, 2014, §§ 50–55). *Daniel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2016, § 2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진정사항으로 제기한 제 5 조의 원칙에 관한 새로운 사안은 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있었는지 판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416. 분명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권 존중을 위해 (불합리한 민사 소송 기간과 실효적 구제절차의 부재라는 잠재적인 제도적 문제와 관련된) 본안에 대한 사건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의미 있는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Finger v. Bulgaria*, 2011, §§ 67–77 사건에서 선택되었다.

417. *Živić v. Serbia*, 2011, §§ 36–42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의미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은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이해라는 사안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베오그라드 지방법원의 공정 임금 및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권리, 즉 특정 범주의 경찰관에게 동일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판례법 때문이었다.

418. 이와 유사하게 *Nicoleta Gheorghe v. Romania*,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쟁점이 된 금전 보상액이 미미(17 유로)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원칙적 판단이 국내 관할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거부하였다(이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무죄 추정 및 무기 평등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국내법 변경 후 첫 판결이었음). *Juhas Đurić v. Serbia* (보정), 2012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전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재판소는 제소된 사안이 형사 사법 제도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소하다거나 결과적으로 본안 심리를 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새로운 심리적격 기준에 대한 정부의 이의 제기는 인권 존중을 위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1 만 2,000 가구가 청구인들과 같은 처지) 재판소에 계속 종인 유사한 사건이 120 건 이상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49).

419. 제 14 의정서 **설명보고서** 제 39 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심리적격 요건을 적용하여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하여도 협약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영향을 주는 심각한 의문 또는 국내법 관련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사건을 거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Maravić Markeš v. Croatia*, 2014, § 51).

420. 재판소는 예를 들어 이미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고 그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 유사한 문제가 해결된 경우와 같이 인권 존중을 위해 제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Léger v. France* (종료) [GC], 2009, § 51; *Rinck v. France* (dec.), 2010; *Fedotova v. Russia*, 2006). 또한 관련 법률이 이미 폐지되어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은 역사적 관심사에 불과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Ionescu v. Romania* (dec.), 2010). 유사하게, 러시아 연방(*Vasilchenko v. Russia*, 2010) 또는 루마니아(*Gaftoniuc v. Romania* (dec.), 2011; *Savu v. Romania* (dec.), 2011) 또는 실제로는 몰도바 공화국(*Burov v. Moldova* (dec.), 2011) 또는 아르메니아(*Guruyan v. Armenia* (dec.), 2012)에서 국내 판결의 미집행 등 재판소와 각료위원회가 사안을 제도적인 문제로 다룰 경우라면 재판소는 인권 존중을 위해 제소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리스(*Kiousi v. Greece* (dec.), 2011) 또는 체코(*Havelka v. the Czech Republic* (dec.), 2011)에서 절차에 걸린 기간에 관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재판소는 이전 판결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판결의 공개 발표(*Janč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11) 또는 타방이 제출한 의견서 또는 증거를 알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Bazelyuk v. Ukraine* (dec.), 2012)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 44 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적인 것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 4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 43 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뒤 이은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 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 3 자가 작성한 100 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A—

3A.CZ s.r.o. v. the Czech Republic, no. 21835/06, 10 February 2011

A, B and C v. Ireland [GC], no. 25579/05, ECHR 2010

A and B v. Croatia, no. 7144/15, 20 June 2019

A. and B. v. Georgia, no. 73975/16, 10 February 2022

A. v. the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A.M. v. France, no. 12148/18, 29 April 2019

A.M. and Others v. Poland (dec.), nos. 4188/21, 16 May 2023

A.N.H. v. Finland (dec.), no. 70773/11, 12 February 2013

Abdulkhakov v. Russia, no. 14743/11, 2 October 2012

Abdulrahman v. the Netherlands (dec.), no. 66994/12, 5 February 2013

Abramyan and Others v. Russia (dec.), nos. 38951/13 and 59611/13, 12 May 2015

Açış v. Turkey, no. 7050/05, 1 February 2011

Adam and Others v. Germany (dec.), no. 290/03, 1 September 2005

Ādamsons v. Latvia, no. 3669/03, 24 June 2008

Aden Ahmed v. Malta, no. 55352/12, 23 July 2013

Adesina v. France, no. 31398/96, Commission decision of 13 September 1996

Agbovi v. Germany (dec.), no. 71759/01, 25 September 2006

Ahmet Sadik v. Greece, 15 November 1996, Reports 1996–V

Ahmet Tunç and Others v. Turkey (dec.), nos. 4133/16 and 31542/16, 29 January 2019

Ahtinen v. Finland (dec.), no. 48907/99, 31 May 2005

Ahunbay and Others v. Turkey (dec.), no. 6080/06, 29 January 2019

Aizpurua Ortiz and Others v. Spain, no. 42430/05, 2 February 2010

Akarsubaşı and Alçıçek v. Turkey, no. 19620/12, 23 January 2018

Akbay and Others v. Germany, nos. 40495/15 and 2 others, 15 October 2020

Akdivar and Others v. Turkey, 16 September 1996, Reports 1996–IV

Akif Hasanov v. Azerbaijan, no. 7268/10, 19 September 2019

Aksoy v. Turkey, 18 December 1996, Reports 1996–VI

Aksu v. Turkey [GC], nos. 4149/04 and 41029/04, ECHR 2012

Al Husin v. Bosnia and Herzegovina (no. 2), no. 10112/16, 25 June 2019

Al Nashiri v. Poland, no. 28761/11, 24 July 2014

Al Nashiri v. Romania, no. 33234/12, 31 May 2018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no. 5809/08, 21 June 2016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GC], no. 27021/08, ECHR 2011

Al-Moayad v. Germany (dec.), no. 35865/03, 20 February 2007

Al-Nashif v. Bulgaria, no. 50963/99, 20 June 2002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no. 61498/08, ECHR 2010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55721/07, ECHR 2011

Albayrak v. Turkey, no. 38406/97, 31 January 2008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no. 5294/14, 7 July 2020

Aleksanyan v. Russia, no. 46468/06, 22 December 2008

Alekseyev and Others v. Russia, nos. 14988/09 and 50 others, 27 November 2018

Aliev v. Georgia, no. 522/04, 13 January 2009

Aliyeva and Aliyev v. Azerbaijan, no. 35587/08, 31 July 2014

Alla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8539/99, 28 August 2001

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nos. 29813/96 and 30229/96, ECHR 2000–I

Amarandei and Others v. Romania, no. 1443/10, 26 April 2016

An and Others v. Cyprus, no. 18270/91, Commission decision of 8 October 1991

Anchugov and Gladkov v. Russia, nos. 11157/04 and 15162/05, 4 July 2013

Andrášik and Others v. Slovakia (dec.), nos. 57984/00 and 6 others, ECHR 2002–IX

Andreasen v. the United Kingdom and 26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no. 28827/11, 31 March 2015

Andronicou and Constantinou v. Cyprus, 9 October 1997, Reports 1997–VI

Ankarcrona v. Sweden (dec.), no. 35178/97, ECHR 2000–VI

Apinis v. Latvia (dec.), no. 46549/06, 20 September 2011

Aquilina v. Malta [GC], no. 25642/94, ECHR 1999–III

Arat v. Turkey, no. 10309/03, 10 November 2009

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24 October 1995, Series A no. 330–A

Arlewin v. Sweden, no. 22302/10, 1 March 2016

Armonienė v. Lithuania, no. 36919/02, 25 November 2008

Aspiotis v. Greece (dec.), no. 4561/17, 1 March 2022

Assanidze v. Georgia [GC], no. 71503/01, ECHR 2004–II

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Romania – Helsinki Committee on behalf of Ionel Garcea v. Romania, no. 2959/11, 24 March 2015

Association Innocence en Danger and Association Enfance et Partage v. France, nos. 15343/15 and 16806/15, 4 June 2020
Association Les témoins de Jéhovah v. France (dec.), no. 8916/05, 21 September 2010
Ataykaya v. Turkey, no. 50275/08, 22 July 2014
Aydarov and Others v. Bulgaria (dec.), nos. 33586/15, 2 October 2018
Ayuntamiento de Mula v. Spain (dec.), no. 55346/00, ECHR 2001-I
Azemi v. Serbia (dec.), no. 11209/09, 5 November 2013
Azinis v. Cyprus [GC], no. 56679/00, ECHR 2004-III

—B—

Bagdonavicius and Others v. Russia, no. 19841/06, 11 October 2016
Bagheri and Maliki v. the Netherlands (dec.), no. 30164/06, 15 May 2007
Baillard v. France (dec.), no. 6032/04, 25 September 2008
Bakanova v. Lithuania, no. 11167/12, 31 May 2016
Balan v. Moldova (dec.), no. 44746/08, 24 January 2012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no. 52207/99, ECHR 2001-XII
Bannikov v. Latvia, no. 19279/03, 11 June 2013
Barberà, Messegué and Jabardo v. Spain, 6 December 1988, Series A no. 146
Bartolo v. Malta (dec.), no. 40761/19, 7 September 2021
Baumann v. France, no. 33592/96, ECHR 2001-V
Bazelyuk v. Ukraine (dec.), no. 49275/08, 27 March 2012
Bazorkina v. Russia, no. 69481/01, 27 July 2006
Beer and Regan v. Germany [GC], no. 28934/95, 18 February 1999
Beganović v. Croatia, no. 46423/06, 25 June 2009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dec.) [GC], nos. 71412/01 and 78166/01, 2 May 2007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no. 41288/15, 14 January 2020
Bekauri v. Georgia (preliminary objections), no. 14102/02, 10 April 2012
Bekirski v. Bulgaria, no. 71420/01, 2 September 2010
Belevitskiy c. Russia, no. 72967/01, 1 March 2007.
Belilos v. Switzerland, 29 April 1988, Series A no. 132
Belli and Arquier-Martinez v. Switzerland, no. 65550/13, 11 December 2018
Belošević v. Croatia (dec.), no. 57242/13, 3 December 2019
Belozorov v. Russia and Ukraine, no. 43611/02, 15 October 2015
Ben Salah Adraqui and Dhaime v. Spain (dec.), no. 45023/98, ECHR 2000-IV
Benavent Díaz v. Spain (dec.), no. 46479/10, 31 January 2017
Bencheref v. Sweden (dec.), no. 9602/15, 5 December 2017
BENet Praha, spol. s r.o.,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8354/06, 28 September 2010
BENet Praha, spol. s r.o., v. the Czech Republic, no. 33908/04, 24 February 2011
Berdzenishvili v. Russia (dec.), no. 31697/03, ECHR 2004-II
Ber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nos. 36357/04 and 25 others, 16 October 2007
Berladir and Others v. Russia, no. 34202/06, 10 July 2012
Bernardet v. France, no. 31406/96, Commission decision of 27 November 1996

- Bestry v. Poland*, no. 57675/10, 3 November 2015
Beygo v. 46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no. 36099/06, 16 June 2009
Biç and Others v. Turkey (dec.), no. 55955/00, 2 February 2006
Bijelić v. Montenegro and Serbia, no. 11890/05, 28 April 2009
Biržietis v. Lithuania, no. 49304/09, 14 June 2016
Bivolaru v. Romania, no. 28796/04, 28 February 2017
Bivolaru v. Romania (no. 2), no. 66580/12, 2 October 2018
Blagojević v. the Netherlands (dec.), no. 49032/07, 9 June 2009
Blečić v. Croatia [GC], no. 59532/00, ECHR 2006–III
Blokhin v. Russia [GC], no. 47152/06, 23 March 2016
“Blondje” v. the Netherlands (dec.), no. 7245/09, ECHR 2009
Blyudik v. Russia, no. 46401/08, 25 June 2019
Boacă and Others v. Romania, no. 40355/11, 12 January 2016
Bochan v. Ukraine (no. 2) [GC], no. 22251/08, ECHR 2015
Bock v. Germany (dec.), no. 22051/07, 19 January 2010
Boelens and Others v. Belgium (dec.), no. 20007/09, 11 September 2012
Boicenco v. Moldova, no. 41088/05, 11 July 2006
Boivin v. 34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no. 73250/01, ECHR 2008
Borg and Vella v. Malta (dec.), no. 14501/12, 3 February 2015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ECHR 2005–VI
Bottaro v. Italy (dec.), no. 56298/00, 23 May 2002
Bouglame v. Belgium (dec.), no. 16147/08, 2 March 2010
Bouhamla v. France (dec.), no. 31798/16, 25 June 2019
Božin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68368/01, 1 February 2005
Bratří Zátkové, A.S., v. the Czech Republic (dec.), no. 20862/06, 8 February 2011
Brazzi v. Italy, no. 57278/11, 27 September 2018
Brežec v. Croatia, no. 7177/10, 18 July 2013
Brincat and Others v. Malta, nos. 60908/11 and 4 others, 24 July 2014
Broca and Texier-Micault v. France, nos. 27928/02 and 31694/02, 21 October 2003
Broniowski v. Poland (dec.) [GC], no. 31443/96, ECHR 2002–X
Brudnicka and Others v. Poland, no. 54723/00, ECHR 2005–II
Brumărescu v. Romania [GC], no. 28342/95, ECHR 1999–VII
Brusco v. Italy (dec.), no. 69789/01, ECHR 2001–IX
Bryan and Others v. Russia, no. 22515/14, 27 June 2023
Bui Van Thanh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16137/90, Commission decision of 12 March 1990, DR 65
Buldakov v. Russia, no. 23294/05, 19 July 2011
Bulgarian Helsinki Committee v. Bulgaria (dec.), nos. 35653/12 and 66172/12, 28 June 2016
Bulinwar OOD and Hrusanov v. Bulgaria, no. 66455/01, 12 April 2007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no. 13378/05, ECHR 2008
Burdov v. Russia, no. 59498/00, ECHR 2002–III
Burdov v. Russia (no. 2), no. 33509/04, ECHR 2009
Burlya and Others v. Ukraine, no. 3289/10, 6 November 2018

Burov v. Moldova (dec.), no. 38875/03, 14 June 2011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no. 25680/05, 19 June 2018

Buzadji v. the Republic of Moldova [GC], no. 23755/07, 5 July 2016

—C—

C.N. v. Luxembourg, no. 59649/18, 12 October 2021

C.P.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00/11, 6 September 2016

Çakıcı v. Turkey [GC], no. 23657/94, ECHR 1999–IV

Çakır and Others v. Cyprus (dec.), no. 7864/06, 29 April 2010

Călin and Others v. Romania, nos. 25057/11 and 2 others, 19 July 2016

Calvi and C.G. v. Italy, no. 46412/21, 6 July 2023

Čamans and Timofejeva v. Latvia, no. 42906/12, 28 April 2016

Cankoçak v. Turkey, nos. 25182/94 and 26956/95, 20 February 2001

Cantoni v. France, 15 November 1996, Reports 1996–V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42184/05, ECHR 2010

Castells v. Spain, 23 April 1992, Series A no. 236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s. 43370/04 and 2 others, ECHR 2012

Čavajd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17696/07, 29 March 2011

Çelik v. the Netherlands (dec.), no. 12810/13, 27 August 2013

Çelik v. Turkey (dec.), no. 52991/99, ECHR 2004–X

Celniku v. Greece, no. 21449/04, 5 July 2007

Centre for Legal Resources on behalf of Valentin Câmpeanu v. Romania [GC], no. 47848/08, ECHR 2014

Centre of Societies for Krishna Consciousness in Russia and Frolov v. Russia, no. 37477/11, 23 November 2021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no. 38433/09, ECHR 2012

Červenka v. the Czech Republic, no. 62507/12, 13 October 2016

Cestaro v. Italy, no. 6884/11, 7 April 2015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5622/04, 11 December 2012

Chaldayev v. Russia, no. 33172/16, 28 May 2019

Chapman v. Belgium (dec.), no. 39619/06, 5 March 2013

Chappex v. Switzerland, no. 20338/92, Commission decision of 12 October 1994

Charzyński v. Poland (dec.), no. 15212/03, ECHR 2005–V

Chennouf and Others v. France (dec.), no. 4704/19, 20 June 2023

Chernenko and Others v. Russia (dec.), nos. 4246/14 and 4 others, 24 January 2019

Chernitsyn v. Russia, no. 5964/02, 6 April 2006

Chevrol v. France, no. 49636/99, ECHR 2003–III

Chiarello v. Germany, no. 497/17, 20 June 2019

Chief Rabbinate of the Jewish Community of Izmir v. Türkiye, no. 1574/12, 21 March 2023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dec.) [GC], no. 13216/05, 14 December 2011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no. 13216/05, ECHR 2015

Chong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9753/16, 11 September 2018

Church of X. v. the United Kingdom, no. 3798/68, Commission decision of 17 December 1968, Collection 29

Çınar v. Turkey (dec.), no. 28602/95, 13 November 2003

Ciupercescu v. Romania, no. 35555/03, 15 June 2010
Cocchiarella v. Italy [GC], no. 64886/01, ECHR 2006–V
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nos. 50124/07 and 7 others, 12 December 2017
Colibaba v. Moldova, no. 29089/06, 23 October 2007
Collins and Akaziebie v. Sweden (dec.), no. 23944/05, 8 March 2007
Communauté genevoise d'action syndicale (CGAS) v. Switzerland, no. 21881/20, 15 March 2022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v. the European Communities, no. 8030/77, Commission decision of 10 July 1978, DR 13
Connolly v.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no. 73274/01, 9 December 2008
Constantinescu v. Romania, no. 28871/95, ECHR 2000–VIII
Coöperatieve Producentenorganisatie van de Nederlandse Kokkelvisserij U.A. v. the Netherlands (dec.), no. 13645/05, ECHR 2009
Cordella and Others v. Italy, nos. 54414/13 and 54264/15, 24 January 2019
Cotlet v. Romania, no. 38565/97, 3 June 2003
Croatian Golf Federation v. Croatia, no. 66994/14, 17 December 2020
Croatian Radio–Television v. Croatia, nos. 52132/19 and 19 others, 2 March 2023
Cudak v. Lithuania [GC], no. 15869/02, ECHR 2010
Cvetković v. Serbia, no. 17271/04, 10 June 2008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D—

D.B. v. Turkey, no. 33526/08, 13 July 2010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GC], no. 57325/00, ECHR 2007–IV
D.J. and A.-K.R. v. Romania (dec.), no. 34175/05, 20 October 2009
Dalban v. Romania [GC], no. 28114/95, ECHR 1999–VI
Dalia v. France, 19 February 1998, Reports 1998–I
Daniel Faulkner v. the United Kingdom, no. 68909/13, 6 October 2016
De Becker v. Belgium, no. 214/56, Commission decision of 9 June 1958
De Ieso v. Italy, no. 34383/02, 24 April 2012
De Pace v. Italy, no. 22728/03, 17 July 2008
De Saedeleer v. Belgium, no. 27535/04, 24 July 2007
De Tommaso v. Italy [GC], no. 43395/09, 23 February 2017
De Wilde, Ooms and Versyp v. Belgium, 18 June 1971, Series A no. 12
Delecolle v. France, no. 37646/13, 25 October 2018
Demir and Baykara v. Turkey [GC], no. 34503/97, ECHR 2008
Demirbaş and Others v. Turkey (dec.), nos. 1093/08 and 18 others, 9 November 201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dec.), no. 16554/19, 6 October 2020
Demopoulos and Others v. Turkey (dec.) [GC], nos. 46113/99 and 7 others, ECHR 2010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25 September 2018
Denni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76573/01, 2 July 2002
Depauw v. Belgium (dec.), no. 2115/04, 15 May 2007
Di Salvo v. Italy (dec.), no. 16098/05, 11 January 2007
Di Sante v. Italy (dec.), no. 56079/00, 24 June 2004
Diacenco v. Romania, no. 124/04, 7 February 2012

- Dimitar Yanakiev v. Bulgaria (no. 2)*, no. 50346/07, 31 March 2016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dec.), nos. 59573/09 and 65211/09, 4 July 2017
Dimitrescu v. Romania, nos. 5629/03 and 3028/04, 3 June 2008
Dimo Dimov and Others v. Bulgaria, no. 30044/10, 7 July 2020
Dinchev v. Bulgaria (dec.), no. 17220/09, 21 November 2017
Dink v. Turkey, nos. 2668/07 and 4 others, 14 September 2010
Dîrjan and Ștefan v. Romania (dec.), nos. 14224/15 and 50977/15, 15 April 2020
Djokaba Lambi Longa v. the Netherlands (dec.), no. 33917/12, ECHR 2012
Doğan and Çakmak v. Turkey (dec.), nos. 28484/10 and 58223/10, 14 May 2019
Döner and Others v. Turkey, no. 29994/02, 7 March 2017
Dos Santos Calado and Others v. Portugal, nos. 55997/14 and 3 others, 31 March 2020
Döşemealtı Belediyesi v. Turkey (dec.), no. 50108/06, 23 March 2010
Doshuyeva and Yusupov v. Russia (dec.), no. 58055/10, 31 May 2016
Drijfhout v. the Netherlands (dec.), no. 51721/09, 22 February 2011
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26 June 1992, Series A no. 240
Društvo za varstvo upnikov v. Slovenia (dec.), no. 66433/13, 21 November 2017
Dubovtsev and Others v. Ukraine, nos. 21429/14 and 9 others, 21 January 2021
Dubská and Krejzová v. the Czech Republic [GC], nos. 28859/11 and 28473/12, 15 November 2016
Dudgeon v. the United Kingdom, 22 October 1981, Series A no. 45
Dukmedjian v. France, no. 60495/00, 31 January 2006
Dumpe v. Latvia (dec.), no. 71506/13, 16 October 2018
Duringer and Others v. France (dec.), nos. 61164/00 and 18589/02, ECHR 2003-II
Durini v. Italy, no. 19217/91, Commission decision of 12 January 1994, DR 76
Dvořáček and Dvořáčková v. Slovakia, no. 30754/04, 28 July 2009
Dzidzava v. Russia, no. 16363/07, 20 December 2016

—E—

- E.M. and Others v. Norway*, no. 53471/17, 20 January 2022
Eberhard and M. v. Slovenia, nos. 8673/05 and 9733/05, 1 December 2009
Eğitim ve Bilim Emekçileri Sendikası v. Turkey, no. 20641/05, ECHR 2012
Egmez v. Cyprus (dec.), no. 12214/07, 18 September 2012
Egmez v. Cyprus, no. 30873/96, ECHR 2000-XII
Ekimdzhiev and Others v. Bulgaria, no. 70078/12, 11 January 2022
El Majjaoui and Stichting Touba Moskee v. the Netherlands (striking out) [GC], no. 25525/03, 20 December 2007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39630/09, ECHR 2012
Enukidze and Girgviani v. Georgia, no. 25091/07, 26 April 2011
Eon v. France, no. 26118/10, 14 March 2013
Epözdemir v. Turkey (dec.), no. 57039/00, 31 January 2002
Er and Others v. Turkey, no. 23016/04, 31 July 2012
Ergezen v. Turkey, no. 73359/10, 8 April 2014
Eskekhanov and Others v. Russia, nos. 18496/16 and 2 others, 25 July 2017
Euromak Metal Doo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68039/14, 14 June 2018

Eyoun-Priso v. France, no. 24352/94, Commission report of 9 April 1997

—F—

Fábián v. Hungary [GC], no. 78117/13, 5 September 2017

Fabris and Parziale v. Italy, no. 41603/13, 19 March 2020

Fairfiel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4790/04, ECHR 2005–VI

Fakhretdinov and Others v. Russia (dec.), nos. 26716/09 and 2 others, 23 September 2010

Farcaş v. Romania (dec.), no. 32596/04, 14 September 2010

Fédération chrétienne des témoins de Jéhovah de France v. France (dec.), no. 53430/99, ECHR 2001–XI

Federation of French Medical Trade Unions and National Federation of Nurses v. France (dec.), no. 10983/84, Commission decision of 12 May 1986, DR 47

Fedotov v. Moldova (dec.), no. 51838/07, 24 May 2011

Fedotova v. Russia, no. 73225/01, 13 April 2006

Fener Rum Patrikliği (Ecumenical Patriarchy) v. Turkey (dec.), no. 14340/05, 12 June 2007

Fernandez v. France (dec.), no. 65421/10, 17 January 2012

Fernie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4881/04, 5 January 2006

Ferrara and Others v. Italy (dec.), nos. 2394/22 and 18 others, 16 May 2023

Ferreira Alves v. Portugal (no. 6), nos. 46436/06 and 55676/08, 13 April 2010

Fetisov and Others v. Russia, nos. 43710/07 and 3 others, 17 January 2012

Filipović v. Serbia, no. 27935/05, 20 November 2007

Financial Times Lt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821/03, 15 December 2009

FINE DOO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dec.), no. 37948/13, 17 May 2022

Finger v. Bulgaria, no. 37346/05, 10 May 2011

Folgerø and Others v. Norway (dec.), no. 15472/02, 14 February 2006

Forcadell i Lluis and Others v. Spain (dec.), no. 75147/17, 7 May 2019

Foti and Others v. Italy, 10 December 1982, Series A no. 56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no. 29183/95, ECHR 1999–I

Fu Quan, s.r.o. v. the Czech Republic [GC], no. 24827/14, 1 June 2023

—G—

Gäfgen v. Germany [GC], no. 22978/05, ECHR 2010

Gaftoniuc v. Romania (dec.), no. 30934/05, 22 February 2011

Gagiu v. Romania, no. 63258/00, 24 February 2009

Gagliano Giorgi v. Italy, no. 23563/07, ECHR 2012

Gaglione and Others v. Italy, nos. 45867/07 and 69 others, 21 December 2010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no. 18324/04, 29 September 2009

Galić v. the Netherlands (dec.), no. 22617/07, 9 June 2009

Galović v. Croatia (dec.), no. 54388/09, 5 March 2013

García Ruiz v. Spain [GC], no. 30544/96, ECHR 1999–I

Gar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9793/17, 27 June 2017

Gardean and S.C. Grup 95 SA v. Romania (revision), no. 25787/04, 30 April 2013

Gas and Dubois v. France (dec.), no. 25951/07, 31 August 2010
Gasparini v. Italy and Belgium (dec.), no. 10750/03, 12 May 2009
Genderdoc-M and M.D.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23914/15, 14 December 2021
Gennari v. Italy (dec.), no. 46956/99, 5 October 2000
Genovese v. Malta, no. 53124/09, 11 October 2011
Gentilhomme, Schaff-Benhadji and Zerouki v. France, nos. 48205/99 and 2 others, 14 May 2002
Georgia v. Russia (I) [GC], no. 13255/07, ECHR 2014
Georgia v. Russia (II) [GC] (merits), no. 38263/08, 21 January 2021
Georgian Labour Party v. Georgia, no. 9103/04, ECHR 2008
Gevorgyan and Others v. Armenia (dec.), no. 66535/10, 14 January 2020
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no. 35511/20, §§ 83–84, 15 December 2022
Gherghina v. Romania (dec.) [GC], no. 42219/07, 8 July 2015
Ghoumid and Others v. France, nos. 52273/16 and 4 others, 25 June 2020
Gillow v. the United Kingdom, 24 November 1986, Series A no. 109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no. 23458/02, ECHR 2011
Giummarra and Others v. France (dec.), no. 61166/00, 12 June 2001
Giuran v. Romania, no. 24360/04, ECHR 2011
Giusti v. Italy, no. 13175/03, 18 October 2011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no. 36862/05, 12 May 2015
Göktan v. France, no. 33402/96, ECHR 2002–V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no. 62543/00, ECHR 2004–III
Gough v. the United Kingdom, no. 49327/11, 28 October 2014
Grădinari v. Moldova, no. 7170/02, 8 April 2008
Grande Stevens and Others v. Italy, nos. 18640/10 and 4 others, 4 March 2014
Grässer v. Germany (dec.), no. 66491/01, 16 September 2004
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no. 39794/98, ECHR 2002–VII
Greek Federation of Bank Employee Unions v. Greece (dec.), no. 72808/10, 6 December 2011
Grišankova and Grišankovs v. Latvia (dec.), no. 36117/02, ECHR 2003–II
Grori v. Albania, no. 25336/04, 7 July 2009
Grosam v. the Czech Republic [GC], no. 19750/13, 1 June 2023
Gross v. Switzerland [GC], no. 67810/10, ECHR 2014
Grossi and Others v. Italy (revision), no. 18791/03, 30 October 2012
Grozdanić and Gršković-Grozdanić v. Croatia, no. 43326/13, 28 January 2021
Grzinčič v. Slovenia, no. 26867/02, 3 May 2007
Guisset v. France, no. 33933/96, ECHR 2000–IX
Gülen v. Turkey, no. 28226/02, 14 October 2008
Güneş v. Turkey (dec.), no. 53916/00, 13 May 2004
Gürdeniz v. Turkey (dec.), no. 59715/10, 18 March 2014
Guruyan v. Armenia (dec.), no. 11456/05, 24 January 2012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no. 36925/07, 29 January 2019



H.F. and Others v. France [GC], nos. 24384/19 and 44234/20, 14 September 2022
H.F. K-F v. Germany, no. 25629/94, Commission report of 10 September 1996

- Haas v. Switzerland* (dec.), no. 31322/07, 20 May 2010
Haász and Szabó v. Hungary, nos. 11327/14 and 11613/14, 13 October 2015
Hadrabová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dec.), nos. 42165/02 and 466/03, 25 September 2007
Hambardzumyan v. Armenia, no. 43478/11, 5 December 2019
Hamidovic v. Italy (dec.), no. 31956/05, 13 September 2011
Hanan v. Germany [GC], no. 4871/16, 16 February 2021
Hanzl and Špadrn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0073/06, 15 January 2013
Harkin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no. 71537/14, 15 June 2017
Hartman v. the Czech Republic, no. 53341/99, ECHR 2003–VIII
Hartung v. France (dec.), no. 10231/07, 3 November 2009
Harutyunyan v. Armenia, no. 36549/03, ECHR 2007–III
Hasan Tunç and Others v. Turkey, no. 19074/05, 31 January 2017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750/09, ECHR 2014
Havelk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7332/10, 20 September 2011
Hebat Aslan and Firas Aslan v. Turkey, no. 15048/09, 28 October 2014
Hingitaq 53 and Others v. Denmark (dec.), no. 18584/04, ECHR 2006–I
Hirsia Jamaa and Others v. Italy [GC], no. 27765/09, ECHR 2012
Hokkanen v. Finland, no. 25159/94, Commission decision of 15 May 1996
Holland v. Sweden (dec.), no. 27700/08, 9 February 2010
Holub v. the Czech Republic (dec.), no. 24880/05, 14 December 2010
Hoppen and trade union of AB Amber Grid employees v. Lithuania, no. 976/20, § 153, 17 January 2023
Horsham v. the United Kingdom, no. 23390/94, Commission decision of 4 September 1995
Horvat v. Croatia, no. 51585/99, ECHR 2001–VIII
Hoti v. Croatia, no. 63311/14, 26 April 2018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nos. 47039/11 and 358/12, ECHR 2012
Hromadka and Hromadkova v. Russia, no. 22909/10, 11 December 2014
Hudecová and Others v. Slovakia (dec.), no. 53807/09, 18 December 2012
Humen v. Poland [GC], no. 26614/95, 15 October 1999
Husayn (Abu Zubaydah) v. Poland, no. 7511/13, 24 July 2014
Hussein v. Albania and 20 Other Contracting States (dec.), no. 23276/04, 14 March 2006
Hutten-Czapska v. Poland [GC], no. 35014/97, ECHR 2006–VIII



- I.J.L.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9029/97, 6 July 1999
Iambor v. Romania (no. 1), no. 64536/01, 24 June 2008
İçyer v. Turkey (dec.), no. 18888/02, ECHR 2006–I
Idalov v. Russia [GC], no. 5826/03, 22 May 2012
Ignats v. Latvia (dec.), no. 38494/05, 24 September 2013
İhsan Doğramacı Bilkent Üniversitesi v. Turkey (dec.), no. 40355/14, 28 January 2020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no. 48787/99, ECHR 2004–VII
İlhan v. Turkey [GC], no. 22277/93, ECHR 2000–VII
İlias and Ahmed v. Hungary [GC], no. 47287/15, 21 November 2019
İlliu and Others v. Belgium (dec.), no. 14301/08, 19 May 2009

Imakayeva v. Russia, no. 7615/02, ECHR 2006–XIII
Ionescu v. Romania (dec.), no. 36659/04, 1 June 2010
Lordache v. Romania, no. 6817/02, 14 October 2008
Iosub Caras v. Romania, no. 7198/04, 11 December 2006
İpek v. Turkey (dec.), no. 39706/98, 7 November 2000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Isaak and Others v. Turkey (dec.), no. 44587/98, 28 September 2006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v. Turkey, no. 40998/98, ECHR 2007–V
İssa and Others v. Turkey, no. 31821/96, 16 November 2004
Ivanč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no. 23687/05, 15 November 2011
İvko v. Russia, no. 30575/08, 15 December 2015

—J—

J.B. and Others v. Hungary (dec.), no. 45434/12 and 2 others, 27 November 2018
J.M.B. and Others v. France, nos. 9671/15 and 31 others, 30 January 2020
Jakovljević v. Serbia (dec.), no. 5158/12, 13 October 2020
Jalloh v. Germany [GC], no. 54810/00, ECHR 2006–IX
Jaloud v. the Netherlands [GC], no. 47708/08, ECHR 2014
Janče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18716/09, 4 October 2011
Jankovskis v. Lithuania, no. 21575/08, 17 January 2017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nos. 55508/07 and 29520/09, ECHR 2013
Januškevičienė v. Lithuania, no. 69717/14, 3 September 2019
Jasinskis v. Latvia, no. 45744/08, 21 December 2010
Jelić v. Croatia, no. 57856/11, 12 June 2014
Jelič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no. 41183/02, ECHR 2005–XII
Jensen and Rasmussen v. Denmark (dec.), no. 52620/99, 20 March 2003
Jensen v. Denmark (dec.), no. 48470/99, ECHR 2001–X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5 July 2016
Jian v. Romania (dec.), no. 46640/99, 30 March 2004
JKP Vodovod Kraljevo v. Serbia (dec.), nos. 57691/09 and 19719/10, 16 October 2018
Joannou v. Turkey, no. 53240/14, 12 December 2017
Johtti Sapmelaccat Ry and Others v. Finland (dec.), no. 42969/98, 18 January 2005
Joos v. Switzerland, no. 43245/07, 15 November 2012
Jørgensen and Others v. Denmark (dec.), no. 30173/12, 28 June 2016
Jovanović v. Croatia (dec.), no. 59109/00, ECHR 2002–III
Juhas Đurić v. Serbia (revision), no. 48155/06, 10 April 2012
Jurica v. Croatia, no. 30376/13, 2 May 2017

—K—

K2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2387/13, 7 February 2017
K.S. and K.S. AG v. Switzerland, no. 19117/91, Commission decision of 12 January 1994, DR 76
Kaburov v. Bulgaria (dec.), no. 9035/06, 19 June 2012

- Kadiķis v. Latvia* (dec.), no. 47634/99, 29 June 2000
Kafkaris v. Cyprus (dec.), no. 9644/09, 21 June 2011
Kaganovskyy v. Ukraine, no. 2809/18, 15 September 2022
Kalashnikov v. Russia, no. 47095/99, ECHR 2002–VI
Kalfagiannis and Pospert v. Greece (dec.), no. 74435/14, 9 June 2020
Kamaliyev v. Russia, no. 52812/07, 3 June 2010
Kandarakis v. Greece, nos. 48345/12 and 2 others, 11 June 2020
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nos. 42461/13 and 44357/13, 17 May 2016
Karakó v. Hungary, no. 39311/05, 28 April 2009
Karapanagiotou and Others v. Greece, no. 1571/08, 28 October 2010
Karastelev and Others v. Russia, no. 16435/10, 6 October 2020
Karelin v. Russia, no. 926/08, 20 September 2016
Karner v. Austria, no. 40016/98, ECHR 2003–IX
Karoussiotis v. Portugal, no. 23205/08, ECHR 2011
Karpyleenko v. Ukraine, no. 15509/12, 11 February 2016
Kashlan v. Russia (dec.), no. 60189/15, 19 April 2016
Kátai v. Hungary (dec.), no. 939/12, 18 March 2014
Kavala v. Turkey, no. 28749/18, 10 December 2019
Kefalas and Others v. Greece, 8 June 1995, Series A no. 318-A
Kemal Çetin v. Turkey, no. 3704/13, 26 May 2020
Kemmache v. France (no. 3), 24 November 1994, Series A no. 296-C
Kerechashvili v. Georgia (dec.), no. 5667/02, ECHR 2006–V
Kerimov v. Azerbaijan (dec.), no. 151/03, 28 September 2006
Kerman v. Turkey, no. 35132/05, 22 November 2016
Kerojärvi v. Finland, 19 July 1995, Series A no. 322
Kezer and Others v. Turkey (dec.), no. 58058/00, 5 October 2004
Khadzhialiiev and Others v. Russia, no. 3013/04, 6 November 2008
Khadzhimuradov and Others v. Russia, nos. 21194/09 and 16 others, 10 October 2017
Khan v. the United Kingdom, no. 35394/97, ECHR 2000–V
Khashiyev and Akayeva v. Russia, nos. 57942/00 and 57945/00, 24 February 2005
Khayrullina v. Russia, no. 29729/09, 19 December 2017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no. 16483/12, 15 December 2016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s. 11082/06 and 13772/05, 25 July 2013
Khural and Zeynalov v. Azerbaijan (no. 2), no. 383/12, 19 January 2023
Kiiskinen and Kovalainen v. Finland (dec.), no. 26323/95, ECHR 1999–V
Kikots and Kikota v. Latvia (dec.), no. 54715/00, 6 June 2002
Kiousi v. Greece (dec.), no. 52036/09, 20 September 2011
Kiril Zlatkov Nikolov v. France, nos. 70474/11 and 68038/12, 10 November 2016
Kitanovska and Barbulovski v. North Macedonia, no. 53030/19, 9 May 2023
Klass and Others v. Germany, 6 September 1978, Series A no. 28
Klausecker v. Germany (dec.), no. 415/07, 6 January 2015
Klyakhin v. Russia, no. 46082/99, 30 November 2004
Koç and Tambas v. Turkey (dec.), no. 46947/99, 24 February 2005
Koç and Tosun v. Turkey (dec.), no. 23852/04, 13 November 2008
Koch v. Poland (dec.), no. 15005/11, 7 March 2017
Köhler v. Germany (dec.), no. 3443/18, 7 September 2021
Kondrulin v. Russia, no. 12987/15, 20 September 2016

Kongresna Narodna Stranka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no. 414/11,
26 April 2016
Konstantin Stefanov v. Bulgaria, no. 35399/05, 27 October 2015
Konstantinidis v. Greece, no. 58809/09, 3 April 2014
Kopecký v. Slovakia [GC], no. 44912/98, ECHR 2004–IX
Korenjak v. Slovenia (dec.), no. 463/03, 15 May 2007
Korizno v. Latvia (dec.), no. 68163/01, 28 September 2006
Kornakovs v. Latvia, no. 61005/00, 15 June 2006
Korolev v. Russia (dec.), no. 25551/05, ECHR 2010
Kósa v. Hungary (dec.), no. 53461/15, 21 November 2017
Kotilainen and Others v. Finland, no. 62439/12, 17 September 2020
Kotov v. Russia [GC], no. 54522/00, 3 April 2012
Koumoutsea and Others v. Greece (dec.), no. 56625/00, 13 December 2001
Kozacioğlu v. Turkey [GC], no. 2334/03, 19 February 2009
Kozlova and Smirnova v. Latvia (dec.), no. 57381/00, ECHR 2001–XI
Krstić v. Serbia, no. 45394/06, 10 December 2013
Kudła v. Poland [GC], no. 30210/96, ECHR 2000–XI
Kurić and Others v. Slovenia [GC], no. 26828/06, ECHR 2012
Kurşun v. Turkey, no. 22677/10, 30 October 2018
Kurt v. Turkey, 25 May 1998, *Reports* 1998–III
Kušić and Others v. Croatia (dec.), no. 71667/17, 10 December 2019
Kuzhelev and Others v. Russia, nos. 64098/09 and 6 others, 15 October 2019



L.R. v. North Macedonia, no. 38067/15, 23 January 2020
Labsi v. Slovakia, no. 33809/08, 15 May 2012
Ladygin v. Russia (dec.), no. 35365/05, 30 August 2011
Lagutin and Others v. Russia, nos. 6228/09 and 4 others, 24 April 2014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no. 46043/14, ECHR 2015
Laska and Lika v. Albania, nos. 12315/04 and 17605/04, 20 April 2010
Łatak v. Poland (dec.), no. 52070/08, 12 October 2010
Laurus Invest Hungary KFT and Others v. Hungary (dec.), nos. 23265/13 and 5 others,
ECHR 2015
Leandro Da Silva v. Luxembourg, no. 30273/07, 11 February 2010
Lechesne v. France, no. 20264/92, Commission report of 21 May 1997
Léger v. France (striking out) [GC], no. 19324/02, 30 March 2009
Lehtinen v. Finland (dec.), no. 39076/97, ECHR 1999–VII
Lekić v. Slovenia [GC], no. 36480/07, 11 December 2018
Lenzing AG v. Germany, no. 39025/97, Commission decision of 9 September 1998
Leon Madrid v. Spain, no. 30306/13, 26 October 2021
Lepođić v. Serbia, no. 13909/05, 6 November 2007
Lewit v. Austria, no. 4782/18, 10 October 2019
Liblik and others v. Estonia, nos. 173/15 and 5 others, 28 May 2019
Lienhardt v. France (dec.), no. 12139/10, 13 September 2011
Liepājnieks v. Latvia (dec.), no. 37586/06, 2 November 2010
Liga Portuguesa de Futebol Profissional v. Portugal (dec.), no. 49639/09, 3 April 2012
Loizidou v. Turkey (merits), 18 December 1996, *Reports* 1996–VI

Loizidou v. Turkey (preliminary objections), 23 March 1995, Series A no. 310
Lopata v. Russia, no. 72250/01, 13 July 2010
Lopes de Sousa Fernandes v. Portugal [GC], no. 56080/13, 19 December 2017
Lopez Cifuentes v. Spain (dec.), no. 18754/06, 7 July 2009
Lowe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2486/07, 8 September 2009
Luchaninova v. Ukraine, no. 16347/02, 9 June 2011
Lukenda v. Slovenia, no. 23032/02, ECHR 2005-X
Lyon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5227/03, ECHR 2003-IX

—M—

M. v. Denmark, no. 17392/90, Commission decision of 14 October 1992, DR 73
M. v. the United Kingdom, no. 13284/87, Commission decision of 15 October 1987, DR 54
M.A. and Others v. Lithuania, no. 59793/17, 11 December 2018
M.A. v. France, no. 9373/15, 1 February 2018
M.H. and Others v. Croatia, nos. 15670/18 and 43115/18, 18 November 2021
M.K. and Others v. Poland, nos. 40503/17 and 2 others, 23 July 2020
M. 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no. 3599/18, 5 May 2020
M.N. and Others v. San Marino, no. 28005/12, 7 July 2015
M.S. v. Croatia (no. 2), no. 75450/12, 19 February 2015
M.S.S. v. Belgium and Greece [GC], no. 30696/09, ECHR 2011
Magnitskiy and Others v. Russia, nos. 32631/09 and 53799/12, 27 August 2019
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nos. 33636/09 and 9 others, 28 March 2017
Magyar Kereszteny Mennonita Egyház and Others v. Hungary, nos. 70945/11 and 8 others, ECHR 2014
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no. 201/17, 20 January 2020
Makarashvili and Others v. Georgia, nos. 23158/20 and 2 others, 1 September 2022
Makharadze and Sikharulidze v. Georgia, no. 35254/07, 22 November 2011
Makuchyan and Minasyan v. Azerbaijan and Hungary, no. 17247/13, 26 May 2020
Malhous v. the Czech Republic (dec.) [GC], no. 33071/96, ECHR 2000-XII
Malkov v. Estonia, no. 31407/07, 4 February 2010
Malysh and Ivanin v. Ukraine (dec.), nos. 40139/14 and 41418/14, 9 September 2014
Mamasakhlisi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nos. 29999/04 and 41424/04, 7 March 2023
Mamatkulov and Askarov v. Turkey [GC], nos. 46827/99 and 46951/99, ECHR 2005-I
Mann v. the United Kingdom and Portugal (dec.), no. 360/10, 1 February 2011
Mannai v. Italy, no. 9961/10, 27 March 2012
Manoilescu and Dobrescu v. Romania and Russia (dec.), no. 60861/00, ECHR 2005-VI
Manuel v. Portugal (dec.), no. 62341/00, 31 January 2002
Maravić Markeš v. Croatia, no. 70923/11, 9 January 2014
Margaretić v. Croatia, no. 16115/13, 5 June 2014
Margulev v. Russia, no. 15449/09, 8 October 2019
Marguš v. Croatia [GC], no. 4455/10, ECHR 2014
Marić v. Croatia, no. 50132/12, 12 June 2014
Marion v. France, no. 30408/02, 20 December 2005
Markovic and Others v. Italy [GC], no. 1398/03, ECHR 2006-XIV

- Marshall and Others v. Malta*, no. 79177/16, 11 February 2020
Martins Alves v. Portugal (dec.), no. 56297/11, 21 January 2014
Maslova and Nalbandov v. Russia, no. 839/02, 24 January 2008
Mastil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no. 28754/10, 24 February 2022
Mătăs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dec.), no. 44743/08, 21 January 2020
Mateuț v. Romania (dec.), no. 35959/15, 1 March 2022
Matoušek v. the Czech Republic (dec.), no. 9965/08, 29 March 2011
Matthews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33/94, ECHR 1999–I
Matveyev v. Russia, no. 26601/02, 3 July 2008
McCan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7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4
McElhinney v.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dec.) [GC], no. 31253/96, 9 February 2000
McFarlane v. Ireland [GC], no. 31333/06, 10 September 2010
McFeele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8317/78, Commission decision of 15 May 1980, DR 20
McKerr v. the United Kingdom, no. 28883/95, ECHR 2001–III
McShane v. the United Kingdom, no. 43290/98, 28 May 2002
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no. 3394/03, ECHR 2010
Mehmet Ali Ayhan and Others v. Turkey, nos. 4536/06 and 53282/07, 4 June 2019
Mehmet Ali Eser v. Turkey, no. 1399/07, 15 October 2019
Melnichuk and Others v. Romania, nos. 35279/10 and 34782/10, 5 May 2015
Melnik v. Ukraine, no. 72286/01, 28 March 2006
Meltex Ltd v. Armenia (dec.), no. 37780/02, 27 May 2008
Mentzen v. Latvia (dec.), no. 71074/01, ECHR 2004–XII
Merabishvili v. Georgia [GC], no. 72508/13, 28 November 2017
Merger and Cros v. France (dec.), no. 68864/01, 11 March 2004
Merit v. Ukraine, no. 66561/01, 30 March 2004
Micallef v. Malta [GC], no. 17056/06, ECHR 2009
Michałak v. Poland (dec.), no. 24549/03, 1 March 2005
Michaud v. France, no. 12323/11, ECHR 2012
Migliore and Others v. Italy (dec.), nos. 58511/13 and 2 others, 12 November 2013
Mikolajová v. Slovakia, no. 4479/03, 18 January 2011
Mile Novaković v. Croatia, no. 73544/14, 17 December 2020
Milošević v. the Netherlands (dec.), no. 77631/01, 19 March 2002
Milovanović v. Serbia, no. 56065/10, 8 October 2019
Miroļubovs and Others v. Latvia, no. 798/05, 15 September 2009
Miszczynski v. Poland (dec.), no. 23672/07, 8 February 2011
Mitrović v. Serbia, no. 52142/12, 21 March 2017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nos. 10865/09 and 2 others, ECHR 2014
Moldovan and Others v. Romania (dec.), nos. 8229/04 and 29 others, 15 February 2011
Monnat v. Switzerland, no. 73604/01, ECHR 2006–X
Moon v. France, no. 39973/03, 9 July 2009
Mooren v. Germany [GC], no. 11364/03, 9 July 2009
Moreira Barbosa v. Portugal (dec.), no. 65681/01, ECHR 2004–V
Moreira Ferreira v. Portugal (no. 2) [GC], no. 19867/12, 11 July 2017
Moretti and Benedetti v. Italy, no. 16318/07, 27 April 2010
Moskovets v. Russia, no. 14370/03, 23 April 2009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no. 16354/06, ECHR 2012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 11138/10, 23 February 2016
MPP Golub v. Ukraine (dec.), no. 6778/05, ECHR 2005–XI
Mrkić v. Croatia (dec.), no. 7118/03, 8 June 2006
Mukhin v. Russia, no. 3642/10, 14 December 2021
Municipal Section of Antilly v. France (dec.), no. 45129/98, ECHR 1999–VIII
Muratovic v. Serbia (dec.), no. 41698/06, 21 March 2017
Muršić v. Croatia [GC], no. 7334/13, 20 October 2016
Mutu and Pechstein v. Switzerland, nos. 40575/10 and 67474/10, 2 October 2018
Mykhaylenky and Others v. Ukraine, nos. 35091/02 and 9 others, ECHR 2004–XII

—N—

NA v. the United Kingdom, no. 25904/07, 17 July 2008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and 8697/15, 13 February 2020
Nada v. Switzerland [GC], no. 10593/08, ECHR 2012
Nagovitsyn and Nalgiyev v. Russia (dec.), nos. 27451/09 and 60650/09, 23 September 2010
Nasr and Ghali v. Italy, no. 44883/09, 23 February 2016
Nassau Verzekering Maatschappij N.V. v. the Netherlands (dec.), no. 57602/09, 4 October 2011
National federation of Sportspersons' Associations and unions (FNASS) and Others v. France, nos. 48151/11 and 77769/13, 18 January 2018
Navalny v. Russia [GC], nos. 29580/12 and 4 others, 15 November 2018
Naydyon v. Ukraine, no. 16474/03, 14 October 2010
Nencheva and Others v. Bulgaria, no. 48609/06, 18 June 2013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36925/10 and 5 others, 27 January 2015
Nešić v. Montenegro, no. 12131/18, 9 June 2020
Nicholas v. Cyprus, no. 63246/10, 9 January 2018
Nicklinson and Lamb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2478/15 and 1787/15, 23 June 2015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Nicoleta Gheorghe v. Romania, no. 23470/05, 3 April 2012
Nikula v. Finland (dec.), no. 31611/96, 30 November 2000
Nizomkhon Dzhurayev v. Russia, no. 31890/11, 3 October 2013
Nobili Massuero v. Italy (dec.), no. 58587/00, 1 April 2004
Nogolica v. Croatia (dec.), no. 77784/01, ECHR 2002–VIII
Nolan and K. v. Russia, no. 2512/04, 12 February 2009
Nold v. Germany, no. 27250/02, 29 June 2006
Nölkenbockhoff v. Germany, 25 August 1987, Series A no. 123
Norbert Sikorski v. Poland, no. 17599/05, 22 October 2009
Normann v. Denmark (dec.), no. 44704/98, 14 June 2001
Novinskiy v. Russia, no. 11982/02, 10 February 2009
Nurcan Bayraktar v. Türkiye, no. 27094/20, 27 June 2023
Nurmagomedov v. Russia, no. 30138/02, 7 June 2007

—O—

- O'Halloran and Franci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15809/02 and 25624/02,
ECHR 2007–III
O'Keeffe v. Ireland [GC], no. 35810/09, ECHR 2014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no. 14902/04, 20 September 2011
Obote v. Russia, no. 58954/09, 19 November 2019
Öcalan v. Turkey [GC], no. 46221/99, ECHR 2005–IV
Oferta Plus SRL v. Moldova, no. 14385/04, 19 December 2006
Öğrү and Others v. Turkey, nos. 60087/10 and 2 others, 19 December 2017
Ohlen v. Denmark (striking out), no. 63214/00, 24 February 2005
Olaechea Cahuas v. Spain, no. 24668/03, ECHR 2006–X
Olczak v. Poland (dec.), no. 30417/96, ECHR 2002–X (extracts)
Oleksy v. Poland (dec.), no. 1379/06, 16 June 2009
Oliari and Others v. Italy, nos. 18766/11 and 36030/11, 21 July 2015
Oliyevskyy v. Ukraine (dec.), no. 65117/11, 14 January 2020
Olkhovik and Others v. Russia (dec.), nos. 11279/17, 76983/17 and 4597/20, 22
February 2022
Ölmez v. Turkey (dec.), no. 39464/98, 1 February 2005
Omkarananda and Divine Light Zentrum v. Switzerland, no. 8118/77, Commission
decision of 19 March 1981, DR 25
Orhan v. Türkiye (dec.), no. 38358/22, 6 December 2022
Oruk v. Turkey, no. 33647/04, 4 February 2014
Osmanov and Husseinov v. Bulgaria (dec.), nos. 54178/00 and 59901/00, 4
September 2003
Österreichischer Rundfunk v. Austria (dec.), no. 57597/00, 25 May 2004
Otto v. Germany (dec.), no. 21425/06, 10 November 2009

—P—

- P. v. Ukraine* (dec.), no. 40296/16, 11 June 2019
P.C. v. Ireland, no. 26922/19, 1 September 2022
Pais Pires de Lima v. Portugal, no. 70465/12, 12 February 2019
Paksas v. Lithuania [GC], no. 34932/04, ECHR 2011
Paladi v. Moldova [GC], no. 39806/05, 10 March 2009
Pal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704/04, 15 February 2011
Panioglu v. Romania, no. 33794/14, 8 December 2020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no. 12929/18, 3 December 2020
Papachelas v. Greece [GC], no. 31423/96, ECHR 1999–II
Papamichalopoulos and Others v. Greece, 24 June 1993, Series A no. 260–B
Paradiso and Campanelli v. Italy [GC], no. 25358/12, 24 January 2017
Parizov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14258/03, 7 February 2008
Parrillo v. Italy [GC], no. 46470/11, ECHR 2015
Paşa and Erkan Erol v. Turkey, no. 51358/99, 12 December 2006
Pater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25326/03, 10 January 2006
Pauger v. Austria, no. 24872/94, Commission decision of 9 January 1995
Paul and Audrey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6477/99, 7 June 2001
Paulino Tomás v. Portugal (dec.), no. 58698/00, ECHR 2003–VIII

- Peacock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2335/12, 5 January 2016
Pedersen and Others v. Norway, no. 39710/15, 10 March 2020
Peers v. Greece, no. 28524/95, ECHR 2001–III
Pellegriti v. Italy (dec.), no. 77363/01, 26 May 2005
Peñafiel Salgado v. Spain (dec.), no. 65964/01, 16 April 2002
Pentagiotis v. Greece (dec.), no. 14582/09, 10 May 2011
Peraldi v. France (dec.), no. 2096/05, 7 April 2009
Perlala v. Greece, no. 17721/04, 22 February 2007
Petithory Lanzmann v. France (dec.), no. 23038/19, 12 November 2019
Petra v. Romania, 23 September 1998, *Reports* 1998–VII
Petrescu v. Portugal, no. 23190/17, 3 December 2019
Petroiu v. Romania (revision), no. 33055/09, 7 February 2017
Petropavlovskis v. Latvia, no. 44230/06, ECHR 2015
Petrova v. Latvia, no. 4605/05, 24 June 2014
Petrović v. Serbia, no. 40485/08, 15 July 2014
Philis v. Greece, no. 28970/95, Commission decision of 17 October 1996
Piętka v. Poland, no. 34216/07, 16 October 2012
Platini v. Switzerland (dec.), no. 526/18, 11 February 2020
Pisano v. Italy (striking out) [GC], no. 36732/97, 24 October 2002
Pits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53036/08 and 19 others, 9 January 2014
PO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9253/11, 21 May 2013
Pocasovschi and Mihaila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no. 1089/09, 29 May 2018
Podeschi v. San Marino, no. 66357/14, 13 April 2017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no. 34147/06, 21 September 2010
Polyakh and Others v. Ukraine, nos. 58812/15 and 4 others, 17 October 2019
Pop-llić and Others v. Serbia, nos. 63398/13 and 4 others, 14 October 2014
Popov v. Moldova (no. 1), no. 74153/01, 18 January 2005
Porchet v. Switzerland (dec.), no. 36391/16, 8 October 2019
Portu Juanenea and Sarasola Yarzabal v. Spain, no. 1653/13, 13 February 2018
Poslu and Others v. Turkey, nos. 6162/04 and 6 others, 8 June 2010
Post v. the Netherlands (dec.), no. 21727/08, 20 January 2009
Povilonis v. Lithuania (dec.), no. 81624/17, 15 March 2022
Poznanski and Others v. Germany (dec.), no. 25101/05, 3 July 2007
Preda and Others v. Romania, nos. 9584/02 and 7 others, 29 April 2014
Predescu v. Romania, no. 21447/03, 2 December 2008
Predil Anstalt v. Italy (dec.), no. 31993/96, 14 March 2002
Prencipe v. Monaco, no. 43376/06, 16 July 2009
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20 November 1995, Series A no. 332
Preussische Treuhand GmbH & Co. KG a.A. v. Poland (dec.), no. 47550/06, 7 October 2008
Project-Trade d.o.o. v. Croatia, no. 1920/14, 19 November 2020
Prystavska v. Ukraine (dec.), no. 21287/02, ECHR 2002–X
Puchstein v. Austria, no. 20089/06, 28 January 2010

—Q—

Quark Fishing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5305/06, ECHR 2006-XIV

—R—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no. 53984/00, ECHR 2003-X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nos. 37685/10 and 22768/12, 20 March 2018

Raimondo v. Italy, 22 February 1994, Series A no. 281-A

Ramadan v. Malta, no. 76136/12, 21 June 2016

Ramos Nunes de Carvalho e Sá v. Portugal [GC], nos. 55391/13 and 2 others, 6 November 2018

Ramsahai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GC], no. 52391/99, ECHR 2007-II

Ranđelović and Others v. Montenegro, no. 66641/10, 19 September 2017

Rantsev v. Cyprus and Russia, no. 25965/04, ECHR 2010

Řehák v. the Czech Republic (dec.), no. 67208/01, 18 May 2004

Rezgui v. France (dec.), no. 49859/99, ECHR 2000-XI

Rhazali and Others v. France (dec.), no. 37568/09, 10 April 2012

Ryabov v. Russia, no. 3896/04, 31 January 2008

Riad and Idiab v. Belgium, nos. 29787/03 and 29810/03, 24 January 2008

Riđić and Others v. Serbia, nos. 53736/08 and 5 others, 1 July 2014

Riener v. Bulgaria, no. 46343/99, 23 May 2006

Rinck v. France (dec.), no. 18774/09, 19 October 2010

Ringeisen v. Austria, 16 July 1971, Series A no. 13

Robert Lesjak v. Slovenia, no. 33946/03, 21 July 2009

Rodina v. Latvia, nos. 48534/10 and 19532/15, 14 May 2020

Rõigas v. Estonia, no. 49045/13, 12 September 2017

Roman Zakharov v. Russia [GC], no. 47143/06, ECHR 2015

Rooman v. Belgium [GC], nos. 18052/11, 31 January 2019

Rossi and Others v. Italy (dec.), nos. 55185/08 and 7 others, 16 December 2008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no. 16812/17, 18 July 2019

Rutkowski and Others v. Poland, nos. 72287/10 and 2 others, 7 July 2015

—S—

S.A.S. v. France [GC], no. 43835/11, ECHR 2014

S.L. and J.L. v. Croatia, no. 13712/11, 7 May 2015

S.L. and J.L. v. Croatia (just satisfaction), no. 13712/11, 6 October 2016

S.P., D.P. and A.T. v. the United Kingdom, no. 23715/94, Commission decision of 20 May 1996

Saakashvili v. Georgia (dec.), nos. 6232/20 and 22394/20, 1 March 2022

Sabri Güneş v. Turkey [GC], no. 27396/06, 29 June 2012

Sadak v. Turkey, nos. 25142/94 and 27099/95, 8 April 2004

Safaryan v. Armenia (dec.), no. 16346/10, 14 January 2020

Sag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22698/09 and 31189/11, 8 December 2015

Saghinadze and Others v. Georgia, no. 18768/05, 27 May 2010

- Şahmo v. Turkey* (dec.), no. 37415/97, 1 April 2003
Sakhnovskiy v. Russia [GC], no. 21272/03, 2 November 2010
Şakir Kaçmaz v. Turkey, no. 8077/08, 10 November 2015
Sakvarelidze v. Georgia, no. 40394/10, 6 February 2020
Salman v. Turkey [GC], no. 21986/93, ECHR 2000–VII
Sâmbata Bihor Greco-Catholic Parish v. Romania (dec.), no. 48107/99, 25 May 2004
Sánchez Ramirez v. France, no. 48787/99, Commission decision of 24 June 1996, DR 86
Sancho Cruz and other “Agrarian Reform” cases v. Portugal, nos. 8851/07 and 14 others, 18 January 2011
Şandru and Others v. Romania, no. 22465/03, 8 December 2009
Sanles Sanles v. Spain (dec.), no. 48335/99, ECHR 2000–XI
Sapeyan v. Armenia, no. 35738/03, 13 January 2009
Sargsyan v. Azerbaijan (dec.) [GC], no. 40167/06, 14 December 2011
Sargsyan v. Azerbaijan [GC], no. 40167/06, ECHR 2015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no. 931/13, 27 June 2017
Savelyev v. Russia (dec.), no. 42982/08, 21 May 2019
Savenko and Others v. Russia, no. 13918/06, 14 September 2021
Savriddin Dzhurayev v. Russia, no. 71386/10, ECHR 2013
Savu v. Romania (dec.), no. 29218/05, 11 October 2011
Scavuzzo-Hager and Others v. Switzerland (dec.), no. 41773/98, 30 November 2004
Ščensnovičius v. Lithuania, no. 62663/13, 10 July 2018
Schipani and Others v. Italy, no. 38369/09, 21 July 2015
Schmidt v. Latvia, no. 22493/05, 27 April 2017
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and publisuisse SA v. Switzerland, no. 41723/14, 22 December 2020
Scoppola v. Italy (no. 2) [GC], no. 10249/03, 17 September 2009
Scordino v. Italy (dec.), no. 36813/97, ECHR 2003–IV
Scordino v. Italy (no. 1) [GC], no. 36813/97, ECHR 2006–V
Scozzari and Giunta v. Italy [GC], nos. 39221/98 and 41963/98, ECHR 2000–VIII
Sebeleva and Others v. Russia, no. 42416/18, 1 March 2022
Segame SA v. France, no. 4837/06, ECHR 2012
Seđić and Finci v. Bosnia and Herzegovina [GC], nos. 27996/06 and 34836/06, ECHR 2009
Sejdic v. Italy [GC], no. 56581/00, ECHR 2006–II
Şeker v. Turkey (dec.), no. 30330/19, 7 September 2021
Šeks v. Croatia, no. 39325/20, 3 February 2022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no. 14305/17, 22 December 2020
Selam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78241/13, 1 March 2018
Selmouni v. France [GC], no. 25803/94, ECHR 1999–V
Senator Lines GmbH v. fifteen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GC], no. 56672/00, ECHR 2004–IV
Sergey Zolotukhin v. Russia [GC], no. 14939/03, ECHR 2009
Shalyavski and Others v. Bulgaria, no. 67608/11, 15 June 2017 no. 52142/12, 21 March 2017

-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dec.), no. 36378/02, 16 September 2003
-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no. 36378/02, ECHR 2005–III
- Shchukin and Others v. Ukraine* [Committee], nos. 59834/09 and 249 others, 13 February 2014
- Shefer v. Russia* (dec.), no. 45175/04, 13 March 2012
- Shevanova v. Latvia* (striking out) [GC], no. 58822/00, 7 December 2007
- Shibendra Dev v. Sweden* (dec.), no. 7362/10, 21 October 2014
- Shioshvili and Others v. Russia*, no. 19356/07, 20 December 2016
- Shishanov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11353/06, 15 September 2015
- Shmelev and Others v. Russia* (dec.), no. 41743/17 and 16 others, 17 March 2020
-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nos. 15367/14 and 13 others, 21 January 2021
- Shortall and Others v. Ireland* (dec.), no 50272/18, 19 October 2021
- Shtefan and Others v. Ukraine* [Committee], nos. 36762/06 and 249 others, 31 July 2014
- Shtukaturov v. Russia*, no. 44009/05, ECHR 2008
- Siemaszko and Olszyński v. Poland*, nos. 60975/08 and 35410/09, 13 September 2016
- Siliadin v. France*, no. 73316/01, ECHR 2005–VII
- Šilih v. Slovenia* [GC], no. 71463/01, 9 April 2009
- Simitzi–Papachristou and Others v. Greece* (dec.), nos. 50634/11 and 18 others, 5 November 2013
- Şimşek, Andıç and Boğatekin v. Turkey* (dec.), no. 75845/12 and 2 others, 17 March 2020
-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no. 2330/09, ECHR 2013
- Sine Tsaggarakis A.E.E. v. Greece*, no. 17257/13, 23 May 2019
- Sisojeva and Others v. Latvia* (striking out) [GC], no. 60654/00, ECHR 2007–I
- Škorjanec v. Croatia*, no. 25536/14, 28 March 2017
- Škrlj v. Croatia*, no. 32953/13, 11 July 2019
- Slavgorodski v. Estonia* (dec.), no. 37043/97, ECHR 1999–II
- Slaviček v. Croatia* (dec.), no. 20862/02, ECHR 2002–VII
- Slivenko and Others v. Latvia* (dec.) [GC], no. 48321/99, ECHR 2002–II
- Slovenia v. Croatia* [GC] (dec.), no. 54155/16, 18 novembre 2020
- Smirnov v. Russia* (dec.), no. 14085/04, 6 July 2006
- Sociedad Anónima del Ucieza v. Spain*, no. 38963/08, 4 November 2014
- Söderman v. Sweden* [GC], no. 5786/08, ECHR 2013
-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7 July 1989, Series A no. 161
- Sokolov and Others v. Serbia* (dec.), nos. 30859/10 and 6 others, 14 January 2014
- Solmaz v. Turkey*, no. 27561/02, 16 January 2007
- Solonskiy and Petrova v. Russia* (dec.), nos. 3752/08 and 22723/09, 17 March 2020
- Sorbalo v. Moldova* (dec.), no. 1210/10, 31 January 2023
- Sperisen v. Switzerland*, no. 22060/20, 13 June 2023
- Spycher v. Switzerland* (dec.), no. 26275/12, 17 November 2015
- Stamoulakatos v. Greece (no. 1)*, 26 October 1993, Series A no. 271
- Stamoulakatos v. the United Kingdom*, no. 27567/95, Commission decision of 9 April 1997
- Star Case – Epilekta Gevmata and Others v. Greece* (dec.), no. 54111/07, 6 July 2010

State Holding Company Luganskvugillya v. Ukraine (dec.), no. 23938/05, 27 January 2009
Statileo v. Croatia, no. 12027/10, 10 July 2014
Stavropoulos and Others v. Greece, no. 52484/18, 25 June 2020
Ştefănescu v. Romania (dec.), no. 11774/04, 12 April 2011
Stella and Others v. Italy (dec.), nos. 49169/09 and 10 others, 16 September 2014
Stepanian v. Romania, no. 60103/11, 14 June 2016
Stephens v. Cyprus, Turkey and the United Nations (dec.), no. 45267/06, 11 December 2008
Stephens v. Malta (no. 1), no. 11956/07, 21 April 2009
Stojkovic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14818/02, 8 November 2007
Story and Others v. Malta, nos. 56854/13 and 2 others, 29 October 2015
Strand Lobben and Others v. Norway [GC], no. 37283/13, 10 September 2019
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14460/16 and 7 others, 27 February 2020
Studio Monitori and Others v. Georgia, nos. 44920/09 and 8942/10, 30 January 2020
Stukus and Others v. Poland, no. 12534/03, 1 April 2008
Sultygov and Others v. Russia, nos. 42575/07 and 11 others, 9 October 2014
Šumber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48228/08, 21 February 2012
Sürmeli v. Germany (dec.), no. 75529/01, 29 April 2004
Sürmeli v. Germany [GC], no. 75529/01, ECHR 2006–VII
Svinarenko and Slydanev v. Russia [GC], nos. 32541/08 and 43441/08, ECHR 2014
Sy v. Italy, no. 11791/20, 24 January 2022
Sylka v. Poland (dec.), no. 19219/07, 3 June 2014
Szaxon v. Hungary (dec.), no. 54421/21, 21 March 2023
Szott-Medyńska and Others v. Poland (dec.), no. 47414/99, 9 October 2003

—T—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no. 13274/08, 5 December 2019
Tahsin Acar v. Turkey [GC], no. 26307/95, ECHR 2004–III
Tănase v. Moldova [GC], no. 7/08, ECHR 2010
Taner Kılıç v. Turkey (no. 2), no. 208/18, 31 May 2022
Tanrikulu v. Turkey [GC], no. 23763/94, ECHR 1999–IV
Tarakhel v. Switzerland [GC], no. 29217/12, ECHR 2014
Techniki Olympiaki A.E. v. Greece (dec.), no. 40547/10, 1 October 2013
Tempel v. the Czech Republic, nos. 21429/14 and 9 others, 21 January 2021
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1–A
Thévenon v. France (dec.), no. 2476/02, ECHR 2006–III
Thibaut v. France (dec.), no. 41892/19, 14 June 2022
Tomaszewscy v. Poland, no. 8933/05, 15 April 2014
Torreggiani and Others v. Italy, nos. 43517/09 and 6 others, 8 January 2013
Transpetrol, a.s., v. Slovakia (dec.), no. 28502/08, 15 November 2011
Treska v. Albania and Italy (dec.), no. 26937/04, ECHR 2006–XI
Trivkanović v. Croatia, no. 12986/13, 6 July 2017
Trofimchuk v. Ukraine (dec.), no. 4241/03, 31 May 2005
Trubnikov v. Russia, no. 49790/99, 5 July 2005

Tsalikidis and Others v. Greece, no. 73974/14, 16 November 2017
Tucka v. the United Kingdom (no. 1) (dec.), no. 34586/10, 18 January 2011
Tuna v. Turkey, no. 22339/03, 19 January 2010
Tunç v. Turkey (dec.), no. 45801/19, 22 February 2022
Turgut and Others v. Turkey, no. 1411/03, 8 July 2008
Turturica and Casian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nos. 28648/06 and
18832/07, 30 August 2016
Tyler v. the United Kingdom, 25 April 1978, Series A no. 26

—U—

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nos. 20958/14 and 38334/18, 16
December 2020
Ukraine and the Netherlands v. Russia [GC] (dec.), nos. 8019/16, 43800/14 and
28525/20, 30 November 2022
Ukraine–Tyumen v. Ukraine, no. 22603/02, 22 November 2007
Ulemeš v. Croatia, no. 21613/16, 31 October 2019
Ülke v. Turkey (dec.), no. 39437/98, 1 June 2004
Unédic v. France, no. 20153/04, 18 December 2008
Unifaun Theatre Productions Limited and Others v. Malta, no. 37326/13, 15 May 2018
Uzun v. Turkey (dec.), no. 10755/13, 30 April 2013

—V—

V.D. v. Croatia (no. 2), no. 19421/15, 15 November 2018
V.D. and Others v. Russia, no. 72931/10, 9 April 2019
V.P. v. Estonia (dec.), no. 14185/14, 10 October 2017
Vallianatos and Others v. Greece [GC], nos. 29381/09 and 32684/09, ECHR 2013
Van Colle v. the United Kingdom, no. 7678/09, 13 November 2012
Van der Putten v. the Netherlands (dec.), no. 15909/13, 27 August 2013
Van der Tang v. Spain, 13 July 1995, Series A no. 321
Van Velden v. the Netherlands, no. 30666/08, 19 July 2011
Varadinov v. Bulgaria, no. 15347/08, 5 October 2017
Varbanov v. Bulgaria, no. 31365/96, ECHR 2000-X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nos. 16064/90 et al., ECHR 2009
Vartic v. Romania (no. 2), no. 14150/08, 17 December 2013
Vasilchenko v. Russia, no. 34784/02, 23 September 2010
Vasilescu v. Belgium, no. 64682/12, 25 November 2014
Vasiliauskas v. Lithuania [GC], no. 35343/05, ECHR 2015
Vasiliciuc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15944/11, 2 May 2017
Vasiliy Ivashchenko v. Ukraine, no. 760/03, 26 July 2012
Vasilkosk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28169/08, 28
October 2010
Vassilios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no. 50973/08, 21 December 2010
Vasyanovich v. Russia (dec.), no. 9791/05, 27 September 2016
Vatandaş v. Turkey, no. 37869/08, 15 May 2018
Veeber v. Estonia (no. 1), no. 37571/97, 7 November 2002

- Velev v. Bulgaria*, no. 43531/08, 16 April 2013
Velikova v. Bulgaria (dec.), no. 41488/98, ECHR 1999–V
Velikova v. Bulgaria, no. 41488/98, ECHR 2000–VI
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o. 2) [GC], no. 32772/02, ECHR 2009
Veriter v. France, no. 31508/07, 14 October 2010
Vernillo v. France, 20 February 1991, Series A no. 198
Veronica Ciobanu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69829/11, 9 February 2021
Vidu and Others v. Romania (revision), no. 9835/02, 17 January 2017
Vijayanathan and Pusparajah v. France, 27 August 1992, Series A no. 241–B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no. 71243/01, 25 October 2012
Vladimir Romanov v. Russia, no. 41461/02, 24 July 2008
Voggenreiter v. Germany, no. 47169/99, ECHR 2004–I
Vojnović v. Croatia (dec.), no. 4819/10, 26 June 2012
Volodina v. Russia (no. 2), no. 40419/19, 14 September 2021
Vovk and Bogdanov v. Russia, no. 15613/10, 11 February 2020
Vučković and Others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 [GC], nos. 17153/11 and 29 others, 25 March 2014

—W—

- Waite and Kennedy v. Germany* [GC], no. 26083/94, ECHR 1999–I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no. 54934/00, ECHR 2006–XI
Wikimedia Foundation, Inc. v. Turkey (dec.), no. 25479/19, 1 March 2022
William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2567/06, 17 February 2009
Worm v. Austria, 29 August 1997, Reports 1997–V

—X—

- X v. France*, 31 March 1992, Series A no. 234–C
X and Y v. Romania, no. 2145/16, 19 January 2021
X. v. France, no. 9587/81, Commission decision of 13 December 1982, DR 29
X. v. Germany, no. 1611/62, Commission decision of 25 September 1965
X. v. Germany, no. 7462/76, Commission decision of 7 March 1977, DR 9
X. v. Italy, no. 6323/73, Commission decision of 4 March 1976, DR 3
X. v. the Netherlands, no. 7230/75, Commission decision of 4 October 1976, DR 7
X. v. the United Kingdom, no. 6956/75, Commission decision of 10 December 1976, DR 8
X. v. the United Kingdom, no. 8206/78, Commission decision of 10 July 1981, DR 25
Xenides-Arestis v. Turkey, no. 46347/99, 22 December 2005
Xynos v. Greece, no. 30226/09, 9 October 2014

—Y—

- Y v. Latvia*, no. 61183/08, 21 October 2014
Y.F. v. Turkey, no. 24209/94, ECHR 2003–IX

Y.Y. and Y.Y. v. Russia, no. 43229/18, 8 March 2022
Yam v. the United Kingdom, no. 31295/11, 16 January 2020
Yaşa v. Turkey, 2 September 1998, *Reports* 1998–VI
Yatsenko v. Ukraine, no. 75345/01, 16 February 2012
Yavuz Selim Güler v. Turkey, no. 76476/12, 15 December 2015
Yepishin v. Russia, no. 591/07, 27 June 2013
Yevgeniy Dmitriyev v. Russia, no. 17840/06, 1 December 2020
Yonghong v. Portugal (dec.), no. 50887/99, ECHR 1999–IX
Yordanovi v. Bulgaria, no. 11157/11, 3 September 2020
Yorgiyadis v. Turkey, no. 48057/99, 19 October 2004
Yurttas v. Turkey, nos. 25143/94 and 27098/95, 27 May 2004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no. 37857/14, 7 December 2021

—Z—

Zakharkin v. Russia, no. 1555/04, 10 June 2010
Žáková v. the Czech Republic (just satisfaction), no. 2000/09, 6 April 2017
Zambrano v. France (dec.), no. 41994/21, 21 September 2021
Zana v. Turkey, 25 November 1997, *Reports* 1997–VII
Zastava It Turs v. Serbia (dec.), no. 24922/12, 9 April 2013
Zehentner v. Austria, no. 20082/02, 16 July 2009
Zelčs v. Latvia, no. 65367/16, 20 February 2020
Zhdanov and Others v. Russia, no. 12200/08 and 2 others, 16 July 2019
Zhidov v. Russia, no. 54490/10 and 3 others, 16 October 2018
Ziętal v. Poland, no. 64972/01, 12 May 2009
Zihni v. Turkey (dec.), no. 59061/16, 29 November 2016
Živić v. Serbia, no. 37204/08, 13 September 2011
Zubkov and Others v. Russia, nos. 29431/05 and 2 others, 7 November 2017
Zwinkels v. the Netherlands (dec.), no. 16593/10, 9 October 2012